

☐ 09-2008-02

# 중 국 농 업 동 향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2008 여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농업동향』은 중국 농업정책,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 등 중국농업 전반에 관한 최신 동향을 수집·분석하여 일반인, 농업종사자, 정책담당자 및 중국 농업 연구자들이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기별로 작성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동향자료는 1년에 4회, 봄, 여름, 가을, 겨울호로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동향자료는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중국농업정보”

담당자 및 내용문의: 전형진 [hjchon@krei.re.kr](mailto:hjchon@krei.re.kr)

TEL 02-3299-4324 / FAX 02-959-6110

리경호 [jinghulee@krei.re.kr](mailto:jinghulee@krei.re.kr)

TEL 02-3299-4374

# 목 차

## I. 농업정책 브리핑

1. 식량 직접지불제의 현황 및 특성 ..... 1
2. 유전자변형(GMO) 농산물 수급 동향과 전망 ..... 14
3. “일촌일품(一村一品)”의 발전 현황과 전망 ..... 24

## II. 농업·농촌경제 동향

1. 가격 동향 ..... 33
2. 무역 동향 ..... 42
3. 향진기업 동향 ..... 47
4. 섬서성(陝西省)의 과수산업 현황 ..... 51
5. 사천성(四川省) 지진피해 현황 및 영향 ..... 59

## III. 농정연구 이슈

1. 중국의 DDA 농업협상 대응방향 ..... 74
2. 식량 직접지불제의 효과, 문제점 및 대책 ..... 78

## IV. 정책자료

1. 『식품안전법(초안)』 전문 ..... 85
2. 《중국의 식품 품질안전 현황》 전문 ..... 10

## V. 농업통계 ..... 127

## I. 농업정책 브리핑

### 1. 식량 직접지불제의 현황 및 특성

#### 1.1. 식량작물 보조정책 개요

-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식량작물 보조정책은 식량유통 및 가격제도의 개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전개되었으며, 2004년을 기점으로 간접보조 방식에서 직접보조 방식으로 전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식량유통제도는 계획수매·계획판매 단계(1953~1984), 이중가격제(雙軌制) 단계(1985~1997), 시장화 추진단계(1998~2003)를 거쳐 2004년 이후 식량 수매 및 판매의 전면적인 시장화가 이루어졌음.
- 식량 수매 및 판매의 전면적인 시장화가 이루어지기 이전(1978~2003)에는 식량유통 단계에서 수매가격 인상, 보호가격 수매제도 등 식량재배 농민들의 소득을 간접적으로 보조해주는 가격지지가 중요한 정책 수단이었음.
  - 이 시기의 보조는 식량유통의 유일한 주체인 국영식량유통기업에 대해 수매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 및 경영비를 보조하는 방식이 주된 보조방식이었음.
  - 1993년 보호가격제도가 수립된 이후 1997년부터 국가가 제정한 보호가격으로 농민들의 여유 양곡을 수매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2000년부터 점차적으로 적용 품목의 범위를 축소하였으며 2004년에 보호가격정책<sup>1</sup>은 폐지되었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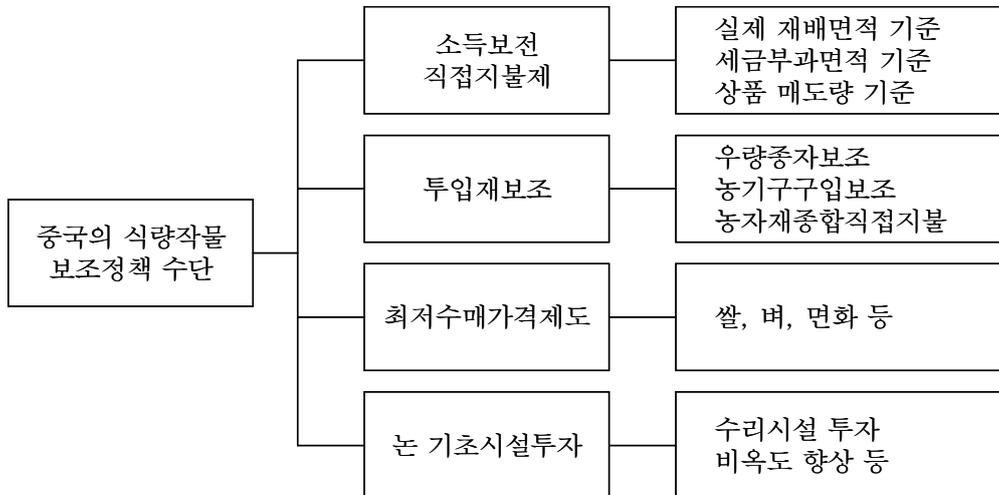
1 보호가격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보호가격은 생산비를 보상하고 적절한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함. ②1997년 이전에는 계약수매 식량과 국가 비축식량이 보호가격제의 대상이었으나 이후 시장수매(협의수매) 식량으로 확대되었음. ③보호가격에 기초한 기준 수매가격은 국가가 정하지만 각 성은 중앙에서 제시한 기준가격의 5% 범위 내에서 품질 차이 등을 반영하여 수매가격을 정할 수 있음. ④시장가격이 보호가격보다 낮은 경우 보호가격에 의거하여 수매함. ⑤국영식량기업이 수매한 식량의 보관 이자 및 비용은 국가재정으로 보조함.

- 중국은 1998년 이후 일련의 식량유통제도 개혁을 거쳐 수매와 판매의 시장화를 실현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식량작물 보조는 직접지불제가 주요한 정책수단이 되었음.
  -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농민소득 증대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한 2004년 ‘중앙 1호 문건’<sup>2</sup>에서 2004년부터 식량 수매 및 판매의 전면적인 시장화와 식량재배 농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직접지불제의 실시를 명시하였음.
- 중국의 식량 직접지불제 도입은 식량유통체제 개혁의 결과이지만 중국의 WTO 가입, 국내 식량수급 상황 악화, 식량작물의 비교수익 하락 등도 중요한 원인이었음.
  - 중국은 2001년 WTO 가입으로 ‘농업협정’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받았으며, 유통단계에서의 식량 가격지지정책(수매가격 인상, 보호가격 수매 등)은 감축대상정책(amber box)으로 허용보조정책(green box)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었음.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는 대표적인 허용보조정책에 해당함.
  - 중국은 1998년, 역사상 가장 많은 5억 1,230만 톤의 식량을 생산한 이래 2003년까지 5년 연속 생산량이 감소한 반면 식량수요는 증가하여 식량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었음. 식량 재배면적의 감소와 생산량 감소는 새롭게 출범한 후진타오 정부에게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식량 재배농민들의 생산의 적극성을 유인할 수 있는 보조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1990년대 이후 농촌주민의 소득증가율이 도시주민에 비해 현저히 낮아 도시와 농촌간 소득비율은 1990년 2.11:1에서 2003년 3.10:1로 확대되었음.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식량재배 농민들이 비교수익이 낮은 식량작물의 재배를 기피하고, 청장년층 노동력을 중심으로 도시유출이 증가하면서 경작포기로 경지가 황폐화되는 현상도 나타났음. 따라서 식량재배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통해 생산의 적극성을 유인할 수 있는 보조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현재 중국의 식량작물 보조정책은 소득보전 직불제 이외에도 투입재보조, 최저수매가격제도, 기초시설투자 등 3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WTO 규정상 허용보조정책과 감축대상정책이 혼재되어 시행되고 있음.
  - 중국의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는 직불금의 지급 기준(재배면적, 세금부과면적, 식

2 中共中央, 國務院 《關於促進農民增加收入若干政策的意見》(中發[2004]1號)

- 량 판매량)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현행 WTO 농업협정에 따르면 세금부과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허용대상 직접 지불정책이지만 재배면적, 식량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은 생산과 연계된 (coupled) 정책으로 감축대상정책에 해당함.
  - 투입재 보조도 우량종자보조, 농기구구입보조, 농자재종합직접지불제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있는데 명목상 직접지불제 형태이지만 실제로는 가격지지정책으로서 생산과 연계된 감축대상정책에 해당함.
  - 최저수매가격제도는 2004년 이전의 가격지지 정책인 보호가격정책이 폐지된 직후 도입하였으며 새로운 가격지지정책으로서 감축대상정책에 해당함.
  - 논 기초시설투자는 수리시설투자, 비옥도향상을 위한 투자사업 등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허용보조정책에 해당함.

그림 1 중국의 식량작물 보조정책 개요



## 1.2. 식량 직접지불제의 주요 내용

### 가. 소득보전 직불제의 도입

- 중국은 1998년 이후 식량유통제도의 전면적인 시장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2

- 년 안휘성의 천장시(天長市)와 래안현(來安縣), 길림성의 동풍현(東豐縣) 등 3개 지역에서 식량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를 시범 실시하였으며, 이후 안휘성, 강서성, 호남성, 호북성을 포함하여 9개 성으로 확대하였음.
- 2003년에는 하남성의 낙양(洛陽), 안양(安陽), 삼문협(三門峽), 상구(商丘), 신양(信陽) 등 5개 지역을 시범실시 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되었으며, 안휘성은 2003년 6월 1일부터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의 시범 실시지역을 전 성으로 확대하였음.
- 식량직불제의 시범실시 결과를 토대로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2004년 ‘중양 1호 문건’에서 2004년부터 식량주산지 성(자치구, 직할시)를 중심으로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의 전국적인 시행을 명시하였음.
- 중국 재정부는 2004년 3월 23일 식량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의 시행시 유의사항을 담은 긴급 통지<sup>3</sup>를 하달한데 이어, 3월 24일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재원으로 활용할 식량위험기금(糧食風險基金)의 사용범위 조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문건<sup>4</sup>을 발표하였음.
  - 중국 국무원은 2004년 5월 23일 유통제도개혁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문건<sup>5</sup>에서도 식량 직접지불제의 실시를 제도개혁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였음.
- 중국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농업부, 국가식량국, 중국농업발전은행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05년 2월 3일 2004년도 시행 경험을 토대로 제도의 개선방안을 담은 문건<sup>6</sup>을 공포하고 각 성(자치구, 직할시)에 하달하여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촉구하였음.
- 중국 재정부는 2007년 4월 5일 2007년도 식량직불제 시행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담은 문건<sup>7</sup>을 공포하고 각 성(자치구, 직할시)에 하달하였음.

---

3 財政部《關於盡快落實對種糧農民直接補貼》的通知(財建明電[2004]2號)

4 財政部《關於實行對種糧農民直接補貼 調整糧食風險基金使用範圍的實施意見》的通知(財建[2004]75號)

5 國務院《關於進一步深化糧食流通體制改革的意見》(國發[2004]17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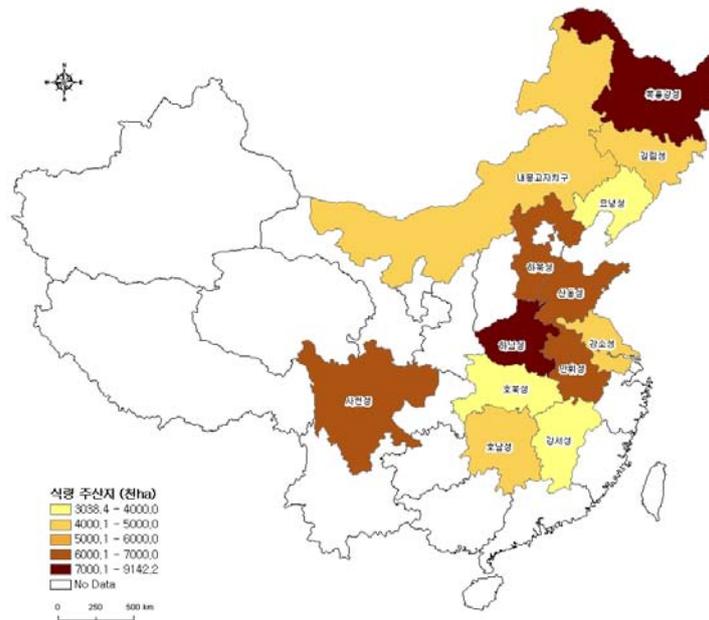
6 財政部, 國家發展改革委, 農業部, 國家糧食局, 中國農業發展銀行引發《關於進一步完善對種糧農民直接補貼政策的意見》的通知(財建[2005]59號)

7 財政部《關於進一步做好2007年對種糧農民直接補貼工作》(財建明電[2007]1號)

## 나. 소득보전 직불제의 대상

- 중국의 식량 소득보전 직불제는 성(자치구, 직할시)별로 시행되고 있으며 13개 식량주산지 성(자치구, 직할시)의 식량작물 재배 농민<sup>8</sup>이 우선적인 시행 대상임.
  - 중국에서 식량 주산지는 식량생산 잠재력이 크고, 식량의 상품화 비율이 높고 그 양이 많은 지역으로 정의되며, 쌀, 밀, 옥수수의 작물별 주산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쌀 주산지는 안휘성, 강서성, 호남성, 호북성, 강소성, 사천성, 흑룡강성, 길림성 등 8개 성, 밀 주산지는 하남성, 산둥성, 하북성, 흑룡강성, 신강위구르족자치구 등 5개 성, 옥수수 주산지는 내몽고자치구,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 등 4개 성으로 구분함.
  - 작물구분 없이 식량 주산지를 언급하는 경우 신강위구르족자치구를 제외한 하북성, 내몽고자치구,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강소성, 안휘성, 강서성, 산둥성,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 사천성 등 13개 성(자치구)를 주산지로 구분하고 있음.

그림 2 중국의 식량주산지 13개 성(자치구)



<sup>8</sup> 개간농기업(農墾企業), 국영농장의 식량생산 노동자를 포함하고 있음.

- 13개 주산지 성(자치구)은 성 전체 식량재배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나머지 성(자치구, 직할시)는 성내 식량 주산지 현(縣)이나 시(市)의 식량재배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는 성 정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음.
  - 중국의 식량직불제는 식량 생산량이 많은 현(縣)과 대농이 우선적인 대상이며 자금의 분배도 이들 지역과 농민에게 집중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직접지불 대상 작물은 기본적으로 쌀, 밀, 옥수수, 대두 등 4개 품목이며 성(자치구, 직할시) 자체적으로 대상 작물을 선정하고 보조기준도 현지 사정에 맞게 확정하도록 하였음.

#### 다. 소득보전 직불제의 유형

##### □ 실제 식량재배면적 기준

- 대상 농민의 실제 식량 재배면적에 의거하여 직불금을 확정하고 당해 연도 식량생산과 연계하여 직불금 총액을 산출하는 방식임.
  - 농민별 직불금 총액을 산출하기 위해 먼저 현(시)를 기본 단위로 하여 지난 3~5년 동안 국영식량기업이 보호가격으로 해당 현(시)에서의 수매한 식량의 평균 수량을 토대로 각 현(시)의 직불금 지급 대상 식량의 총량을 확정함.<sup>9</sup>
  - 다음으로 대상 농민의 실제 식량 재배면적에 기초하여 직불금을 지급할 상품식량의 수량을 확정된 후 수매 보호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을 곱해 직불금 총액을 산출함. 만약 시장가격이 수매 보호가격 보다 높은 경우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이 방식은 대상 농민이 지급받는 직불금 총액의 상한이 없으며 얼마만큼 식량작물을 재배하고 있는지에 따라 직불금 총액이 결정되므로 농민들의 식량 생산의 적극성을 강하게 유인할 수 있는 방식임.
- 중국 정부는 13개 식량 주산지 성(자치구)은 원칙적으로 이 방식의 직불제를 시행

9 이때 직불금 지급 대상 식량의 총량은 반드시 지난 3년 동안의 상품식량 총량의 7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였음(財政部 《關於實行對種糧農民直接補貼調整糧食風險基金使用範圍的實施意見》的通知(財建[2004]75號)).

하도록 강제하고 있음.<sup>10</sup>

- 만약 다른 방식을 채택한 경우에는 식량재배를 기피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고 가급적 이 방식에 근접한 형태로 시행하도록 하였음.

○ 이 방식은 식량 생산유인효과는 크지만 생산과 연계된 소득지지 정책으로 감축대상정책(amber box)에 해당함.

□ 농업세 부과 경지면적 기준

○ 대상 농민이 지급받을 직불금 총액을 산출하기 위해 먼저 현(시)의 직불금 지급 대상 식량 총량을 확정하고, 직불금을 지급할 상품식량의 수량을 확정된 후 수매 보호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을 곱해 직불금 총액을 산출하는 것은 앞의 방식과 동일함.

- 단, 이 방식은 직불금을 지급할 상품식량의 수량을 확정할 때 농업세 부과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만약 시장가격이 수매 보호가격 보다 높은 경우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앞의 경우와 동일함.

○ 이 방식은 농민이 도급받은 경지에 기초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농민이 해당 경지에 무슨 작물을 재배하든 상관없이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식량생산 및 판매와 연계되지 않은 허용보조정책(green box)에 해당함.

□ 식량 판매량 기준

○ 대상 현(시)의 지난 3~5년 동안 보호가격에 의한 평균 수매량(혹은 보호가격제도 이전의 계약수매량)과 보호가격과 시장 평균가격의 차액에 의거하여 전체 현(시)의 직불금 총액을 확정함.

- 농민별 직불금 총액은 농민과 국유식량기업과의 계약수매 수량에 의해 확정하는데 국영식량기업은 시장가격으로 수매하고 가격차액 만큼을 농민에게 직불금으로 지급함.

10 財政部, 國家發展改革委, 農業部, 國家糧食局, 中國農業發展銀行引發 《關於進一步完善對種糧農民直接補貼政策的意見》的通知(財建[2005]59號)

- 이 방식은 직불금 지급 기준이 특정 식량의 시장가격에 따라 변동하여 비교적 강력한 가격지지 효과가 있으며, 농민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총액이 국영식량기업에 판매하는 식량의 수량과 연계되어 있어 식량생산의 적극성을 유인하는데 효과적임.
- 그러나 국영식량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용인하여 다양한 식량유통 주체의 형성과 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 라. 소득보전 식량직불제의 재원: 식량위험기금

- 중국의 식량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는 1993년 2월 도입된 식량수매 보호가격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과 각 성(자치구, 직할시)에 조성된 식량위험기금(糧食風險基金)을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음.
  - 식량위험기금은 당초 중앙과 지방정부가 식량가격 안정, 식량생산의 안정적 성장 촉진, 식량 유통질서 유지, 거시경제조정 등에 사용하는 전용 자금으로 정의되었음.
  - 1998년 식량시장에 대한 거시적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현재는 정부가 식량시장 조절에 사용하는 전용 자금으로 정의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규정된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조성하고 있음.
  - 식량위험기금은 중국 정부가 식량안보와 식량시장의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운용하는 기금이라고 할 수 있음.
- 식량위험기금은 1994~1998년 까지 중앙 식량위험기금과 지방 식량위험기금의 2급으로 구분되었으나 1999년부터 중앙정부의 재정부문이 각 성(자치구, 직할시)에 대해 식량위험기금을 도급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음.
  - 1999년 이후 식량위험기금의 주요 용도는 ①지방정부의 식량 및 식용유 비축시 발생하는 이자와 비용 보조, ②국영식량기업의 수매가격과 판매가격 차액 보조, ③수매 보호가격과 시장가격 차액 보조, ④2002년 3월 말 이전 수매한 계약수매 식량, 보호가격수매 식량의 보관 이자 및 비용 보조 등임.
- 식량유통제도의 시장화 개혁과 식량재배 농민에 대한 소득보전 직불제의 시행으로 기금의 용도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음. 기금의 주요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음.

- ①식량재배 농민에 대한 직접지불, ②지방정부의 식량 및 식용유 비축시 발생하는 이자 및 비용 보조, ③정책자금의 이자 보조, ④보호가격으로 수매한 식량 중 판매되지 않은 재고식량의 보관 이자 및 비용 보조, ⑤직접지불제와 관련된 업무 경비, 지방재정 보조 등.
- 식량위험기금의 주요 자금 조달방식은 다음과 같음(표1 참조).
- 지방정부의 식량위험기금은 1:1.5의 비율로 중앙정부의 보조와 성 정부의 예산으로 조성하며, 규정된 용도에 기금을 사용한 후 기금의 부족분도 동일한 비율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충당함. 1998년 이후 기금의 부족분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1:1 비율로 공동해결 하도록 하였음.
  - 식량 주산지 가운데 식량위험기금이 부족한 일부 주산지 성(자치구)은 부족한 자금을 중앙정부로부터 대출받아 해결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중국농업발전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해결하도록 했음. 그러나 식량 주산지 이외의 지역은 성 정부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 중앙재정으로부터 대출이 필요한 식량 주산지 성(자치구)은 매년 2월 말 이전에 대출신청을 완료하고, 심사를 거쳐 3월 말 이전까지 대출금이 성 정부의 식량위험기금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였음. 대출금은 3년 거치 후 상환하도록 하였음.
  - 성 정부의 재정부문은 식량직불금을 식량위험기금의 기타 지출과 분리하여 운용하도록 하였음.
- 식량 소득보전 직접지불제가 처음 시행된 2004년에는 식량 주산지 성(자치구) 식량위험기금의 40%에 해당하는 100억 위안을 할당하여 직접지불을 실시하도록 하였음. 또한 매년 직접지불 규모를 확대하여 3년 후에는 식량위험기금의 50%를 직접지불에 사용하도록 하였음.
- 직불금의 지급은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카드 또는 통장을 지급하고 농민들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였음. 직불금 지급은 식량작물 파종 후 3개월 이내에 일회에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늦어도 9월 말 이전에 지급을 완료하도록 하였음.

표 1 식량위험기금 자금 조달 방식의 변화

시기	주요 변화 내용
1993. 2	· 중앙정부의 식량위험기금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충당 · 지방정부의 식량위험기금은 중앙정부의 보조와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충당하며 그 비율은 1:1.5
1997. 8	· 식량위험기금으로 이자 및 비용을 보조하던 보관식량의 판매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식량위험기금에 편입 · 지방정부는 재정수입이 증가한 경우 식량위험기금의 증액에 우선적으로 사용 · 규정된 용도에 기금을 사용한 후 발생한 부족분은 1:1.5의 비율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보충
1998. 5	· 규정된 용도에 기금을 사용한 후 발생한 부족분은 1:1의 비율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보충
2000. 6	· 80억 위안의 식량위험기금을 추가로 확보하여 주로 식량 주산지 성(자치구)에 분배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1:1.5의 비율로 분담 · 성 정부의 재정능력이 부족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 비준을 거쳐 상업은행 대출을 통해 해결하고 그래도 기금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예산을 공제하여 강제로 보충
2001.11	· 성 정부의 재정능력이 부족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 비준을 거쳐 상업은행 대출을 통해 해결
2004. 6	· 직접지불금으로 사용할 식량위험기금이 부족한 주산지 성(자치구)은 부족한 자금을 성 정부가 중앙재정부문으로부터 대출받아 해결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중국농업발전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해결

자료: 劉穎, 2006. 『市場化形勢下我國糧食流通體制改革研究』. 華中農業大學博士學位論文

### 1.3. 정책의 특성 및 문제점

- 중국의 식량 소득보전 직불제는 대상 농민과 작물이 지역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직불제 대상 농민의 범위는 ①식량 주산지 현(시)의 식량재배 농민, ②식량 재배 면적이 일정 규모에 도달한 대농, ③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모든 농민, ④국영식량 기업에 식량을 판매하거나 구매계약을 체결한 농민 등 지역별로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 직불제 대상 작물의 범위는 ①단일 품목의 식량작물에 대한 보조, ②다수 품목의 식량작물에 대한 보조 등 크게 2가지로 구분됨. 기본적으로 지역별로 자연지리적

조건 등이 상이하어 직불제 대상 품목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해당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작물을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장강 중하류지역의 성(직할시)은 주로 벼, 북부지역과 동북지역은 주로 밀과 옥수수가 선정되고 있음.

- 농경지는 일반적으로 비옥도의 차이가 존재하고 이는 생산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인데 현행 중국의 식량직불제는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식량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품질, 생산량 및 관리수준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신품종, 신기술 또는 선진적인 경험을 보급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표 2 13개 식량 주산지 성(자치구)의 식량직불제 시행 결과, 2004~05년

지급기준	지역	연도	총액 (억 위안)	지급 기준	대상 품목	지급 대상
실제재배면적	흑룡강성	2004	18.52	15.0	벼, 대두, 밀, 옥수수	모든 생산자
		2005	19.29	15.0	벼, 대두, 밀, 옥수수	모든 생산자
	산동성	2004	7.29	13~14	밀	모든 생산자
		2005	8.23	13~14	밀	모든 생산자
	호북성	2004	5.66	10~15	벼, 밀, 옥수수	모든 생산자
		2005	6.42	-	벼, 밀, 옥수수	모든 생산자
	강소성	2004	6.12	20.0	벼	모든 생산자
		2005	6.40	20.0	벼	모든 생산자
	요녕성	2004	5.08	-	옥수수, 벼, 밀, 수수, 잡곡	모든 생산자
		2005	6.35	6.7	옥수수, 벼, 밀, 수수, 잡곡	모든 생산자
	내몽고	2004	5.00	0.06*	옥수수, 밀, 벼	4개 주산지
		2005	5.80	0.06*	옥수수, 밀, 벼	모든 생산자
세금부과면적	사천성	2004	5.22	11.76	벼, 밀, 옥수수	모든 생산자
		2005	6.53	11.76	벼, 밀, 옥수수	모든 생산자
세금부과면적, 재배면적	허북성	2004	6.08	7.00	밀, 옥수수	모든 생산자
		2005	6.50	7.50	밀, 옥수수	모든 생산자
세금부과면적 중 실제 재배면적	강서성	2004	4.90	10.0	벼	모든 생산자
		2005	6.00	10.0	벼	모든 생산자
	호남성	2004	4.34	11.0	벼	모든 생산자
		2005	5.36	13.0	벼	모든 생산자
세금부과 생산량	길림성	2004	13.69	0.083*	옥수수, 벼, 대두	대상 현 생산자
		2005	28.50	0.083*	옥수수, 벼, 대두	모든 생산자
세금부과 면적, 세금부과 생산량	안휘성	2004	6.91	0.11, 0.09*	소맥, 중생종 벼	모든 생산자
		2005	8.65	10.0	소맥, 중생종 벼	모든 생산자
상품식량 수량	허남성	2004	11.60	12.3	밀, 벼	대상 현 생산자
		2005	11.80	12.3	밀, 벼	모든 생산자

주: 지급기준은 위안(畝)이며, \*는 위안/kg을 나타냄.

자료: 杜江. 2006. 『市糧食補貼政策的績效評價』. 華中農業大學碩士學位論文

- 식량직불제 자금은 1993년 설치된 식량위험기금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소요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 식량위험기금의 용도는 식량직불금 지급 이외에도 다양한데 직불금 규모가 증가하면 기금의 부족분이 확대되어 기금 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
  - 지방정부의 식량위험기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정 비율로 공동 조성하고 있지만 기금조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재정압박이 증가하고 있음.
  
- 지역별 식량위험기금 규모의 차이로 인해 지역별로 직불금 지급 총액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
  - 식량 주산지 성(자치구)은 국가의 집중적인 재정 지원으로 대규모의 직불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비주산지(非主產區)의 경우 직불금 규모가 매우 주산지와 비주산지 간 격차가 매우 심함.
  - 13개 식량 주산지 성(자치구)의 식량직불금 총액은 2004년 100.31억 위안에서 2005년 116.13억 위안으로 증가했음.
  - 이에 반해 비 주산지의 식량직불금 총액은 2004년 11.66억 위안에서 2005년 17.83억 위안으로 증가했지만 식량 주산지와는 커다란 격차가 존재함.
  - 직불금 단가는 식량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식량생산량이나 판매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혼용되고 있으며 지역별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직불금의 계산방식은 크게 실제 재배면적, 세금부과면적, 세금부과 생산량, 식량 판매량 등 4가지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역별로 이들 기준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거나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음.
  - 지역간 직불금 계산방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계산의 근거가 되는 통계데이터의 부실로 직불제 시행과정에서 자금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작성자: 전형진 hjchon@krei.re.kr

[참고자료]

葉慧. 2007. 『貿易自由化下糧食財政支持政策研究』. 華中農業大學博士學位論文.

- 五成福. 2006. “我國農業主產區糧食補貼政策的分析評價”, 『地域研究與開發』, 第25卷第6期.
- 劉穎. 2006. 『市場化形勢下我國糧食流通體制改革研究』. 華中農業大學博士學位論文.
- 杜江. 2006. 『市糧食補貼政策的績效評價』. 華中農業大學碩士學位論文.
- 中共中央, 國務院 《關於促進農民增加收入若干政策的意見》(中發[2004]1號, 2004.2.8)
- 財政部 《關於盡快落實對種糧農民直接補貼》的通知(財建明電[2004]2號)
- 財政部 《關於實行對種糧農民直接補貼,調整糧食風險基金使用範圍的實施意見》的通知(財建[2004]75號)
- 國務院 《關於進一步深化糧食流通體制改革的意見》(國發[2004]17號)
- 財政部,國家發展改革委,農業部,國家糧食局,中國農業發展銀行引發 《關於進一步完善對種糧農民直接補貼政策的意見》的通知(財建[2005]59號)
- 財政部 《關於進一步做好2007年對種糧農民直接補貼工作》(財建明電[2007]1號)

## 2. 유전자변형(GMO) 농산물 수급 동향과 전망

### 2.1. 개요

- 중국은 13억 인구를 보유한 대국으로서, 이 방대한 인구의 먹거리 해결에 국내외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중국은 토지, 수자원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부존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전통적 농업 생산방식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국내 농산물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임.
- 유전자변형 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문제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주었음. 2007년 현재 중국 정부는 엽연초, 면화, 감자, 피망을 포함한 31종 GMO 농산물의 상품화 생산을 이미 허가하였으며 GMO 농산물 재배면적은 380만 ha로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음.
- 유전자변형 기술 연구에서도 중국은 이미 기초연구, 응용연구 그리고 상품개발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완전한 기술체계를 갖추고 있음. 또한 많은 특허권을 획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용 가치가 높은 새로운 유전자를 확보하였으며 많은 유전자변형 신품종을 개발하였음.
- GMO 농산물의 관리체계와 수출입 무역도 발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장도 확보하게 되었음. GMO 농산물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짐에 따라 향후 중국 농업에서 GMO 농산물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2.2. GMO 농산물 생산현황

- 중국에서 생물 기술의 연구와 개발은 줄곧 국가 “863프로젝트(1986년 3월에 만들어진 첨단기술 연구 발전 계획을 뜻함)”과 “973프로젝트(1997년 6월에 만들어진 국가중점기초연구발전계획을 뜻함)”의 중점사업이었으며 “제11차 5개년 계획”에서도 유전자변형 작물의 개발은 중요한 과학기술 프로젝트 중 하나로 제시되었음.
- 현재 중국 정부는 면화, 엽연초, 감자, 토마토, 피망을 포함한 31종 GMO 농산물의

- 상품화 생산을 이미 허가했고 17가지 미생물, 2종 유전자변형 물고기, 18종 유전자변형 작물의 노천시험과 자연방사를 허가하였음.
- 과학기술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유전자변형 연구에 사용되고 있는 식물의 종류는 50여 종이고 각종 기능성 유전자는 120여 종이며 총 48종의 유전자변형 작물을 대상으로 한 중간 실험이 진행되고 있음.
  - 이 중 벼, 옥수수, 대두, 감자, 토마토, 피망, 고추는 GMO 식품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유전자변형 면화와 벼의 생산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음.
- 중국 유전자변형 작물의 재배면적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해충 방지에 매우 효과적인 면화(방충 면화) 재배에 집중되고 있음.
- 국제 관련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유전자변형 작물의 재배면적은 2002년 이미 210만 ha에 달해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이어 세계 5위를 차지하였음.
  - 2007년 현재 중국의 유전자변형 작물의 재배면적은 380만 ha에 달하며 이는 세계 6위에 해당함.
- 중국의 대표적인 유전자변형 작물인 방충 면화는 1997년 재배면적이 70만 ha에 달했으며, 1999년 이후 방충 면화가 중국내 국산 면화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약 10% 속도로 증가하였음.
- 2006년까지 중앙정부와 성(省)급 정부가 인가한 방충 면화의 품종은 64종에 달함.
  - 2007년 현재 중국 방충 면화의 재배면적은 360만 ha에 달하며 중국 면화 재배면적의 69%를 차지하였음. 이 중 하북성, 산둥성, 하남성, 안휘성 등 면화 주산지성의 방충 면화 재배 비율은 거의 100%에 이룸.
  - 지난 7년 동안의 보급을 통해 전국 방충 면화 누계 재배면적은 2,000만 ha를 초과하였고 방충 면화 보급 이후 면화 재배 농가의 소득증대 누계액은 250억 위안에 달하며 방직업 부문과 소비자들이 얻은 수익도 120억 위안에 달함.
  - 또한 농약 사용량이 약 60만 톤 줄었고, 살충제 사용량이 50% 감소함으로써 효과적인 면화 생산을 보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업 생태환경과 농민의 건강도 증진시켰음.

- 농민의 1ha당 소득은 평균 220달러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국 농민 소득이 8억 달러 이상 증가한 것과 같음. 이와 함께 유전자변형 작물에 대한 농민들의 신뢰가 더욱 확고해져 거의 100%에 가까운 농민들이 유전자변형 생산 기술을 계속해서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음.
  - 2007년 중국 방충 면화는 외국 기업의 독점적인 위치를 위협하며 국내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도에 수출하는 등 국제시장 경쟁에도 참여하고 있음.
- 방충 면화 외에도 해충 저항성 백양나무와 바이러스 저항성 파파야도 최근 상업화 개발 단계에 진입했으며, 벼는 이미 시험재배를 마친 상태이지만 상업적 생산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임.
- 이 외에도 재배면적이 비교적 많은 유전자변형 농작물로는 곤충 저항성 옥수수, 살충제 저항성 콩,  $\beta$ -Carotene 함유 벼, 내한성 밀, 해충 저항성 오이과 식물 및 성장 속도 제어 토마토 등이 있음.

### 2.3. GMO 농산물 연구기술 발전현황

- 중국은 세계적으로 농업생물기술 응용이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로 GMO 농산물 생산의 빠른 발전은 유전자변형 기술의 발전에 기초하고 있음.
- 중국의 GMO 기술 연구는 1980년대 중반에 시작하여 1990년대 중후반에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졌으며, 2003년 연구개발에 투입된 자금은 2억 위안에 달하였음.
  -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중국은 “국가 유전자변형 식물 연구와 산업화” 특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5.1억 위안의 중앙재정과 3.2억 위안의 지방재정을 투입하여 유전자변형 종합연구를 실시하였음.
  - 현재 면화, 벼, 옥수수, 대두, 땅콩 등 주요 농작물과 나무, 목초, 화훼, 과수의 유전자 변형 기술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세계 선진국과의 수준 격차를 줄였음.
- 지난 20년 동안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중국은 GMO 농산물의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상품 개발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기술체계를 이미 수립하였으며, 많은

- 특허권을 획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용 가치가 높은 새로운 유전자를 보유하는 한편 많은 유전자변형 신품종을 개발하였음.
- 유전자 바이러스와 사료의 생물성 첨가제를 대표로 한 많은 생물기술 산업도 출현하고 있으며, 벼 성장발육 유전자, 신행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 등 새로운 유전자를 중심으로 한 기술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음.
- 중국의 유전자변형 작물 육종 수준은 개발도상국 가운데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일부 부문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중국 생물기술 산업발전보고’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이미 병충해 저항성, 내한성, 바이러스 저항성, 품질 개량 및 발육 방면에서 100여개에 달하는 유전자를 복제하였으며 여러 가지 식물 유전자 기술을 개발하였음.
  - 또한 유전자변형 식물 180여 종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하였고 병충해 저항성, 내한성, 내염(耐鹽)성, 제초제 저항성, 품질 개량, 엽록체 유전자, 식물을 이용한 생물 반응기 등 유전자 농작물 연구 분야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음.
- 중국은 주요 농작물의 유전자변형 연구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음.
- 벼는 이미 100여종의 유전자변형 품종을 배양하여 80여 종은 자연 방사에 들어갔고, 한 개 품종은 시범재배 단계에 진입하였음. 또한 3가지 해충에 저항력이 있는 벼는 2년여의 자연 방사 시험을 통과한 상태임.
  - 밀은 진딧물 저항성, 내한성, 내염성 등의 유전자변형 밀을 배양하여 중간시험 단계에 진입하였음.
  - 대두의 경우 병충해 저항성,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변형 대두를 배양하였고 진딧물 저항성 대두는 중간시험 단계에 진입했으며 Bt 유전자를 전환시킨 심식충(心食蟲) 대두는 자연 방사를 신청한 상태임.
  - 옥수수는 36종의 새로운 해충 저항성 자연 교배 계통, 2종 해충저항성, 고생산성 우량 품종 유전자변형 옥수수가 전국 6개 옥수수 주산지 성에서 해충 저항성 시범 시험단계에 진입하였음.

## 2.4. GMO 농산물 관리체계와 제도

- 중국은 GMO 농산물에 대한 비교적 완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GMO 농산물의 생산과 기술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중국의 유전자변형 생물의 관리 기구와 그 주된 기능은 다음과 같음.
  - 농업부 농업유전자변형 생물안전 관리지도팀(農業轉基因生物安全管理領導小組)은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 연구를 책임지고 있음.
  - 농업부 유전자변형 생물 안전관리관공실(轉基因生物安全管理辦公室)은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 안전에 관한 협력과 관리를 책임지고 있음.
  - 각 지방정부의 농업 주관부문은 이에 상응하는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 안전관리 기구를 설치하고 있음.
  -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 안전관리 관련 부서연석회의는 농업부, 대외경제무역협작부, 위생부, 과학기술부, 국가질검총국, 국가환경보호총국 등의 책임자들로 구성되었으며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연구와 협력을 책임지고 있음.
  - 국가농업유전자변형 생물안전위원회(國家農業轉基因生物安全委員會)는 각 관련 부문,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에서 생물기술 분야와 생물안전 연구 및 관리부문에 종사하는 58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 안전 평가를 책임지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생물안전 기술 관리분야의 업무뿐만 아니라 관련 제도의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음.
  - 2001년 6월 농업부는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관리조례(農業轉基因生物安全管理條例)’를 반포하였으며, 2002년 1월에는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평가관리규정(農業轉基因生物安全評價管理辦法)’, ‘농업유전자변형생물수입안전관리규정(農業轉基因生物進口安全管理辦法)’과 ‘농업유전자변형생물표식관리규정(農業轉基因生物標識管理辦法)’ 등 3가지 부가적 조치를 발표하였음.
  - 2002년 4월 8일 위생부는 ‘유전자변형식품위생관리규정(轉基因食品衛生管理辦法)’을 발표하였음.

- 안전평가와 관련된 규정에 근거하면 수입 GMO 농산물의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안전검사는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GMO 농산물 무역의 정상적인 진행을 고려하여 중국 농업부는 2001년 3월 11일 ‘유전자변형농산물안전관리임시조치공고(轉基因農產物安全管理臨時措施公告)’를 발표하였음.
- 외국회사는 수출국의 안전확인서를 제시하여야만 중국의 임시증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농업유전자변형생물표식관리방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GMO 농산물을 계속해서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됨.

## 2.5. GMO 옥수수의 상업화 가능성

- 중국 농업과학원이 개발한 피타아제(Phytase)함유 GMO 옥수수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이르면 내년에 상업화 생산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전망도 흘러나오는 상황임.
- 이것은 세계 최대의 비(非)GMO 옥수수 생산국인 중국도 이제 곧 GMO 옥수수 재배국 반열에 오른다는 것을 의미함.
- 중국 농업과학원은 자체개발한 피타아제(Phytase) 함유 GMO 옥수수에 대하여 지속적인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생물유전자공정 안전위원회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안전증서 발급을 요청하였음.
- 이는 새로운 작물 품종의 상업화 유통 및 생산 전 단계에서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는 절차임.
- 중국 농업과학원의 한 연구원의 설명에 의하면 피타아제(Phytase) 함유 GMO 옥수수를 이용하여 가축사료를 만들어 돼지와 같이 자체적으로 인을 생산할 수 없는 가축에게 먹이면 음식물에 들어 있는 인의 흡수력이 좋아짐과 동시에 분변을 통한 인 유실을 줄일 수 있음.
- 또한 가축분뇨의 인 함량이 낮아지면 하천에 방류되는 인이 적어져 그만큼 환경오염도 줄어들게 됨. 이 옥수수는 단백질 함량과 영양가치가 기존 옥수수보다 훨씬 높음.

- 중국오루이진회사(Origin Agritech)가 피타아제(Phytase) 함유 GMO 옥수수의 상업화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게 될 전망이다. 만약 심사를 순조롭게 통과하게 된다면 이 회사는 2009년부터 GMO 옥수수 종자의 중국내 시판을 개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중국은 세계 2위의 옥수수 생산대국으로서 아직은 국내 생산량이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음.
  - 그러나 국민소득 증가로 육류 소비가 늘어나면서 축산 사료용 옥수수 수요가 증가하여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 미국과 아르헨티나는 향충 혹은 항제초제 GMO 옥수수 위주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세계 주요 GMO 면화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떠한 GMO 옥수수에 대해서도 허가를 하지 않았음.
  - 그러나 중국 정부는 GMO 쌀에 앞서 피타아제(Phytase) 함유 GMO 옥수수의 상업화 생산을 허용할 전망이다.
  - 쌀은 중국의 주식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GMO 쌀의 상업화 생산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실정임.

## 2.6. GMO 농산물 무역 및 유통 현황

### 가. GMO 농산물 수입 현황

- 중국이 주로 수입하는 GMO 농산물은 대두, 옥수수, 면화와 유채 등으로 2002년도에 중국의 유전자변형 작물의 수입량(652.4만 톤)과 수입액(14.3억 달러)은 전반기에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냈음.
- 수입 GMO 농산물 가운데 유전자변형 대두의 수입액(13.8억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3년 연속 80% 이상이었음. 최근 중국은 매년 2,000만 톤 이상의 유전자변형 대두를 수입하고 있는데 그 수입량과 수입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나. GMO 농산물 수출 현황

- 중국은 유전자 조작 작물의 주요 재배 국가이기는 하지만 주로 유전자변형 면화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국제 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중국산 GMO 농산물은 면화가 대부분임.
- 1999년 중국이 수출한 유전자변형 면화와 1차 가공품은 3만 톤이었으며 수출액은 2,728억 달러였음.
- 2004년에 이르러 수출량은 5.9만 톤, 수출액은 6,117억 달러였음. 현재 중국은 GMO 농산물의 수출에 있어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 다. GMO 농산물 유통 실태

- 소량의 피망과 토마토를 제외하고 중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전자변형 식품은 기본적으로 수입품임.
- 2005년 말 현재까지 중국 농업부는 대두, 면화, 옥수수, 유채 등 총 18개 품종의 가공원료용 수입을 승인하고 안전증서를 발급하였음. 이는 국제적인 추세인 유전자 변형 식물 제품은 모두 중국시장에 들어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 더욱이 중국은 매년 2,000만 톤 이상의 유전자 변형 대두를 수입하고 있어 현재 중국 국내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두유의 80%가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고 볼 수 있음.
- 중국정부의 관리규정에 의하면 유전자변형 성분을 함유한 식품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지금까지 중국의 유전자변형 식품 표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의 유전자변형 식품이 아무런 표시 없이 유통되어 왔음.
- 중국 정부의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 표시 목록 관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유전자변형 표시 등록을 할 필요가 없음.
- 일례로 유전자변형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네슬레(Nestle) 식품의 경우 중국시장에서는 유전자변형 표시를 할 의무가 없는 셈이며, 이로 인해 네슬레회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 고소사건에서 2심까지 원고(소비자)가 패소한 상황임.

- 중국시장에는 이미 다량의 유전자변형 식품이 존재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유전자변형 식품의 종류, 규모, 비율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

## 2.7. GMO 농산물 발전 전망

- 중국 GMO 농산물의 생산과 생산기술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해왔으며 앞으로도 그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세계 인구 증가와 바이오 연료 생산으로 인한 곡물 수요 급증, 기후 변화와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물 생산량 감소 등으로 국제 농산물 가격 상승이 장기화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식량 안보문제가 새롭게 부각되었으며 각국은 이에 대처하기 위한 각종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중국도 예외가 될 수 없음. 오히려 세계 최대 농산물 소비국인 중국의 부담은 어느 나라보다 크다고 할 수 있음.
- 농산물 수요 측면에서 보면 경제발전으로 인한 국민의 소득증대는 농산물 소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도시인구와 전체 인구의 증가로 인해 농산물 수요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2030년 중국의 인구가 16억에 육박할 것이라고 봤을 때 현재 중국의 농업 생산력으로는 충분한 공급이 어려운 상황임.
  - 중국은 현재 약 5억 톤의 식량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인구가 16억에 달할 경우, 1.5억 톤의 식량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됨.
- 농산물 공급 측면에서는 토지, 수자원 등 농업 생산에 필요한 부존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 증대에는 제약이 큰 상태임.
  - 경제발전 과정에서 급속한 도시화와 공업화로 농경지가 대량 잠식되고 있으며 여기서 빚어지는 수자원 오염과 지하수의 남용은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주고 있음.

- 수요와 공급측면의 제약요인으로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농업분야의 기술 진보를 통한 생산성 증대임.
  - 그 중에서도 GMO 농산물의 생산 확대가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최근 중국 과학원 황지쿤(黃季焜)박사를 비롯한 많은 중국내 영향력 있는 농업전문가들의 GMO 농산물 관련 연구가 이를 잘 뒷받침해주고 있음.
  - GMO 농산물 보급을 통한 생산성 증대는 농민소득 증대를 가져다주었고 화학비료, 농약 등 투입요소 감소는 생태환경 보존과 농민 건강증진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낳았음.
  
- 중국은 이미 비교적 완전한 유전자변형 연구기술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서 GMO 농산물 생산과 기술개발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GMO 농산물의 안정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생산량 확보를 위한 맹목적 상업화는 지양할 것으로 전망됨.
  - GMO 농산물의 상업화에 앞서 관련 법규의 강화, 식품안전 감독기구의 기능 정상화는 물론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주력할 것으로 보임.
  - 결국 중국의 입장에서 식량안보와 식품안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음.

작성자: 정정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장)  
cgchung@krei.re.kr

**[참고자료]**

- “我國轉基因農產品發展現況”, 中國農業部農村經濟研究中心(內部資料), 2008. 06.
- “首個轉基因玉米品種可能獲批,最早將于明年商業種植”, <http://www.aweb.com.cn>, 2008.06.13.
- “奧瑞金承接中國首家轉基因玉米製種”, <http://seed.aweb.com.cn>, 2008.07.04.

### 3. “일촌일품(一村一品)”의 발전 현황과 전망

#### 3.1. “일촌일품” 추진 배경

- 중국에서 “일촌일품”에 관한 논의는 1980년대 중반에 이미 시작되었고 정책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80년대 후반임.
  - 1978년 개혁개방 이후 1980년대 중국의 농업부문은 가정 도급책임제의 실시와 향진기업의 발달에 힘입어 유사 이래 가장 빠른 발전을 기록하였음. 이런 상황에서 “일촌일품”운동이 전개된 것은 다음과 같은 심층적 원인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임.
  - 당시 농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농민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향진기업이 1,000~1,700만 명의 농촌 노동력을 흡수함으로써 농촌 노동력 과밀화를 어느 정도 해소하였으며 상품시장도 점차 확대되어 나갔음.
  - 그러나 경제발전과 사회 수요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농산물 생산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농산물의 품종, 수량, 품질 및 시장 경쟁력 측면에 있어 커다란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농산물 생산력 측면에서도 충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음.
  - 어떻게 하면 농촌 상품경제 발전을 농촌 산업구조와 더욱 합리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을까? 농촌 상품경제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하면 지역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농촌 상품경제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하면 농촌 노동력을 더욱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농촌 상품경제 발전을 지역 번영 및 농민 소득증대와 더욱 효율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농촌 상품경제 발전을 통해 농촌의 2매력을 드높이고 농민들의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의 해답을 바로 “일촌일품”에서 찾으려고 한 것임.
- 1990년대 들어서서 토지도급제를 통한 잠재적 생산력 증대는 그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고 도시화와 시장경제의 발전으로 인해 향진기업의 발전 공간도 크게 축소되었음.
  - 도시화와 공업화는 많은 농경지를 잠식했고 공업화 발전의 목적으로 농촌의 자본이 도시로 유입되었으며 약 1.3억의 농촌 노동력이 도시로 이주하였음. 이처럼 농촌경제 환경의 변화와 기본 생산요소의 유출로 인해 소위 말하는 “삼농”문제를 양산하게 됨.

- 이와 같은 “삼농”문제는 결국 도농간의 소득 격차, 공업과 농업 간의 발전 격차 및 지역 간의 발전 격차 등으로 가시화되었음.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일촌일품”은 농민 소득증대, 농업 발전, 지역 균형발전 등의 “삼농”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음.

### 3.2. “일촌일품” 발전 단계

- “일촌일품”에서의 “일촌”은 촌을 기초로 한 지역경제를 뜻하며 하나의 촌이 될 수도 있고 그 범위가 확대되어 하나의 향(鄉) 혹은 하나의 현(縣)이 될 수도 있음.
  - “일품”은 단순히 하나의 독립적인 농산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세 가지 측면의 의미를 포함함.
    - 첫째, 상품을 의미함. 즉 지방 특색이 있고 부가가치가 높으며 주도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농업 특산물을 뜻함.
    - 둘째, 브랜드를 의미함. 즉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고 영향력이 있는 지역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임.
    - 셋째, 품격을 의미함. 즉 해당 상품과 지역과 관련된 가치관과 정신 그리고 주민들의 열정을 담는 것임.
- “일촌일품”은 농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종의 수단으로써 지역의 비교우위를 살리고 지역성을 가미한 브랜드를 만들며 시장경제와 상호 연계된 규모경제를 형성하는 것임. 이는 중국이 1990년대부터 추진한 농업 산업화경영의 주요 내용과도 잘 부합함.
- 중국의 “일촌일품” 발전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거쳤음.
  - 첫째, 학습모방단계임. 20세기 80년대 후반 일부 성, 자치구에서 일본 대분현(大分縣)을 시찰한 후 본 지역에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여 전문 생산을 실시함에 따라 다량의 전문촌(村)과 특화현(縣)이 나타났음.
  - 둘째, “일촌일품”을 전문합작조직과 선도기업의 발전과 결합시킨 단계임. 전문촌

(村)과 특화현(縣)이 건설한 전문화 생산기지는 합작사와 선도기업의 생산기지가 되면서 점차 규모를 확대하였음.

- 셋째, 일체화된 경영을 실시하는 단계임. 전문화 생산에서 가공, 판매, 브랜드화 등으로 확대되면서 하나의 완전한 산업고리를 형성하게 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적 범위를 넘어선 규모화 발전 추세가 나타나기도 하였음.
- 최근 들어 강서(江西), 호북(湖北), 섬서(陝西), 내몽고(內蒙古), 흑룡강(黑龍江), 강소(江蘇), 절강(浙江), 상해(上海) 등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일촌일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였음.

### 3.3. “일촌일품” 정책 목표 및 추진 방식

- 농촌은 지역마다 다양한 경제 환경과 부존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촌일품”에서 표준화 또는 정형화된 모델을 갖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 특색을 띤 다양한 발전모델들이 나타나고 있음. 물론 각각의 모델을 통해 “일촌일품”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지향하는 목표도 다양할 수밖에 없음.

#### 가. 전문촌(村) 건설 및 특화 산업 추진

- 강서(江西)성 남창(南昌)시의 경우 2002년부터 “일촌일품”을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시 전체를 특색에 따라 블록화한 경제발전 구조를 형성하였음.
- 현재 산업 특색을 갖춘 236개의 “일촌일품” 전문촌이 형성되었고 전문생산농가의 수가 43,314호에 달함. 이는 시 전체 전문촌 총 농가수의 63.5%에 해당함.
- 이미 8대 특산물 시범재배 기지와 10대 우수품질 농산물 생산기지를 조성하였고 3대 특화 산업단지를 육성하였음. 즉 수산물, 축산물, 우수품질의 벼를 위주로 한 특화 농업 산업단지, 생태농업, 관광농업을 위주로 한 생태농업 산업단지, 무공해 채소, 화훼와 특용작물을 위주로 한 정밀농업 산업단지임.

## 나. 원료 공급기지 조성 및 농산물 가공업 발전 촉진

- 각급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각종 전문촌과 특화현은 “일촌일품”을 실시함으로써 농산물 가공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였음.
  - 이를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특산물의 경제적 효율을 높일 수 있음.
  - 예를 들어 강소(江蘇)성의 홍량진(紅樑鎮)에서는 구두술, 애완견 빗 등의 원료인 풍양(楓楊)나무를 재배하여 현지 가공기업에 공급하고 있음. 이 기업의 연간 생산액은 7,000만 위안에 달하고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총액이 600만 달러이며 2,000명에 달하는 농촌 잉여노동력을 흡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고용창출은 물론 농민 소득증진에도 커다란 역할을 하였음.

## 다. 부존자원 비교우위에서 생산경영 비교우위로 전환, 농민 소득증대 촉진

- 각 지역은 자원의 특성과 시장의 요구에 근거하여 비교우위 상품과 비교우위 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한 산업이 발전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부유해지고 지방경제가 활력을 띤다는 논리를 실현하였음.
  - 흑룡강(黑龍江)성 조동(肇東)시의 경우, “일촌일품” 추진에 각종 자원을 종합하여 전문화 생산을 발전시켰으며 “거위 향(鄉)과 양계 향(鄉), 채소 촌과 한약재 촌, 고추마을과 양배추마을, 양 전문농가와 소 전문농가” 등 유사 품종 혹은 다른 품목을 각각 전문화시켰음.
  - 2004년 시 전체 농촌 전문화 생산수입은 17.37억 위안에 달했으며 이는 농업 총소득의 45%에 해당함. 고추마을인 오호(五湖)촌의 경우, 2006년 1,011동(약 53.5ha)의 비닐하우스 재배를 실시하여 456만 위안의 소득을 얻었으며 농가당 1.4만 위안의 소득을 올린 셈임.
  - 채소마을인 강가(姜家)촌의 경우, 마을 전체에서 98%의 농가가 채소를 생산하고 있고 재배면적은 366.7ha로써 마을 전체 경지면적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1무(=0.067ha)당 평균 500~1,000위안의 소득을 올렸음.

## 라. 브랜드 개발 및 농산물 품질 안전수준과 경쟁력 제고

- “일촌일품” 주도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은 브랜드 개발에 힘쓰고 있음. 품질을 통해 브랜드를 형성하고 브랜드를 통해 시장을 개척하는가 하면 브랜드들 통해 수익률을 높임.
  - 상해(上海)시의 경우, 전문촌(村), 특화진(鎮) 건설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하고 농산물 기술력이 높은 촌과 진을 선별하여 브랜드화 전략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농산물의 품질안전을 강조하였음.
  - “하나의 상표를 통해 하나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한 지역주민들에게 부를 가져다 준다”는 전략 목표와 장기적 농산물 브랜드 육성 계획을 설정하고 “일진일업(一鎮一業)”, “일촌일품(一村一品)” 혹은 “다진일업(多鎮一業)”, “다촌일품(多村一品)”의 지역성 전문화 생산구도를 형성하였음.
  - 상하이시는 각 기업들이 상하이시 유명상표와 중국 유명상표로 선정되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음. 2004년 말까지 상하이시에 등록된 농산물 상표는 총 697개에 달하며 그 중에 상하이시 유명상표는 11개, 중국 유명상표는 1개가 포함되어 있음.

## 마. 농업 산업화 경영 촉진

- “일촌일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은 해당 지역 특화 자원의 이점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산업화 경영마인드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음.
  - 특히 발전 잠재력이 큰 선도기업과 농민전문협작조직을 적극 육성하고 농산물 생산기지에 위탁하여 파종-재배-가공, 생산-유통-판매, 농업-공업-상업 등 일체화된 생산경영체계를 점차 형성하고 지역경제의 특화, 특화 경제의 규모화, 규모 경제의 산업화를 실현하였음.
  - 2002년 내몽고(內蒙古) 농업 산업화 선도기업 영성노요(寧城老窯)기업은 2만 ha의 수수 전문 생산기지, 2만 ha 살구 전문 생산기지와 0.7만 ha의 포도 전문 생산기지를 건설하여 지역 농업 생산구조를 바꾸어놓았음. 영성노요기업의 선도 하에 20여 개의 크고 작은 선도기업이 설립되었고 전문촌과 전문농가도 형성되어 현지 산업화경영 수준을 높였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였음.

### 3.4. 향후 “일촌일품” 발전 방향

- “일촌일품”은 중국 신농촌건설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이며 생산발전과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현지 자원을 충분히 이용하여 주도 산업을 발전시키고 특화 경제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전략임.
  - 동시에 농업 산업화경영을 추진하는 중요한 기초로서 현대농업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신농촌건설을 추진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음.
  - 신농촌건설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시장경제의 요구에 따라 “일촌일품”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 분명함.
- 여러 중국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향후 중국의 “일촌일품” 발전 방향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됨.

#### 가. 규모화

- 기지의 규모화는 “일촌일품”을 통해 농업 산업화경영을 이루는 기초임.
  - 먼저, 선도기업으로 하여금 “일촌일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 기지를 건설하도록 장려함으로써 규모화 된 생산기지를 선도기업 발전의 전진기지로 삼게 하고 특색을 부각시키고 비교우위를 발휘하며 규모경영을 실현하고 상품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함.
  - 선도기업과 참여 농가들이 공동 투자를 통해 기지를 건설함으로써 자연재해, 시장가격 변동 등 각종 리스크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함. 또한 생산기지의 규모화는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품질 표준화를 이루며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도 도움이 됨.

#### 나. 생산의 표준화

- 표준화 생산은 농산물의 품질과 경쟁력을 높이고 “일촌일품”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략임.

- 소비자들의 식품안전 의식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일촌일품” 주도 상품의 생산, 가공, 포장, 저장 등의 기준과 기술규범을 제정하여 상품의 안정성 제고는 물론, 시장의 요구에 따른 표준화된 상품을 생산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품질 관리시스템과 표준화 관리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임.

## 다. 경영의 산업화

- 계속해서 농업 산업화경영 수준을 높이고 비교우위 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일촌일품”에 더 큰 발전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선도기업과 농민전문협작조직을 발전시켜 “선도기업+농가”, “협작사+농가” 혹은 “선도기업+협작사+농가”의 발전 모델을 형성함으로써 “일촌일품”의 생산 전(前), 생산중(中), 생산후(后)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업고리를 만들고 2차 또는 3차 산업과도 긴밀하게 연계시켜 나감.
- 특히 “일촌일품” 주도 농산물의 가공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기술력 제고, 시장경쟁력 강화, 농산물의 상품화 수준과 부가가치 제고를 실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라. 정보 네트워크화

- 정보화는 “일촌일품” 추진에 있어 중요한 내용이며 수단임.
- 농민들은 주로 전화, TV, 인터넷 등을 통해 생산, 가격, 시장 관련 정보를 획득함. 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는 오늘날, 빠른 시장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음.
- 특히, 인터넷 이용은 영역을 불문하고 확대되고 있는데 상품 개발, 상품 홍보, 가격 동향 분석, 정보공유 등 “일촌일품” 추진 과정에서 활용가치가 대단히 큼.

## 마. 상품의 브랜드화

- 브랜드가 시장을 개척하고 수익을 결정지으며 상품의 경쟁력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상품의 생명력을 결정지음.

- 우선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일촌일품” 상품의 브랜드를 공고히 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임. 그러기 위해서는 품질을 높이고 홍보를 강화해야 함. 또한 새로운 “일촌일품” 농산물의 브랜드를 개발하고 등록하는 것도 중요함. 브랜드는 곧 상품의 얼굴이자 상품의 품질을 대변하기 때문임.

### 3.5. 요약 및 결론

- 21세기 들어 중국의 “삼농”문제는 개선되기 보다는 오히려 더욱 심화되는 추세를 나타내었음.
  - 그 예로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를 들 수 있음. 화폐 소득에 각종 사회복지 혜택까지 포함할 경우, 농촌주민과 도시민의 소득 격차는 대략 1:6으로까지 확대됨.
  - 결국 “삼농”문제는 정부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2004년 중국 정부는 연초 정부업무보고에서 “삼농”문제 해결을 모든 사업에 있어 “최우선(重中之重)”에 둠으로써 삼농문제의 심각성을 확인시켜 주었음.
- 이듬해인 2005년 11차 5개년 계획과 관련하여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을 중국의 현대화 과정에서의 중요한 역사적 임무로 규정하였음.
  - 신농촌건설은 “삼농”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음. “일촌일품”운동은 신농촌건설의 기본 취지와도 잘 부합하며 특히 5대 방침인 “생산발전(生産發展), 생활풍요(生活寬裕), 향토문명(鄉風文明), 마을정돈(村容整潔), 관리민주(管理民主)”와도 상통하는 부분이 많음.
- 이와 같은 신농촌건설의 목표 하에 “일촌일품”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으며 실지로 최근 중국 농촌 경제발전, 농업 발전 및 농민 소득증대에 있어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중국의 “일촌일품”은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음.
  - 식량작물에서부터 채소, 과일 및 축산부문에 이르기까지 그 품목의 다양성 뿐만 아니라 추진 방식 또한 대동소이 한듯하면서도 지역에 따라 차별화 양상을 나타냄.

- 한편 최근의 농산물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농업전문가들은 농산물 가격이 한 단계 상향 조정되어야 농민소득 제고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일촌일품”은 농산물의 질적 향상과 명품화를 촉진시켜 가격을 제고시키고 농민의 소득 증대를 가능케 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
- 또한 “일촌일품”을 통해 저급 농산물로 인식되어 있는 중국농산물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에서의 중국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작성자: 정정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장)  
cgchung@krei.re.kr

#### [참고자료]

- “我國一村一品專業村已達4萬多個”, 新華網, 2007.9.28.
- “十萬大學生下鄉當村官”, 農村報, 2008.4.11.
- “發展發展一村一品 加快農業發展”, 中國新農村建設網, 2008.4.29.
- “江西一村一品成效顯著, 農民增收村鎮創牌”, 新華網江西頻道, 2008.7.8.
- “農民增收的長效機製需加快建立”, 經濟日報, 2006.1.17.

## Ⅱ. 농업·농촌경제 동향

### 1. 가격 동향

#### 1.1. 도매시장 가격 동향: 2008년 1~5월

##### 가. 채소<sup>11</sup>

- 2008년 초 남부지방의 저온과 폭설로 채소 생산에 커다란 피해를 입은 데다 수송이 원활하지 못해 2월 채소 도매시장가격지수는 2000년 이래 가장 높았음.
  - 1, 2월 채소 도매시장 가격지수(월 평균)은 각각 전월대비 12%, 31% 상승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1월 10일~2월 5일 사이에 남부지방에 저온현상이 나타나고 폭설이 내려 노지채소에 커다란 피해를 입혀 생산이 급감했기 때문임. 폭설로 채소의 수송이 지연되었던 것도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었음.
  - 2월 5일 이후 남부지방의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날씨가 호전되어 3월 채소 도매시장가격은 2월에 비해 12% 하락하였음.
- 4월에는 비교적 기후가 좋아 채소류의 시장 공급량과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가격이 점차 하락하는 가운데 5월에 채소가 집중적으로 출하되어 가격 하락세를 유지하였음.
- 4월 엽채류의 kg당 평균 도매가격은 1.2위안으로 전월 대비 21.6% 하락, 전년 동기 대비 9.1% 상승하였음.
  - 이 중 배추, 셀러리, 시금치, 청경채의 kg당 가격은 각각 0.9위안, 1.3위안, 1.4위

11 農業部. 2008.4.21. “2008年一季度我國蔬菜市場形勢”; 農業部. 각 월 “菜籃子產品批發市場價格動態分析”을 참조하여 재구성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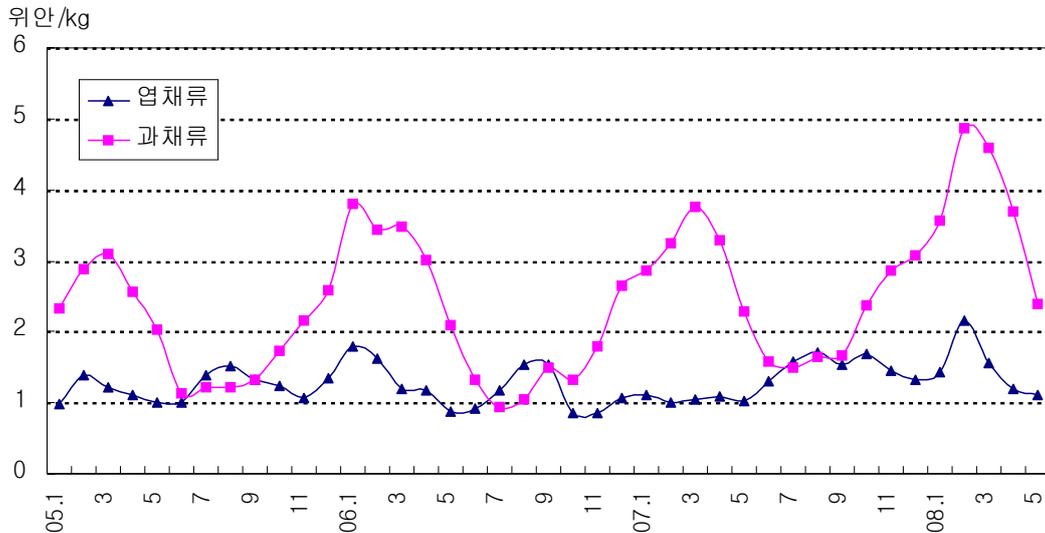
안, 1.3위안으로 배추가격이 전월 대비 21.6% 상승한 외에 나머지는 전월 대비 각각 27.9%, 27.8%, 34.7% 하락하였음.

- 그러나 이들 4종 채소의 전년 동기대비 가격은 각각 2.5%, 16.8%, 7.6%, 6.5% 상승하였음.

○ 4월 과채류의 kg당 평균 도매가격은 3.7위안으로 전월 대비 20.7% 하락, 전년 동기 대비 15.5% 상승하였음.

- 이 중 토마토, 콩꼬투리(豆角), 오이, 가지, 피망의 kg당 가격은 각각 3.1위안, 5.5위안, 2.4위안, 3.5위안, 4.6위안으로 전월 대비 각각 3.6%, 27.0%, 29.9%, 22.8%, 19.3% 하락,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2%, 20.5%, 8.6%, 11.1%, 7.1% 상승하였음.

그림 2 업체류 및 과채류의 도매시장가격 변화 추이, 2005~2008.5



자료: 農業部. 각 연도, 각 월 “菜籃子產品批發市場價格動態分析”(http://www.agri.gov.cn)

○ 5월 업체류의 평균 도매가격은 kg당 1.1위안으로 전월 대비 5.9% 하락, 전년 동기 대비 10.9% 상승하였음.

- 이 중 배추, 셀러리, 시금치, 청경채의 가격은 kg당 각각 0.8위안, 1.4위안, 1.4위

안, 1.0위안으로 셀러리와 시금치의 가격은 전월 대비 각각 4.3%, 0.2% 상승, 배추와 청경채는 전월 대비 각각 8.3%, 23.0% 하락했음.

- 이 중 청경채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3.3% 하락한 외에 나머지 3종 엽채류 품목은 모두 20% 정도 상승했음.

○ 5월 과채류의 평균 도매가격은 kg당 2.4위안으로 전월 대비 34.0% 하락, 전년 동기 대비 14.3% 상승했음.

- 이 중 토마토, 콩꼬투리(豆角), 오이, 가지, 피망의 가격은 kg당 각각 2.4위안, 3.6위안, 1.4위안, 2.7위안, 2.6위안으로 전월 대비 각각 24.2%, 35.3%, 43.6%, 23.7%, 43.2% 하락했음.

- 한편 오이와 피망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7%, 4.7% 하락, 토마토, 콩꼬투리(豆角), 가지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6.0%, 13.4%, 20.1% 상승했음.

## 나. 과일<sup>12</sup>

○ 2008년 초 남부지방의 저온과 폭설로 호남성, 호북성, 귀주성, 강서성, 안휘성, 강소성, 광둥성, 절강성 등이 커다란 피해를 입었음.

- 이들 지역에서 감귤, 오렌지, 깡깡, 유자 등의 과일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 중 감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음.

- 지속적인 저온으로 화남(華南)지역의 수확이 완료되지 않은 바나나, 목과, 여름 오렌지 등이 피해를 입었음.

○ 1~3월 과일 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약 20% 정도 높게 형성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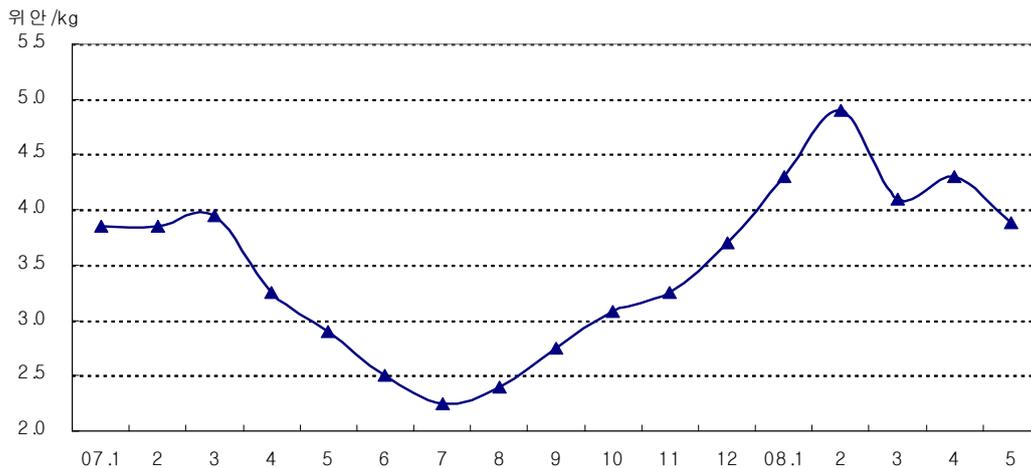
- 1월에는 남부지방의 저온과 폭설로 과일 도매시장 가격이 전년 동기대비 23% 급등하였음. 배를 제외하고 모든 과일의 도매시장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특히 복숭아, 포도, 열대과일의 가격이 전년 동기대비 30% 이상 상승하였음.

---

12 農業部. 2008.4.22. “2008年一季度我國水果市場形勢”; 農業部. 각 월 “菜籃子產品批發市場價格動態分析”을 참조하여 재구성 하였음.

- 2월 가격은 1월에 비해 5퍼센트 포인트 하락하였지만 전년 동기대비 18% 상승하였음. 이중 복숭아와 감귤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하락한 반면 기타 과일은 상승하였음.
  - 3월 가격은 2월보다 12퍼센트 포인트 더 하락하였으나 전년 동기대비 6% 상승하였음. 이 중 감귤과 열대과일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하락하였으며 열대과일의 경우 30% 이상 하락하였음.
  - 품목별로 보면 복숭아, 배, 포도, 사과, 열대과일의 도매시장 가격이 전년 동기대비 상승하였으며, 반대로 감귤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다소 하락하였음.
- 4월 과일의 kg당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4.3위안으로 전월 대비 6.9%, 전년 동기 대비 31.9% 상승하였음.
- 이 중 수박, 배(야리), 사과(후지),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의 kg당 도매가격은 각각 4.8위안, 2.5위안, 4.5위안, 3.8위안, 9.1위안, 3.2위안으로 수박, 배(야리), 바나나는 전월 대비 각각 20.3%, 7.1%, 4.6% 상승하였고, 사과(후지), 파인애플, 망고는 전월 대비 각각 1.0%, 3.0%, 5.9% 하락하였음.
  - 이상의 6종 과일의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6.4%, 33.2%, 38.0%, 14.2%, 22.3%, 37.7% 상승하였음.

그림 3 과일류의 도매시장가격 변화 추이, 2007~2008.5



자료: 農業部. “2008年5月份菜籃子產品批發市場價格動態分析”(http://www.agri.gov.cn)

- 5월 과일의 kg당 평균 도매시장 가격은 전월 대비 5.9% 하락, 전년 동기 대비 28.5% 상승하였음.
- 이 중 수박, 배(야리),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의 도매시장 가격은 전월 대비 각각 39.9%, 0.6%, 3.1%, 4.4%, 6.0% 하락, 사과(후지)는 2.5% 상승했음.
- 수박, 배(야리), 바나나, 사과(후지),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의 5월 도매시장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8%, 37.0%, 46.6%, 29.0%, 32.5%, 10.9% 상승하였음.

## 다. 축산물<sup>1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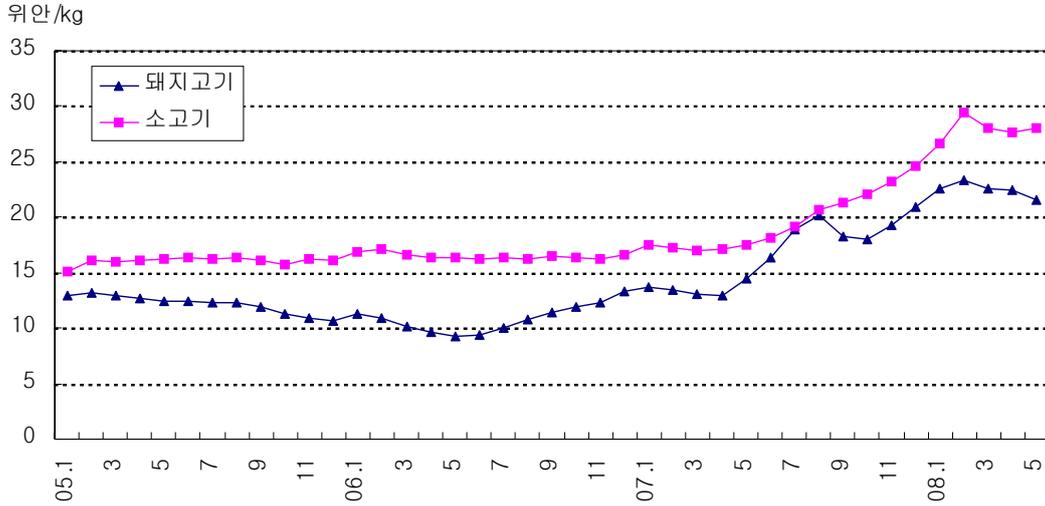
### □ 돼지고기(豬肉)

- 2007년 5월 이후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나타냈던 돼지고기 도매시장 가격은 2008년 2월 중 최고치를 기록한 후 3월 들어 처음으로 하락세를 나타냈으며 5월 현재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냈음.
- 2월 가격은 23.4위안/kg으로 전월 대비 3.2%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기대비 무려 75.3%나 상승했음.
- 3월 가격은 22.6위안/kg으로 2월 대비 3.3% 하락하였지만 하락폭이 미미하고 전년 동기대비 73.2% 상승하여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음.
- 4월 가격은 1월 초 수준을 회복한 22.5위안/kg으로 3월 대비 0.5% 하락, 전년 동기대비 75.2%상승하였음.
- 4월 중 돼지고기 도매시장 가격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강서성으로 전월 대비 10.8% 상승한 27.7위안/kg이었으며, 2위는 복건성으로 전월과 비슷한 26.0위안/kg이었음.
- 이외 대부분의 지역은 하락세를 나타냈으며 가장 큰 하락폭은 7.7%였고, 가격이 가장 낮은 지역은 하남성으로 20위안/kg을 나타냈음.

---

13 農業部. 2008.4.22. “2008年一季度牛羊肉市場形勢”; 農業部. 각 월 “菜籃子產品批發市場價格動態分析”을 참조하여 재구성 하였음.

그림 5 돼지고기, 소고기의 도매시장가격 변화 추이, 2005~2008.5



자료: 農業部. 각 연도, 각 월 “菜籃子產品批發市場價格動態分析”(http://www.agri.gov.cn)

○ 5월 초 사천성에서 발생한 대지진은 현지의 돼지 사육에 어느 정도 손실을 끼쳤지만 지진 피해가 컸던 지역이 돼지 주산지인 아닌 관계로 사천성의 돼지고기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5월 가격은 kg당 21.5위안으로 전월 대비 4.5% 하락했고 전년 대비 48.4% 상승했다.

- 지역별로는 강서성이 4월 대비 1.1% 상승한 28.0위안/kg으로 가장 가격이 높았으며, 2위인 복건성은 26.0위안/kg으로 4월과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 대부분 지역의 5월 돼지고기 도매시장 가격은 4월에 이어 하락세를 나타냈으며 가장 큰 하락폭은 9.5%였고, 가격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섬서성으로 18.6위안을 기록했다.

□ 소고기(牛肉)

- 소고기 도매시장 2007년 5월 이후 10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8년 2월 신중국 건립 이래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였으며 3월부터 다소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 2월 중 소고기의 도매시장 가격은 29.1위안/kg으로 역사상 가장 높은 가격을 나타냈으며,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0.5% 상승하였다.

- 3월 가격은 2월에 비해 3.6% 하락한 28.1위안/kg을 나타냈으며, 4월 가격은 3월 대비 1.5% 하락한 27.7위안/kg으로 1월 하순 가격과 비슷한 수준을 회복하였음. 그러나 전년 동기에 비하면 64.0%나 높은 가격임.
- 5월 소고기 도매시장 각겨은 28.0위안/kg으로 4월 대비 1.2% 상승했고 전년 동기 대비 60.3% 상승했음.
  - 지역별로는 복건성의 소고기 도매시장 가격이 36.9위안/k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전월 대비 1.5% 상승한 것임.
  - 감숙성의 경우 전월 대비 6.8% 상승하여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기타 지역도 대부분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평균 상승폭은 1.0%였음.
  - 가격이 비교적 낮은 지역은 강소성과 사천성으로 각각 21.0위안/kg, 18.0위안/kg을 나타냈음.

## 1.2. 농산물 생산자가격: 2008년 1분기

- 중국 국가통계국 농촌사(農村司)에서 전국 31,000개 농가 및 농업경영체에 대한 농산물 생산자가격 조사 결과 2008년도 1분기 농산물 생산자가격은 전년 동기에 비해 25.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경종작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의 생산자가격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14.8%, 13.0%, 44.9%, 12.9% 상승했음.
- 동 기간 경종작물 가운데 식량작물의 생산자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11.4% 상승하였고 지난해 4분기에 비하여 0.4% 상승하였음.
  - 식량작물의 생산자가격 상승은 전체 농산물 생산자가격의 상승을 견인하였으며 2008년 1분기 농산물 생산자가격지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2.9% 포인트 상승하였음.
  - 이 중 밀, 벼, 자포니카쌀, 조생종 인디카쌀, 만생종 인디카쌀, 옥수수, 대두, 녹두의 생산자가격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8.7%, 3.5%, 0.3%, 6.6%, 9.9%, 8.9%, 40.1% 6.6% 상승하였음.
  - 식량 주소비지와 주산지의 식량 생산자가격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12.9%, 10.8% 상승하였음.

표 3 농산물 생산자가격 지수, 2007~2008년 1분기

구 분	2007년				2008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전체 생산자가격지수	107.3	110.2	120.7	122.2	125.5	
경종작물	경종작물 전체	103.8	106.0	108.6	113.6	114.8
	식량작물 전체	107.3	107.6	108.0	113.3	111.4
	곡물 전체	108.0	108.0	107.5	110.6	107.1
	밀	105.4	104.8	105.1	109.1	108.7
	벼	103.6	104.5	104.0	106.1	103.5
	옥수수	115.0	114.4	112.9	116.3	108.9
	두류 전체	104.2	108.3	110.2	129.2	136.5
	대두	103.2	108.4	110.5	131.1	140.1
	서류	104.4	99.4	109.5	113.8	113.0
	유지작물	113.0	128.5	123.7	133.9	133.4
	채소	98.3	100.2	110.2	113.4	123.4
	과일	97.0	95.2	103.4	108.4	109.7
	차	96.3	135.2	121.0	105.7	108.9
	면화	96.5	99.1	104.9	111.1	112.2
	식용 당류	100.4	98.8	94.3	101.7	96.5
	담배잎	96.3	101.9	103.0	108.5	114.2
임산물	임산물 전체	106.2	103.4	101.5	106.7	113.0
	목재	107.2	109.5	107.2	107.9	110.8
	죽재	115.2	112.8	108.7	117.8	113.4
	고무, 과실류	105.6	100.4	98.8	106.0	114.0
축산물	축산물 전체	113.8	117.8	142.6	140.4	144.9
	산돼지	118.0	125.7	164.8	156.2	162.1
	소	105.3	109.1	117.4	125.1	137.3
	양	106.4	110.3	119.1	129.7	136.9
	가금	112.7	114.9	118.2	120.6	117.9
	계란	111.8	116.5	116.1	118.2	115.9
	유제품	101.2	101.6	104.7	117.1	136.8
수산물	수산물 전체	101.5	106.1	108.7	105.6	112.9
	해산물 전체	101.7	108.4	111.3	101.2	108.5
	해수어	102.7	109.1	111.1	98.2	114.6
	바다조개류	96.1	106.7	112.7	106.6	102.5
	담수산물 전체	101.3	104.0	106.3	109.8	116.9
	담수어	100.8	103.9	106.2	109.9	116.1
	민물게·가재류	110.2	104.9	108.5	107.6	130.7

주: 전년 동기=100

자료: 國家統計局. 2008.5.12. “一季度全國農產品生產價格同比上漲25.5%”(http://www.stats.gov.cn)

- 면화의 생산자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12.2% 상승하였음.
  - 상승 원인은 첫째로 2007년도 1분기의 면화 생산자가격이 낮은 수준이었고, 둘째로 중국의 국내 면화생산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로 국제 면화 재고 감소로 인한 수입 면화가격의 상승이 중국내 면화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임.
- 유지작물의 생산자가격은 전년 동기에 비해 33.4% 상승하였으며, 이 중 유채씨, 땅콩, 참깨의 생산자가격은 각각 36.8%, 28.8%, 24.4% 상승하였음.
  - 당류작물의 생산자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3.5% 하락하였으며, 이 중 사탕수수는 4% 하락하였음.
  - 채소, 과일, 차의 생산자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23.4%, 9.7%, 8.9% 상승하였음.
- 임산물의 생산자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13.0% 상승하였으며, 이 중 과실류, 목재의 생산자가격은 각각 14.0%, 10.8% 상승하였음.
- 동 기간 축산물 전체의 생산자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44.9% 상승하였으며, 이 중 생돈의 생산자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62.1% 상승하였음.
  - 생돈 가격의 상승으로 농산물 생산자가격지수는 12.4% 포인트 상승하였음. 육우, 산양, 유제품, 가금육, 계란의 생산자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37.3%, 36.9%, 36.8%, 17.9%, 15.9% 상승하였음.

**[참고자료]**

農業部. 품목별 시장모니터링정보(市場監測信息)(<http://www.agri.gov.cn/xxfb/>)  
\_\_\_\_\_. 2008. 각월 “菜籃子產品批發市場價格動態分析”  
\_\_\_\_\_. 2008.4.21. “2008年一季度我國蔬菜市場形勢”  
\_\_\_\_\_. 2008.4.22. “2008年一季度我國水果市場形勢”  
\_\_\_\_\_. 2008.4.22. “2008年一季度牛羊肉市場形勢”  
國家統計局. 2008.5.12. “一季度全國農產品生產價格同比上漲25.5%”

## 2. 무역 동향

### □ 개요

- 2008년 1분기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 총액은 223.7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4.6% 증가했음. 이 기간 동안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하였지만 수입 증가폭이 수출 증가폭을 크게 넘어섰으며 적자는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 수출액은 93.5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9.6% 증가했고, 수입액은 130.1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61.0% 증가했음.
- 무역수지는 전년 같은 기간에 4.6억 달러의 순 수출을 기록했던 것과는 달리 36.6억 달러의 순 수입을 기록했음.

### □ 곡물

- 2008년 1분기 곡물 수출은 103.5만 톤으로 곡물수출 제한 조치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대비 무려 72.8%나 감소했고, 수입도 53.0만 톤으로 2.6% 감소했지만 전체적으로는 50.5만 톤의 순 수출을 기록했음. 이는 전년 동기대비 84.5% 감소한 것임.
- 쌀 제품(쌀, 쌀가루, 벼 및 종자용 벼 포함)의 수출은 60.1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38.1% 증가했고, 수입도 17.9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8.0%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48.8% 증가한 42.2만 톤을 순 수출했음. 전체 쌀 제품 가운데 쌀(大米)의 수출과 수입이 각각 99.5%, 94.9%를 차지했음.
- 옥수수 제품(옥수수, 옥수수가루, 기타 가공 옥수수와 종자용 옥수수 포함)의 수출은 8.2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무려 97.2%나 감소했지만 수입이 945.7톤에 불과하여 전년 동기대비 97.2% 감소한 8.1만 톤을 순 수출했음.
- 밀 제품(밀, 밀가루, 종자용 밀 포함)의 수출은 19.6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45.9% 감소했지만 수입도 2,721.6톤으로 95.9% 감소하여 전년 동기대비 34.7% 감소한 19.3만 톤을 순 수출했음.

- 보리 제품(보리, 보리가루, 가공보리와 종자용 보리 포함)의 수입은 33.9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9.8% 증가했음.

표 4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 실적, 2008년 1분기

단위: 만 톤

구 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량	전년대비 증감률(%)	수입량	전년대비 증감률(%)	순수출량	전년대비 증감률(%)
곡물 전체	103.5	-72.8	53.0	-2.6	50.5	-84.5
쌀 제품 <sup>1</sup>	60.1	38.1	17.9	18.0	42.2	48.8
옥수수 제품 <sup>2</sup>	8.2	-97.2	945.7톤	-	8.1	-97.2
밀 제품 <sup>3</sup>	19.6	-45.9	2,721.6톤	-95.9	19.3	-34.7
보리 제품	-	-	33.9	9.8	-	-
식용 유지종자	42.3	13.3	819.2	36.8	-776.9	-
대두 제품	19.0	44.4	778.1	36.1	-759.1	-
식용 식물유	4.9	-3.7	201.3	9.1	-196.4	-
콩기름	2.2	43.9	72.0	23.8	-69.8	-
유채기름	1,769.5톤	-89.1	3.4	-59.2	-3.2	-
종려기름	-	-	124.8	8.4	-	-
면화	3,005.0톤	-47.1	55.3	-0.5	-55.0	-
식용 당	1.6	-62.2	13.6	-19.6	-12.0	-
채소	197.7	5.4	2.2	2.0	195.5	-
과일	131.1	2.4	46.7	21.0	84.4	-
축산물(억 달러)	9.5	15.2	18.4	37.7	-8.8	74.4
돼지 제품 <sup>4</sup>	2.0	-1.1	2.4	2.9배	-0.4	-
가금 제품 <sup>5</sup>	2.2	6.3	1.4	2.4	0.2	-
수산물(억 달러)	20.8	-4.6	11.6	10.6	9.2	-18.6

- 주 1. 쌀, 쌀가루, 벼 및 벼종자 포함  
 2. 옥수수, 옥수수가루, 기타 가공옥수수와 종자용 옥수수 포함.  
 3. 밀, 밀가루, 종자용 밀 포함.  
 4. 산돼지, 종돈, 돼지고기, 가공 돼지고기, 돼지 내장 포함  
 5. 가금육 및 내장, 가공 가금육, 기타 산가금, 종자용 가금 포함.

자료: 農業部. 2008.5.8. “2008年前一季度我國農產品進出口情況”(http://www.agri.gov.cn/xxfb/t20080508\_1034922.htm)

□ 유지작물

○ 식용 유지종자(oilseed)의 수출은 42.3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3.3% 증가했고, 수입은 819.2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36.8% 증가했음.

- 이 중 대두 수출은 19.0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44.4% 증가했고, 수입은 778.1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36.1% 증가했음.

○ 식용 식물유 수출은 4.9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3.7% 감소했으나 수입은 201.3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9.1% 증가했음.

- 이 중 콩기름(大豆油) 수출은 2.2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43.9% 증가했고, 수입은 72.0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23.8% 증가했음.

- 유채기름(菜籽油) 수출은 1,769.5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89.1%나 감소했고, 수입도 3.4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59.2% 감소했음. 종려기름(棕榈油) 수입은 124.8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8.4% 증가했음.

#### □ 채소와 과일

○ 채소 수출은 197.7만 톤(15.5억 달러)으로 전년 동기대비 5.4%(3.8%) 증가했음. 수입량은 2.2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2.0% 증가했지만 수입액은 0.2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2.8% 증가했음.

○ 과일 수출은 131.1만 톤(11.0억 달러)으로 전년 동기대비 2.4%(21.5%) 증가했고, 수입도 46.7만 톤(3.1억 달러)으로 전년 동기대비 21.0%(20.1%) 증가했음.

#### □ 축산물

○ 축산물 수출은 9.5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5.2% 증가했고, 수입은 18.4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7.7% 증가했음. 축산물의 무역수지 적자는 8.8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74.4% 증가했음.

- 이 중 돼지 제품(산 돼지, 종돈, 돼지고기, 가공 돼지고기, 돼지 내장 포함)의 수출은 2.0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1% 감소한 반면 수입은 2.4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9배 증가했음.

- 가금(家禽) 제품(가금육 및 내장, 가공 가금육, 기타 산 가금, 종자용 가금 포함)의 수출은 2.2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6.3% 증가했고, 수입은 2.4억 달러로 전

년 동기대비 32.7% 증가했음.

□ 수산물과 면화

- 수산물 수출은 20.8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6% 감소했고, 수입은 11.6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0.6% 증가했음. 수산물의 무역수지 흑자는 9.2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8.6% 감소했음.
- 면화 수출은 3,005.0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47.1% 감소했고, 수입도 55.3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0.5% 감소했음. 식용당(食糖) 수출은 1.6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62.2% 감소했고, 수입도 13.6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9.6% 감소했음.

□ 기타

- 농산물 무역규모 1위와 2위는 산동성과 광둥성으로 각각 26.0억 달러와 34.0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농산물 수출 실적 1위는 산동성으로 전년 동기대비 6.4% 증가한 23.0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2위인 광둥성은 수출액이 9.6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4% 증가했음. 3위인 절강성의 수출액은 7.7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3.9% 증가했음.
  - 농산물 수입 실적 1위는 절강성으로 전년 동기대비 61.8% 증가한 24.5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2위인 광둥성은 수입액이 24.4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67.5% 증가했음. 3위는 산동성으로 수입액이 23.0억 달러이고 이는 전년 동기대비 55.3% 증가한 것임.
- 중국 농산물의 최대 수출시장은 아시아, 유럽, 북미이며, 최대 수입시장은 북미임.
  - 아시아는 중국 농산물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제2대 수입시장으로 대 아시아 수출은 53.4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8%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33.6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1.3% 증가했음. 중국의 대 아시아 수출은 전체의 57.1%로 전년 동기대비 3.8% 포인트 감소했고, 수입은 전체의 25.8%로 전년 동기대비 3.6% 포인트 감소했음.

- 유럽은 중국 농산물의 제2대 수출시장이자 제4대 수입시장으로 대 유럽 수출은 19.5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3.0%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12.4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6.8% 증가했음. 중국의 대 유럽 수출은 전체의 20.9%로 전년 동기대비 2.3% 포인트 증가했고 수입은 전체의 13.4%로 전년 동기대비 0.3% 포인트 감소했음.
- 북미는 중국 농산물의 제3대 수출시장이자 최대 수입시장으로 대 북미 수출은 12.5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6.8% 증가했으며, 수입도 48.8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75.4% 증가했음. 중국의 대 북미 수출은 전체의 13.4%로 전년 동기대비 0.3% 포인트 감소했고 수입은 37.5%로 전년 동기대비 3.1% 포인트 증가했음.

**[참고자료]**

農業部. 2008.5.8. “2008年前一季度我國農產品進出口情況”.

### 3. 향진기업 동향

#### 3.1. 기본 현황 및 특징

○ 주요 경제지표 증가폭 전년 동기대비 소폭 하락

- 2008년도 1분기 전국 향진기업의 부가가치 총액은 1조 6,256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0.3% 증가하였지만 증가폭은 전년 동기대비 2.4% 포인트 하락하였음. 이 중 공업부문 부가가치는 1조 1,472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0.3% 증가하였고 증가폭은 전년 동기대비 2.4% 포인트 하락하였음.
- 2008년도 1분기 향진기업의 총 매출액은 6조 8,837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0.2%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전년 동기대비 2.5% 포인트 하락했음.
- 동 기간 향진기업의 수출 총액은 6,43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4.2% 증가했으나 증가폭은 전년 동기대비 2.2% 포인트 하락했음.
- 동 기간 이윤 총액은 3,437억 위안으로 10.8%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전년 동기대비 2.0% 포인트 하락했으며, 납세 총액은 1,428억 위안으로 11.4%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1.7% 포인트 하락했음.
- 동 기간 근로임금 지불 총액은 3,522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8.4% 증가하였고 증가폭은 전년 동기와 비슷하였음.

○ 향진기업의 규모화 진전

- 2007년 말 연간 매출액이 500만 위안 이상인 공업부문 대규모 향진기업의 수는 23.1만 개로 전년에 비해 1.9만 개 증가하였음.
- 2008년 1분기 공업부문 대규모 향진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8,464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5.2% 증가했음. 공업부문에서 대규모 향진기업의 부가가치 총액이 중국 전체 공업부문 향진기업 부가가치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의 71.2%에서 74.2%로 3% 포인트 증가하였음.

○ 향진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농산물 가공업이 빠른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07년 말 연간 매출액이 500만 위안 이상인 대규모 향진기업 중 농산물 가공기업은 8.3만 개로 전년에 비해 7,000개 증가했음.
- 2008년도 1분기 연간 매출액이 500만 위안 이상인 대규모 농산물 가공기업의 부가가치는 2,52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5.4% 증가했으며, 이는 공업부문 대규모 향진기업 부가가치 증가폭보다 0.2% 포인트 높은 수치임.
- 농산물 가공기업의 부가가치가 공업부문 대규모 향진기업의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8%(전년 동기대비 0.3% 포인트 상승)로 농산물 가공기업은 향진기업의 주요한 산업이자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음.

○ 수출 증대는 향진기업의 중요한 성장요인

- 2008년도 1분기 향진기업은 인민폐가치 절상 압력, 여러 가지 무역장벽 등 많은 장애요인이 있었지만 수출 총액이 6,43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4.2% 증가하였음.

○ 농촌주민 소득증대에 기여

- 2008년도 1분기에 향진기업이 지불한 근로임금 총액은 3,522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8.4% 증가하였음. 새로운 노동계약법 실시(2008년 1월 1일)로 농촌노동력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고 임금도 평균 8% 이상 인상되었음.

### 3.2. 향진기업의 당면 문제

- 2008년 1월 중순부터 1개월간 지속된 폭설로 향진기업은 적어도 300만 위안의 직접피해를 입었으며, 1,000만 위안의 부가가치를 손실하였음. 폭설피해는 2008년도 1분기 향진기업 발전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었음.

○ 에너지, 토지 등 생산요소의 수급난

- 석탄, 전기, 기름, 운송 등 요소가격 상승과 수급난은 기업의 생산비 상승을 초래하여 이윤을 감소시켰음.
- 먼저 공업용지 임대료, 융자비용, 원자재 비용, 전기사용료, 인건비 등 생산요소

비용이 모두 증가하였음.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어 위생, 에너지 절약, 생산 안전을 위한 투입이 증가하였음.

-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인 것이지만 향진기업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

○ 향진기업의 구조적 문제점

- 향진기업의 규모는 아직 전반적으로 작은 편이고 단계별 전문화 정도도 낮으며 하이테크와 고부가가치 제품이 적음. 또한 혁신능력이 약하고 경영관리의 낙후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존재함.

- 향진기업의 수출상품은 주로 섬유 제품과 경공업 제품으로 부가가치가 낮고 기술 의존도가 낮아 반덤핑, 무역 장벽 등 여러 가지 무역마찰을 초래하고 있음.

○ 현재 일부 지역의 상당수 향진기업은 현지의 광산자원에 의존하여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장방식은 갈수록 자원 환경의 제약을 받게 될 것임.

### 3.3. 향진기업의 발전 방향

○ 기술혁신과 기술인재 양성을 통해 향진기업의 체질 강화

- 농산물연구개발센터에 대한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농산물 가공업 수준 제고

- 향진기업의 자주적인 혁신을 독려하여 기업 자체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게 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이 있는 명품브랜드 생산

- 향진기업과 과학기술의 연계를 강화하여 전통산업의 기술수준을 높이고 하이테크산업의 발전 유도

- 기술인재 양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직원의 소질 향상

○ 산업클러스터와 순환경제 발전을 통해 향진기업의 구조조정과 에너지절약, 배출 감소 촉진

- 특색 있는 주도산업을 육성하고 '1향 1품', '1촌 1품'의 발전을 독려하며, 성장형 산업클러스터, 농업취업기지 및 성장형 향진기업 육성

-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향진기업의 협력을 강화하여 동서 소통과 상호작용의 효과 증대
-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향진기업과 농산물 가공업의 서비스 수준 강화
  - 향진기업의 정보 수집 및 분산 제도를 정비하고 중국향진기업정보망, 중국농산물 가공정보망, 국제농산물가공정보 플랫폼과 각 지역의 향진기업정보망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향진기업에 양질의 정보 서비스 제공

**[참고자료]**

農業部. 2008.4.22. “2008年第一季度年全國鄉鎮企業經濟運行情況”

## 4. 섬서성(陝西省)의 과수산업 현황

### 4.1. 섬서성 개황

- 섬서성(陝西省)은 중국 남북으로 좁으면서 길게 위치해 있고, 기후대는 온대, 난온대, 북아열대이며, 황하와 장강 유역에 있음.
  - 다양한 자연환경은 섬서성이 여러 종류의 우수한 북방과일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며, 특히 섬서성 위북(渭北)<sup>14</sup> 황토고원은 세계에서 공인한 사과 최우수생산지역임.
  - 세계의 다른 사과 우수생산지역의 자연생태조건 이외에 해발이 높고 밤낮의 일교차가 크며, 토층이 깊고 토질이 좋으며 칼륨, 마그네슘, 아연 등 여러 종류의 인체에 유익한 미량원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사과생산의 기상지표에 부합함.
- 공업지대가 없어 오염이 거의 없고 환경이 우수하여 중국 농업부가 지정한 중국사과 우수산지이자 세계가 공인한 사과의 최고 생산지임.
  - 섬서성에서 생산한 사과는 색택이 좋고 각질층이 두꺼우며 맛이 좋고 저장과 운송에 강하며 무공해 식품으로 국내외 소비자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음.
  - 섬서성은 또한 대단위 배, 대추, 키위, 감귤, 포도 등 북방 특색의 과일 우량생산지이며, 생산된 과일의 품질이 우수하고 맛이 독특하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음. 이 중 섬서성의 대표적 과일인 사과의 특성과 사과산업의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가. 섬서성 사과의 4대 특징

- 첫째, 섬서성 사과의 빛깔 특징을 보면 착색이 빠르고 용이하며 색깔이 짙고 착색면적이 큼.

---

14 위하(渭河)이북, 위하는 중국 서안시를 가로지르는 황하(黃河)의 큰 지류

- 자연재배 조건에서 섬서성 홍부사(紅富士)의 착색지수는 80%이상이고 알랍(嘎拉)은 70%이상임. 판매시장에서 소비자는 빛깔만을 보고도 섬서성의 사과인지를 판단해낼 수 있음.

○ 둘째, 각질층이 두꺼움.

- 각질층은 사과의 보건성과 보관·운수에 중요한 역할을 함. 섬서성 사과의 각질층이 두꺼운 것은 껍질이 두껍고 표면에 광택이 있으며 펙틴함량이 높는데 있음. 측정 결과 섬서성 홍부사의 각질층 두께는 20.5 $\mu$ m로서 기타 주산지의 사과보다 두꺼움.

○ 셋째, 입맛이 좋음.

- 입맛은 사과품질과 식용성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중의 하나임. 섬서성 사과의 입맛이 독특한 점은 당분이 높고 육질이 단단하며 향기가 짙고 영양이 풍부한데 있음.
- 섬서성 사과 대표생산지 낙천현(洛川縣)의 홍부사를 측정한 결과 가용성 고형물 함량이 16.5%, Vc함량이 4.2mg/kg, 산(酸)함량이 0.21%에 달하여 국가의 신선사과 GB1051-89표준을 초과하였음.

○ 넷째, 저장과 운송에 편리함.

- 저장성능은 계절별로 생산하여 장기간 판매하고 화물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며 국제시장을 개척하고 부가가치를 제고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 섬서성의 사과는 과피가 두껍고 표면에 각질이 많으며 육질이 단단하고 가용성 고형물함량이 높아 저장기능이 좋음.
- 섬서성 홍부사를 수확할 때 경도는 9.7kg/cm<sup>2</sup>, 5개월 저장 후 7.3kg/cm<sup>2</sup>로서 기타 지역의 사과보다 더 높음.

## 나. 섬서성 사과산업의 비교우위

○ 첫째, 전반적으로 규모가 우세함.

- 중국 정부는 새로운 과일생산지역인 섬서성을 중국 사과우세산업지역으로 지정하고 사과 생산량을 지속 확대함으로써 섬서성의 전반적인 사과재배 규모가 중국, 더 나아가 세계 사과규모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 둘째, 생태자원이 우세함.

- 위북(渭北)지역은 황토고원의 핵심지역으로서 해발(800~1,200m)이 높고 일교차(11.8~16.6℃)가 크며 토양두께(80~200m)가 두껍고 토양의 품질이 좋으며 토양에 칼슘, 마그네슘, 연, 셀레늄 등 여러 가지 건강에 이로운 미량원소가 함유되어 있음.
- 또한 공업지역과의 거리가 멀어 생태환경이 좋고 오염이 적음. 중국의 전국사과지역계획위원회는 섬서성이 아래와 같이 중국에서 7개의 사과생태지표에 제일 부합된 지역이라고 평가했음.

○ 셋째, 가격경쟁에서 우세함.

- 섬서성 사과생산 원가는 국외 사과 주산국에 비하여 아주 낮아 세계의 70% 수준임.
- 최근 섬서성 사과수출 가격은 뉴질랜드, 미국, 프랑스의 85.5%, 68.7%와 64.2%로서 세계 평균가격보다 39.1%나 낮음. 또한 가공원료 가격이 낮으므로 농축사과 주스를 위주로 하는 가공품도 뚜렷하게 수출가격 우위를 갖고 있음.

○ 넷째, 품질이 우세함.

- 섬서성의 사과는 빛깔이 좋고 각질층이 두꺼우며 입맛이 좋고 보관하기 좋으며 무공해식품임. 2003년 9월 국가질검총국은 ‘섬서성 사과’에 대해 원산지 제품보호를 실시하였음.

○ 다섯째, 과학기술혁신부문에서 우세함.

- 중국에서 유일한 국가급 농업 첨단과학기술산업 시범구역이 섬서성 양릉농업과학성(楊凌農業科學城)에 자리잡고 있음. 과수분야의 과학연구 및 교육학습능력이 뛰어나고 과수학과가 다양하여 산업발전을 위해 강력한 과학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하였음.
- 섬서성 과수양종묘목번식중심, 섬서성 사과연구발전중심, 섬서성 과품품질검사중심 등 기 건설되어 운용중이거나 건설 중에 있는 국제농업 기초건설프로젝트는 섬서성의 사과가 현지의 산업발전의 최고지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여 주었음.

## 4.2. 섬서성은 중국 및 세계의 최대 과일 생산·가공기지

- 중국의 개혁개방이래 섬서성은 지역의 비교우위를 발휘하여 우수한 자연자원을 기초로 중국의 과일 생산기지가 되었음. 과수업은 이미 섬서성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산업이 되었음.
  - 2004년 섬서성의 과일재배 면적은 788천 ha, 생산량은 735만 톤으로 전국에서 제 4위이며 전국 생산량의 12%를 차지하였음.
  - 이 중 위북(渭北) 황토고원 사과면적은 412천 ha로 중국에서 1위를 차지하며 생산량은 555만 톤으로 중국과 세계 사과 총생산량의 27%와 9.4% 정도를 차지함.
- 또한 세계 키위의 원산지로서 섬서성의 키위 재배면적은 16천 ha, 생산량은 23만 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62%를 차지하여 중국 전체에서 1위임. 배 재배면적은 60천 ha로 생산량은 67만 톤에 달해 전국 생산량의 7%를 차지하여 중국 전체에서 3위임.
- 대추 재배면적은 111천 ha로 생산량은 13만 톤(건조한 것)이며 전국 생산량의 4.4%를 차지하여 중국 전체에서 5위임. 감의 생산량은 중국 전체 생산량의 8%를 차지하여 4위를 차지하고 있음. 포도, 감, 감귤, 복숭아, 석류 등 인지도 있는 우량품종 역시 섬서성에서 상품화 생산되고 있음.
- 과일생산의 발전에 따라 사과 농축과즙 위주의 가공업도 급속하게 발전하여 사과 농축과즙은 연간 생산능력은 63만 톤에 이르러 중국 최대의 사과농축액 산지이며 생산량의 90%이상이 수출되고 있음.
  - 품질은 Nestles, Heinz, Tropicana, Maas Coca Cola 등 국제 유명기업의 인정을 받아 이들 기업에 판매하고 있음.

## 4.3. 섬서성은 과일생산의 품종 및 기술 우위 구비

- 섬서성은 중국의 교육과 과학기술 자원의 대성(大省)임.
  - 섬서성은 선진국의 농업 최첨단 신기술 시범구에서 국제 선진의 과일육종 및 생

산제도를 도입하여 지역특징에 적합한 품종의 육종체계를 수립하고 관건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우량품종과 기술을 제고시켰음.

- 섬서성은 우량묘목 육종체계를 정립하여 품종의 우량화를 가속화시켜 품종 다원화를 실현하였으며 계열화와 국제화의 기초를 마련하였음.
- 섬서성의 사과는 홍부사(紅富士), 분홍여사(粉紅女士), 알랍(嘎拉), 옥화조복(玉華早富), 신흥성(新紅星) 등 우량품종이 90%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조중만생종의 구조가 잘 배치되어 그 비례가 5:13:82로 구성되어 6월부터 11월 중순까지 매월 제철품종이 시장에 출하되고 있음.
- 섬서성은 사과의 단위당 생산량이 비교적 높은 수준에 있는데 평균 생산량은 1,250kg/畝(무=200평)로 전국 평균생산량(600kg)의 2배를 초과하였음. 우량 사과비율도 55%에 달하여 전국의 평균수준(20%)의 2배가 넘음. 배(50%), 키위(70%), 대추(90%) 등 기타 주요과일도 전국의 평균수준을 초과하고 있음.

○ Hayward 키위와 Red Globe 포도 등도 또한 섬서성 과일의 주요 재배품종이 되었음.

- 복숭아, 배, 큰대추, 석류 등 지명도 있고 우수하며 특색 있는 과일 또한 많이 세계로 수출되고 있음. 생산기술과 관리상 섬서성은 “개량형, 고기술, 적절한 시비, 무공해” 4가지의 사과생산 기술을 보급하여 과일의 품질과 상품률을 제고시키고 있음.
- 또한 조기재배 기술을 확산시켜 섬서성 사과산지의 강우분포 불균형을 해결하고 건조한 기후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였으며, 주요 생산품종의 수확기술을 개선하고 냉장과 공기조절 기술로 과일의 고품질을 유지하여 국제시장의 요구에 부응하였음.

#### 4.4. 섬서성은 국제경쟁력 있는 선도기업 보유

- 과일산업 발전 중 산시 Haisheng, Huasheng, Hengxing, Fuan, Yanan 과일그룹과 Baishui Hongda 등 과일저장, 포장, 가공, 운송, 판매기업은 끊임없이 성장 발전하여 국가 또는 섬서성의 농업산업화의 중점 선도기업이 되었음.
- 이러한 기업은 국제선진 생산기술과 관리방식을 도입하여 연간 농축과즙 50만 톤

의 생산능력을 갖추었음.

- 대외적으로는 국제시장과 연계하고, 대내적으로는 산지농가와 연계하여 농산물 가공 무역을 추진하며, 생산, 가공, 판매를 일체화하여 집약화 경영을 통해 섬서성 과즙의 90% 이상이 아세안, EU, 북미, 남미, 남아프리카, 오스트리아 등 53개 국가와 지역에 수출하고 있음.

○ 2004년 섬서성내 기업의 서안세관을 통하여 EU, 북미, 동남아시아, 중동 등 세계 30여개 국가와 지역에 수출한 과일상품 총량은 19.6만 톤으로 1.3억 달러를 수출하여 9년 연속 두자리 숫자의 성장을 기록하였음.

- 2005년 섬서성의 과일 수출량은 더욱 증가하여 8월까지 20.3만 톤을 수출하여 1.4억 달러를 벌어들여 전년대비 각각 58.4%와 65.2% 증가하였음.

#### 4.5. 섬서성의 품질안전통제시스템

○ 최근 섬서성은 국제 과일생산과 시장의 반응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음.

- 생산 전, 생산 중, 생산 후의 과정을 일련의 원칙에 따라 국제표준에 부합하고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가의 사과표준에 따라 섬서성 사과의 생산, 가공, 포장, 저장, 운송과 품질검사 및 검역, 위생안전 등 일련의 표준체계를 정립해 왔음.
- 농약위주의 투입품 감독을 강화하고 고독성 농약 및 고잔류성 농약사용을 엄금하였음.
- 과일산업은 적극적으로 “과일, 축산, 바이오가스, 과수원의 풀” 등을 이용한 생태과수원 13만 ha를 만들어 녹색식품과 유기식품 과일을 발전시켰고 녹색식품 과일면적은 17.8만 ha를 육성하였음.
- 이 중 사과면적은 16만 ha에 이르러 중국에서 1위를 차지함. 또한 섬서성 사과의 원산지 보호를 위한 지정면적은 27만 ha에 이룸.

○ 과일기업은 과일제품 생산과 가공과정 중 생산지 인증을 실시하여 위해분석과 통제체제를 마련하여 국제품질관리체제 인증을 실시하고 과일의 품질에 대한 전 과정을 감독하고 생산물의 품질을 보증함.

- 현재 섬서성에서 EU, 캐나다, 태국 등 국가가 인정한 지역은 이미 2만 ha나 되며, 기업은 국제 품질표준과 안전인증에 대부분 통과하였음.
- 최근 국가품질감독과 수출상품의 품질에 대한 조사 분석에서 섬서성 과일제품은 세계 여러 국가의 다양한 품질표준 요구에 완전히 부합하였음.

#### 4.6. 섬서성 사과산업의 발전 잠재력

- 현재 중국의 국내외 업체들이 섬서성 과일저장 및 가공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음.
  - 최근 몇 년간 섬서성 과일생산이 늘어나고 사과의 인지도가 높아졌으며 과수원 투자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세계 500대 기업 중의 하나인 일본 이등충상(伊藤忠商)주식회사, 미국 풍리(鳳梨)주식유한공사 및 중국 통달(通達), 중로(中魯), 안덕리(安德利)와 홍콩의 동부그룹(東部集團) 등 국내외적으로 경영능력을 인정받는 우량기업들이 섬서성 과업분야에 진입하였음.
  - 이들 기업은 저장 및 가공업에 16.2억 위안의 자금을 투자하여 주스가공업을 위주로 하는 섬서성의 과일제품 저장 및 가공업을 신속하게 발전시켰음.
  - 지금까지 이미 각종 과일제품 저장고 9.6만 개를 건설하여 저장량이 300만 톤에 달하였음. 그 중 냉장창고 용량이 45만 톤, 공기조절창고 용량이 15만 톤에 달하였음.
- 각종 과일제품 가공기업 110개 중 농축주스가공기업이 18개로서 섬서성이 연간 사과농축주스 생산능력이 60만 톤에 달하여 중국의 최대 사과농축주스의 집중생산 지역으로 육성되었으며 90%이상이 수출되었음.
  - 2003~2004년까지의 농축주스 생산량은 27.6만 톤으로 세계 사과농축주스 무역량의 1/3를 차지하여 유럽지역의 주요 수출국으로 되었으며 품질은 여러 국제유명기업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음.
- 섬서성은 과일산업의 자연조건 우위, 환경, 기후, 지리적 이점, 저렴한 인건비 등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
  - 섬서성은 앞으로 국제 및 국내시장에서 끊임없이 과일산업의 발전을 제고시켜 친

환경화, 산업화, 시장화, 국제화를 실현할 것으로 전망됨.

- 섬서성의 예측에 의하면 2008년 섬서성의 과일 재배면적은 860천 ha, 총 생산량은 1,000만 톤에 이를 것임. 이 중 사과면적은 530천 ha, 총생산량은 700만 톤에 이를 것이며 신선사과 수출은 90만 톤(변경무역 70만 톤 포함), 과즙수출은 30만 톤 이상으로 수출액은 3억 달러에 이르러 세계에서 유명한 우량과일 생산과 가공 기지로 발전할 것임.

작성자: 박은철(농림수산식품부)  
parkec@mifaff.go.kr

## 5. 사천성(四川省) 지진피해 현황 및 영향

### 5.1. 개요

- 2008년 5월 12일, 중국 사천성에서 리히터 규모 8.0의 초강력 지진이 발생하여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왔음.
  - 이는 중국의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주었으며, 국제 사회는 이번 지진이 개혁 개방 이후 고속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발전 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 물론 재해지역 산업구조와 그 피해 규모에 따라 해당 지역 경제와 중국 전체 경제 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것임.
  - 또한 산업별도 받게 될 영향도 각각 다른 양상을 나타내게 될 것임. 특히, 농업은 사천성의 주력 산업 중의 하나로써, 이번 지진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음.
- 지난 5월 17일 중국 농업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약 3.3만 ha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고, 비닐하우스 5만 동이 무너졌으며, 농업 기반시설이 대량 파괴되었 음. 특히 수리관개시설의 파손으로 인해 관개용수 부족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7~10ha의 논에 벼 대신 밭작물을 심어야 할 것으로 내다보았음.
  - 약 1,250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하였고, 축사 등 부대시설 730만 평방미터가 피해 를 입었음. 또한, 농기계 2만여 대가 파손되었으며, 많은 인명 피해에 따른 노동 력 감소로 농업 생산력의 손실을 가져왔음.
- 기초산업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농업부문의 피해는 해당 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이 기타 산업과 중국 경제 전체로 파급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지진으로 인한 농업부문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이러한 피 해가 앞으로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봄. 여기에서는 사천성 농업이 중국 농업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재해지역의 농업부 문 피해 분석을 중심으로 사천성 지진이 중국 식품 수급 및 가격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음.

## 5.2. 사천성 농업 현황

### 가. 기본 개황

- 사천성은 전체 산업에서 농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대표적인 성 중의 하나임. 농업성으로서의 특징은 다음의 몇 가지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첫째, 사천성은 중국에서 헤이룽장성 다음으로 큰 경지면적을 보유하고 있음. 경지면적은 916.9만 ha이며, 중국 총경지면적의 7.1%를 차지함.
  - 둘째, 사천성 전체 인구 가운데 농촌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음. 2006년 말 현재, 사천성 전체 인구는 8,169만 명이며, 그 중 농촌인구는 5,367만 명으로 성 전체 인구의 65.7%를 차지함. 이는 전국 평균 농촌인구 비중인 56.1%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임.
  - 셋째, 사천성 전체 국내총생산액에서 농림축산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2006년 말 현재, 사천성 국내총생산액은 8,637.8억 위안이며, 그 중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 등 1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8.5%에 달함. 이는 전국 평균 수준인 12.2%보다 높은 수치임.
- 지리적 측면에서 살펴볼 때, 사천성은 중국의 서남부에 위치하며 섬서, 녕하, 칭해, 저장, 운남, 귀주 등 주변 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농업생산조건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 서부지역 농산물 공급지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나. 농림축산어업 구조

- 사천성 농림축산어업 총생산액이 중국 전체 1차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1%임.
  -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농업, 임업, 축산업과 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0%, 4.9%, 9.7%와 2.0%임. 이 중에서도 특히 축산업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실지로 중국 축산업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사천성 자체 내의 1차 산업의 구조를 살펴보면, 농업, 임업, 축산업과 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2.1%, 3.0%, 51.5%와 3.4%로써, 축산업이 마찬가지로 절반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전국의 통계수치와 비교할 경우, 축산업의 비중이 약 18%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농업의 비중은 낮게 나타났음. 이처럼 사천성의 축산업이 발전한 이유로는 상대적으로 높은 고도로 인한 목축에 적당한 기후와 넓게 분포한 초원지대, 그리고 비교적 풍부한 곡물 공급량 등을 꼽을 수 있음.

표 5 농림축산어업 총생산액 구조, 2006년

단위: 억 위안, %

구 분	농림축산어업	농 업	임 업	축산업	어 업
전 국	42,424.4	21,549.1	1,602.0	13,640.2	4,433.0
	100	52.3	3.9	33.1	10.8
사 천	2,602.1	1,075.1	76.7	1,317.4	87.2
	100	42.1	3.0	51.5	3.4

자료: 중국통계연감, 2007

### 다. 농산물 생산 현황

- 사천성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은 식량작물, 축산물, 과일, 유지작물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생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

#### □ 식량작물

- 2006년 사천성의 식량 생산량은 2,893.4만 톤으로 중국 전체 생산량의 5.8%를 차지하였음. 물론 중국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인 흑룡강, 산둥, 하남성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나머지 성들에 비해 높은 편이며, 특히 서부지역에 위치한 성들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식량작물 가운데 사천성에서 생산되는 서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전국 생산량의 약 13.5%를 차지하였음. 이는 사천성 지역의 고도가 비교적 높아 서류 생산에 적합한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 곡물 가운데서는 쌀의 생산량이 비교적 많으며, 전국 쌀 생산량의 7.3%를 차지하

였음. 이는 쌀 주산지인 동북 3성과 장강 유역 다음으로 많은 생산량임.

표 6 식량작물 생산 현황, 2006년

단위: 만 톤, %

품 목	전국(A)	사천(B)	비율(B/A)
식 량	49,749.9	2,893.4	5.8
곡 물	44,237.3	2,334.5	5.3
-쌀	18,257.2	1,335.9	7.3
-보리	10,446.7	439.0	4.2
-옥수수	14,548.2	511.2	3.5
대 두	2,104.5	98.3	4.7
서 류	3,406.1	460.6	13.5

자료: 상동

□ 축산물

- 사천성은 중국의 3대 육류 생산지인 동시에 최대 돼지고기 생산지임. 사천성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중국 전체 생산량의 10%를 초과함.
  - 축산업은 사천성 지역의 대표적인 비교우위 산업으로써, 유리한 자연조건과 풍부한 곡물 공급량 등의 조건을 바탕으로 발전하였음.
  - 2006년 사천성의 육류 총생산량은 690.8만 톤으로, 전국 총생산량의 8.6%를 차지했음. 이는 산둥, 허난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생산량임. 만약 충칭지역의 생산량까지 합치면 전국 제1의 육류 공급지인 셈임.
  - 육류 중에서도 돼지고기의 비중이 가장 크며, 전체 육류 생산량의 약 78%를 차지함. 또한, 사천성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의 양은 전국 생산량의 10.4%를 차지하여 중국 최대의 산지임.
  
- 2007년에는 전국의 돼지 생산 감소로 돼지고기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사천성의 돼지 사육두수는 9,911만 두로 전년보다 5.2% 증가하였음. 또한 성 밖으로 반출한 돼지고기가 117만 톤으로 전년대비 22% 증가하였으며, 전국 돼지고기 외부 수출 총량의 약 1/3을 차지했음.

표 7 축산물 생산 현황, 2006년

단위: 만 톤, %

품 목	전국(A)	사천(B)	비율(B/A)
육 류	8,051.4	690.8	8.6
돼지고기	5,197.2	541.3	10.4
쇠고기	750.0	29.6	3.9
양고기	469.7	21.0	4.5

자료: 상동

□ 과일

- 사천성에서 생산되는 과일의 총생산량은 중국 전체 생산량의 3.1%를 차지하며, 주요 과일 품목으로는 사과, 귤, 배, 포도를 들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귤과 배의 생산량이 많음.
- 귤의 경우, 2006년 205.8만 톤을 생산하였으며, 전국 생산량의 11.5%에 달하였음. 배의 경우, 74.6만 톤을 생산하였으며, 그 비중은 전국 생산량의 6.2%를 차지하였음.

표 8 과일 생산 현황, 2006년

단위: 만 톤, %

품 목	전국(A)	사천(B)	비율(B/A)
과 일	17,239.9	535.3	3.1
-사과	2,605.9	24.8	1.0
-귤	1,789.8	205.8	11.5
-배	1,198.6	74.6	6.2
-포도	627.1	17.1	2.7

자료: 상동

□ 유지작물

- 대두 이외의 유지작물을 살펴보면, 사천성에서 생산되는 땅콩, 유채, 깨 등 유지작

물의 양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사천성에서 생산되는 유지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 전체 생산량의 7.1%임. 이 중 유채의 생산량 비중은 13.4%를 차지함.

표 9 유지작물 생산 현황, 2006년

단위: 만 톤, %

품 목	전국(A)	사천(B)	비율(B/A)
유지작물	3,059.4	217.3	7.1
-땅콩	1,466.6	47.1	3.2
-유채	1,264.9	169.0	13.4
-깨	66.5	0.5	0.8

자료: 상동

□ 기타

○ 이상 주요 농작물 외에 사탕수수, 차, 연초도 사천성의 주요 농산물로서 전국 생산량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사천성에서 생산되는 사탕수수, 차, 연초의 비중은 각각 11.8%, 11.0%, 7.3%임.

표 10 기타 농산물 생산 현황, 2006년

단위: 만 톤, %

품 목	전국(A)	사천(B)	비율(B/A)
사탕수수	1,053.6	124.6	11.8
차	102.8	11.3	11.0
연초	274.4	20.0	7.3

자료: 상동

라. 주요 재해지역 농업 현황

○ 사천성 지진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는 문천(汶川), 북천(北川), 면양(綿陽), 신방(什防), 도강언(都江堰), 팡주(彭州), 청천(靑川), 강유(江油) 등을 들 수 있음.

- 이 8곳의 사망자수를 모두 합치면 전체 사망사수의 약 85%를 차지하며, 이 지역에 지진의 피해가 집중되었음.
- 8개 주요 재해지역의 총인구는 371만 명이며, 이 중 농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78.2%로, 사천성 평균 수준인 65.7%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음. 이를 통해 대부분의 재해지역이 전형적인 농촌지역임을 알 수 있음.
- 이들 지역의 주요 농산물 생산량이 사천성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식량, 유지작물과 육류가 각각 4.7%, 4.7%와 6.3%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육류 생산량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면양시(綿陽市)

- 면양시는 지진 피해가 가장 큰 시이며,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입은 북천과 강유를 포함하고 있음.
- 면양시는 자연조건이 좋고, 생산되는 농산물의 종류도 다양하며, 농업 생산에 있어 사천성 전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이에 따라, 이번 지진으로 인해 농업 부문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
- 면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농경지는 28.1만 ha이며, 그 중 57%가 관개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사천성의 식량, 유지작물, 누에, 돼지의 중요한 생산기지 중의 하나임.
- 시 전체가 생산하는 상품 식량, 식물성 식용유와 육류는 각각 65만 톤, 15만 톤과 31만 톤임. 누에 생산량은 성 전체에서 2위를 차지하고, 돼지 사육두수는 3위를 차지함.

□ 문천(汶川)

- 문천은 아궤(阿壩)자치주에 위치하며, 이번 지진으로 인해 가장 큰 재산과 인명 피해를 입은 곳 중의 하나로, 전체 산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음.
- 농경지 면적은 3,581.6ha이고, 농업인구는 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4.5%를 차지함. 2006년 전체 산업 총생산액에서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임.
- 주요 농산물 생산량을 살펴보면, 식량 총생산량은 1.4만 톤, 유채와 과일은 각각

439톤과 1,157톤이며, 돼지 사육두수는 약 4.2만 마리임.

□ 도강언(都江堰)

- 도강언은 성도(成都)시 북서쪽에 위치하며, 총인구수는 62만 명으로, 그 중 농촌 인구는 약 70%를 차지함. 1차 산업 생산액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13%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도강언은 약 2만 ha의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2,300ha의 우량 식량작물 시범재배 단지과 1,300ha의 키위, 차, 죽순 등 우수 농산물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음.
- 주요 농산물 생산량을 살펴보면, 2006년 식량 총생산량은 17.1만 톤, 유지류는 1.3만 톤, 육류는 7.4만 톤, 과일과 차는 각각 2.0만 톤과 0.1만 톤임.

### 5.3. 주요 농산물 피해 추정

#### 가. 여름철 수확 작물

- 이번 지진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은 주로 산지에 위치하고 있음. 이들 지역은 지형적 특성 때문에 밀, 유채, 감자 등의 작물을 주로 재배하고 있음. 지진으로 인해 이와 같은 여름철 수확 작물이 많은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인력 부족과 농기계 파손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이들 피해 지역의 복구가 장기화 될 것으로 봤을 때, 이들 작물의 수확이 전혀 불가능할 수도 있음. 특히 유채의 경우 이미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수확을 완전히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음.
- 밀, 유채, 감자 및 각종 채소 등 여름철 작물의 올 수확량이 일정 부분 감소할 것이 확실함.

## 나. 가을철 수확 작물

- 벼의 경우, 모내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지만 지진 피해 복구가 장기화되고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벼 생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첫째, 지진으로 인해 이미 파종한 모종의 일부분이 손실되었고, 인력 부족으로 인해 차후의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둘째, 지진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농업 기반시설이 바로 수리관개시설임. 관개시설이 필수적인 논농사는 그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음.
  - 셋째, 지진으로 인해 논두렁이 파손되는 등 농경지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고 모내기 전까지 이와 같은 피해를 복구할 수 있을지의 여부도 가늠하기 어려움.
  - 넷째, 모내기는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거나 혹은 기계화로 이루어지는 생산단계임. 그러나 많은 인명 피해와 농기계의 대량 파손으로 인해 농업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모내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도 현재로선 미지수임.
  - 다섯째, 모내기 이후 사후관리에 필요한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생산시설의 파괴로 자체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운송시설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어 외부 조달도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옥수수의 경우, 벼에 비해 생산 공정이 간단하기는 하지만, 주로 비탈진 밭을 이용해 생산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또한 벼농사와 마찬가지로, 인력 부족, 수리관개시설의 파괴, 비료, 농약 등 생산자재 공급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인해 생산량 감소가 예상된다.

## 다. 돼지고기

- 사천성은 중국 최대 돼지고기 생산지로서, 2006년 도축된 돼지는 무려 7,471만 마리에 달했음.
  - 그러나 지난 해 돼지 전염병 등의 원인으로 인해 돼지고기 공급량이 줄면서, 돼지고기 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음. 뿐만 아니라, 2007년 중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에 “일등 공신”의 역할을 한 것도 바로 돼지고기였음.

- 사천성만 봐도, 작년 돼지고기 가격이 약 5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중국 정부는 이번 지진이 사천성의 돼지고기 공급에 미칠 영향 예측과 대책 마련에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현재까지 파악된 축산업의 직접적인 지진 피해는 사천, 중경, 섬서, 감숙, 운남 등 5개 성(시)에 걸쳐 사망기축수가 1,300만두(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이 가운데 피해가 가장 심한 사천성의 6개 시(주)의 사망기축수는 1,234만두(마리)이며, 그 중 돼지가 81만 마리임.
- 하지만 양돈농가의 주요 집산지 대부분이 이번 지진 발생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천성 남부지역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지진 발생으로 인해 사천성 돼지고기 공급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주요 지진 재해지역에도 상당수의 양돈농가와 가공공장이 피해를 입었고, 기타 지역 가공공장 근로자들의 해산으로 인해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운 실정임.
- 도로·철도 등 운송시설의 피해로 인해 사료 공급과 돼지고기 유통에 차질이 생기면서 어느 정도의 단기적인 공급 차질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5.4. 식품 수급 및 가격 전망

### 가. 식품 수급 전망

- 주요 지진재해지역 인구의 78.2%가 농촌 인구인 것으로 보아 사망자의 대부분이 농민일 것이라 추정됨. 거기에 부상자까지 포함할 경우, 지역 인구 중 약 4~5%의 농촌 노동력 손실이 예상됨.
- 비록 정상적인 노동력을 유지하고 있는 농민이라 할지라도 가옥 및 기타 부대시설의 파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움.
- 농기계 등 농업 생산수단의 파손으로 인해 노동 효율성이 저하되며, 재해를 겪고 난 후 찾아오는 심리적 허탈감과 의욕 상실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정상적인 노동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따라서 실질적인 노동력 손실은 5% 이상이 될 것임.
- 중국 농업부 보고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해 3.3만 ha에 달하는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음. 이는 사천성 전체 경지면적(916.9만 ha)의 0.36%에 해당함.

- 비록 피해를 면했다고 할지라도, 지금이 유채 등 일부 작물의 수확기인 동시에 벼와 옥수수의 파종시기임을 감안할 때, 경지의 정상적인 이용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경지의 직간접적인 피해 면적은 이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됨.
- 도로 및 철도 등 운송시설의 파괴로 인해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공급에 차질이 예견되고 병충해 발생이나 농작물 발육 저하 등 2차적 피해도 우려되고 있음.
- 지진 피해 지역의 정상적인 농업 생산 확보는 불가능한 상황임.
  - 특히 8개 주요 재해지역의 경우, 수확기를 맞은 유채 생산을 완전히 포기해야할 상황임. 이 8개 지역이 사천성 전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인데, 예년 농업 생산량의 50% 이상 확보가 어렵다고 했을 때, 올해 사천성 농업 생산량은 최소 2.5%의 감소가 예상됨.
  - 물론, 지진 재해지역의 농산물 생산량 감소가 단기적으로는 사천성과 중국 전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미 충분한 양의 비축 식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망이 정상화되어 식품 유통만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지진의 영향은 장기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예상되는 농산물 생산량 감소분은 중국 전체 생산량의 매우 적은 비중이므로 중국 전체 농산물 수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지진 발생 지역의 육류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사육시설의 파손 등 축산업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판단됨. 이에 중국 정부는 사천성 돼지고기 생산 차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대표적인 조치의 하나로 홍콩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의 공급 조절을 들 수 있음.
  - 중국국가품질검사총국에 따르면 2008년 1~4월 사천성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총 8,200여 톤이며, 그 중 대부분이 홍콩으로 수출되었음. 이번 지진의 영향으로 일부 양돈장과 돈육가공공장이 피해를 입어 돼지고기 공급에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특히 지진재난지역에 속해 있는 사천성 자양(資陽)시에 있는 한 돼지고기 공급상

(還宇實業有限公司)은 당초 베이징올림픽 홍콩지역경기장의 돼지고기 공급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단기간 내에 홍콩으로의 돼지고기 수출이 어렵게 되었음.

- 이에 국가품질검사총국은 상무부와 협의하여 지진의 영향으로 그간 사천성이 홍콩으로 수출하던 돼지고기의 일부를 허베이, 광둥, 허난, 안후이 및 산둥성에 매월 400~500톤의 돼지고기 공급량을 증가하도록 하여 홍콩의 돼지고기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방침을 정하고 그 내용을 홍콩의 유관부문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나. 식품 가격 전망

- 2008년 1분기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8%를 기록했다. 이를 다시 월별로 구분해보면 1월, 2월, 3월의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7.1%, 8.7%, 8.3%를 나타냈으며, 지난 4월에도 비슷한 수준인 8.5%를 기록하였음.
  - 이처럼 높은 소비자물가지수를 기록하고 있는 주된 요인은 바로 농산물 가격 상승임. 2008년 1분기 전국 농산물 생산자물가지수(PPI)를 살펴보면, 전국의 경우 25.5%를 기록하였고, 그 중에서도 축산물의 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산돼지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62.1% 증가하였음.
  - 그리고 땅콩, 유채, 대두 등의 유지류의 가격도 대폭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으며, 생산자물가지수는 각각 28.8%, 36.8%, 40.1%임. 이러한 유지류 가격 상승은 국제가격 상승의 영향 때문임.
- 식량 생산자물가지수도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아 11.4%를 기록하였음. 채소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춘절 직전의 폭설로 인해 재배시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고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임.
- 2008년 1분기 사천성 농산물 생산자물가지수는 전국 평균 수준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쌀의 경우, 전국 생산자물가지수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그 외의 농산물의 경우 전국 평균 수준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사천성 지진으로 인해 높은 소비자물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재해 지역에 식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식품 가격 상승을 초래하게 될 것이

- 고, 사천성 이외의 지역에서 식품 공급을 지속적으로 받게 됨으로써, 중국 전체 식품 수요량이 다소 증가할 것임.
- 또한 사천성 소비자들은 물론, 다른 지역 소비자들의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작용하면서 식품 수요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음.
  - 이번 지진으로 인해 수확기에 접어든 유채 생산과 돼지고기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됨으로써, 줄곧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의 주범이었던 이 두 농산물의 가격 상승은 지난 1분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거나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이번 지진 발생과 모내기 시기가 맞물리면서 벼농사에 지장을 줌으로써 쌀 가격도 다소 증가할 것임. 이와 같은 국내 식품 가격 상승에 국제 식량가격 상승이라는 변수가 더해져, 5월과 6월의 소비자물가지수는 4월보다 다소 높은 9.0~9.5%가 될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이러한 높은 소비자물가 추세가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임. 지난 2003년 발생한 사스(SARS)와 비교하면, 사천성 지진은 국지적 재난으로 당시에 비해 중국 정부의 위기 대응능력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재해지역의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고 정국이 안정을 되찾으면 물가도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임.

표 11 2008년 1분기 농산물 생산자물가지수(PPI) 현황

단위: %

구 분	농산물 생산자물가지수		구 분	농산물 생산자물가지수	
	전 국	사천성		전 국	사천성
식 량	11.4	11.8	채 소	23.4	23.6
밀	8.7	12.6	과 일	9.7	1.6
쌀	3.5	12.5	산돼지	62.1	61.6
옥수수	8.9	8.5	산 소	37.3	4.9
땅 콩	28.8	20.5	가금류	17.9	20.6
유 채	36.8	35.7	수산물	12.9	16.7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http://www.stats.gov.cn>).

- 중국 국내 전문가 대부분은 이번 지진이 식품가격상승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는 다음 몇 가지 근거에 연유하고 있음.
  - 첫째, 사천성 내부 상황으로 보면, 시기적으로 지진 발생 시점에 피해지역의 주요 식량 과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농경지 피해 면적도 크지 않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식량가격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
  - 사천성이 중국 최대 양돈지역이나 주요 지진 재해지역인 윈촨현과 주변지역은 주요 양돈기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
  - 둘째, 전국의 상황으로 보면, 이번 지진 재해지역의 농업생산기반이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임.
  - 5월 1일 ~ 10일, 10일 동안 화물열차를 이용하여 동북산 식량 234만 톤을 타 지역으로 집중 운송하였다고 발표하였음. 이 중 화북, 화남지역으로 운송한 식량은 총 165만 톤으로 일평균 식량 수송량의 두 배에 해당하는 양임. 이에 의해 현재 화남지구 식량가격은 어느 정도 하락하였음.

## 5.5. 결론

- 이번 지진의 주요 피해지역이 주로 농촌지역이어서 농업 기반시설 파괴와 농촌노동력 손실 등 지역적인 농업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사천성은 전체 산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농촌인구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번 대지진이 사천성 농업 생산에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칠 것으로 보임.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유채, 쌀, 돼지고기를 중심으로 사천성 연간 농업생산량의 약 2.5%의 감산이 예상됨. 하지만 양적인 면에서 중국 전체 농산물 생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은 상황 인식의 바탕 위에서 중국의 경제전문가들은 지진이 중국 경제 및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임. 그 이유는 주요 지진 재해지역이 사천성 북부의 산이 많은 지역으로 중요한 산업시설이 위치해 있지 않고 주요 농업생산 거점 또한 아니기 때문임.

- 다만 전문가들은 사천성의 교통인프라 훼손에 따른 식품을 포함한 물자 운송체계가 원활치 못하여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물가상승 현상도 지역적이고 단기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
- 결론적으로 이번 사천성 지진이 중국의 농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더욱이 사천성 지진 발생이 한국을 포함한 국제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아 보임.

작성자: 정정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장)  
cgchung@krei.re.kr

### Ⅲ. 농정연구 이슈

#### 1. 중국의 DDA 농업협상 대응방향<sup>15</sup>

- 2002년부터 중국은 WTO의 정식회원국 신분으로 농업협상에 참여하였음. 중국은 개도국 회원국 입장을 견지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금번 협상의 목표를 공평하고 균형적인 다자간 무역체제의 수립에 두고, 선진국 회원국들이 무역을 왜곡하는 국내보조를 대폭 삭감하고 개도국 회원국들도 시장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중국은 또한 중국을 포함한 신규 가입국들이 WTO 가입과정에서 시장을 대폭 개방하여 세계 농산물 무역자유화에 공헌하였으므로 이번 협상에서 이들 신규 가입국들과 관련된 문제, 특히 관세삭감 문제에서 융통성을 부여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음.
- 현재 국내외적으로 중국의 협상입장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하고 있음. 일부 견해는 중국의 WTO 가입에 의한 무역자유화가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뚜렷하지 않고, 관세삭감으로 인한 영향도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음.
  - 따라서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을 위해서는 더욱 더 많은 자원집약형 제품을 수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DDA 농업협상의 결과도 중국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1.1. WTO 가입의 부정적 영향

- WTO 가입이래 중국 농업은 국내 소비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농가소득, 농업총생산액, 주요 농산물의 생산량 및 무역량 등이 모두 증가하였고, 농업생산구조와 농산물 품질도 개선되었음. 반면 부정적인 영향도 점차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15 王東輝. 2008.1. “中國在多哈農業談判中的取向”. 『世界農業』 2008.1(總345)을 번역 정리하였음. 王東輝는 중국의 DDA 농업협상을 총괄하는 중국 농업부 무역촉진센터(貿易促進中心)에 재직 중임.

- 첫째, 농산물 수입 증가폭이 수출보다 큼. WTO 가입 후 5년 동안 농산물 수출은 연평균 12% 증가한 반면 수입은 21% 증가하여 농산물 수입 증가폭이 수출 증가폭을 상회하였음.
  - 둘째, 일부 보호정도가 낮은 품목, 특히 대두는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산 대두 가격이 하락했으며 면화와 유제품의 피해도 점차 나타나고 있음. 최근 대두수입의 급증에 따른 중국 국내산 대두가격 하락, 면화가격 과동 및 유제품 농가들의 피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셋째, 외국 농산물이 빠른 속도로 중국 국내시장을 점령하고 있음.
-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데는 복잡한 원인이 있음.
- 국내 농업생산 규모가 작고, 시장체제가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거시적 조절 강도가 높지 못함에도 원인이 있음. 그러나 관세 삭감 폭이 크고, 보호수준이 낮았던 것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중요 원인임.
  - 결국 DDA 농업협상에서 중국이 시장을 더욱 더 개방한다면 부정적인 영향은 심화될 것임.

## 1.2. 일정 관세율 유지의 필요성

- 국제적인 경험으로 볼 때, 일정한 관세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중국 농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조건임.
- 첫째, 자원제약은 중국 농업의 중요한 제약요인이며 전반적으로 경쟁력도 강하지 못함.
  - 둘째, 중국은 공업화 초기단계에 처해 있으며 완전한 공업화 실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함. 최근 농업에 대한 재정투자가 확대되고 있지만 장기간 농업을 대폭적으로 지원할 여력은 없는 실정임.

## 1.3. 수입증대와 관세

- WTO 가입이래 자원집약형 농산물의 수입 증대는 국내수요를 만족시켰을 뿐만 아

나라 이로 인해 토지, 물 등 부족 자원에 대한 압력도 다소 해소되었음. 하지만 이는 문제의 일부 측면만 강조된 것으로 문제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려면 중국 농업 발전의 특징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인 판단이 필요함.

- 중국의 식량공급은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하며 이는 식량안보와 관련되는 문제임.
  - 세계의 식량 무역총량은 한정되어 있어 중국의 전체 수입수요를 만족시킬 수는 없음. 중국의 농산물 수입은 공급 부족량을 보충할 수 있을 뿐이며 국내생산을 대체할 수는 없음.
  - 이것은 중국이 국내적으로 상당한 생산규모와 안정된 가격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들의 소비수준 향상으로 장기적으로 중국은 농산물 순수입국이 될 것임.
  - FAO 등 국제기구와 미국의 연구기관에서도 모델분석을 통하여 비슷한 결론을 도출하였음. 향후 10~20년 내 중국은 자원집약형 농산물을 대량 수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재 대량 수출하고 있는 채소, 과일, 축산물 등 노동집약형 농산물도 국내 소비로 전환될 전망이다.
  - 세계적으로 농산물 순수입국가, 특히 일부 선진국과 유럽, 일본, 한국 등 국가들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거나 생산량이 적은 농산물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의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의 목표는 수입급증으로 인한 생산 위축을 예방하고 가격 안정과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 농촌노동력의 도시유출이 확대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농촌노동력의 과잉으로 도시 취업이 용이하지 않고, 농민들의 소질도 낮아 선택 가능한 기회가 제한되는 등 종합적인 제약요인으로 인해 과잉 농촌노동력의 유출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향후 오랫동안 농업부문은 대량의 농촌노동력을 흡수해야 하고, 농민들에게 농업소득은 향후 오랫동안 주요한 소득원으로 기능할 것임. 따라서 일정한 관세수준을 유지하여 수입급증에 따른 충격을 방지하고 국내가격을 안정시키는 한편 농민소득의 안정을 도모해야 함.

- WTO 가입이 증명하다시피 중국의 농업발전은 해외 자원을 이용해야 하며 수입을 통해 국내생산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 함.
  - 그러나 수입은 국내생산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으며, 합리적인 관세수준으로 수입하여 국내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내생산에 대한 불리한 영향을 차단해야 함.
  - 현재 중국은 관세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이며 적당한 관세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극히 필요한 조치임.

#### 1.4. 협상의 목표

- 중국은 협상에서 신규 가입국(RAM)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음.
  - 신규 가입국이란 우루과이라운드 말기(2000년) 이후 WTO에 가입한 국가들로서 WTO 가입협상에서 특히 시장개방분야에서 일반 회원국보다 많은 내용을 양보했음.
- 관세율을 보면, 일반 개도국 회원국의 농산물 평균관세는 60%, 신규 가입국은 17%인 반면 중국은 15%로 선진국 회원국의 평균 관세율 12%에 근접함.
  - 신규 가입국의 80% 제품의 관세수준이 20%를 초과하지 않고, 최고 관세도 100%를 초과하지 않는 반면 중국의 최고 관세율은 65%에 불과함.
  - 또한 일부 선진국의 고관세 제품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임. 예를 들면 일본의 쌀 관세율은 1700%에 달함.
- 관세구조를 보면 신규 가입국의 제약관세와 실시관세는 일치하는 반면 일반 개도국 회원국의 제약세율은 실시세율을 크게 웃돌고 있음. DDA 협상에서 관세삭감은 제약세율에 기초하기 때문에 개도국에서 관세삭감을 해도 실제관세는 삭감되지 않음.
  - 그러나 중국을 포함한 신규 가입국들은 실질적으로 관세를 삭감하게 됨. 따라서 평등한 무역체계를 수립하는 의미에서 금번 협상에서는 신규 가입국들에 융통성을 부여해야 함.
  - 특히 관세삭감 문제에서 일부 제품에 대해 적게 삭감하거나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하여 회원국 간 불평등 격차를 축소해야 함.

- 농업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우루과이 농업협상에서는 시장화를 지향하는 농산물무역체제의 개혁이 장시간을 요하는 문제임을 지적한 바 있음.
  - 그러나 중국은 단기간 내에 상당한 개혁을 진행하여 국제 농산물무역의 발전에 공헌하였음.
  - 중국은 대국으로서 평등성과 합리성이 보장되고 중국 농업·농민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금번 협상에서 최대한의 공헌을 할 것임.

## 2. 식량 직접지불제의 효과, 문제점 및 대책<sup>16</sup>

- 식량직불제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식량관련 개혁조치 중 하나로 국내 식량유통을 전면 시장화하기 위한 개혁 조치임.
  -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정부가 실시해온 유통단계에서의 간접보조 방식은 비효율적이고 국영식량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한편 재정부담이 커지는 등 폐단을 초래하였음.
  -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2002년 일부지역에서 식량직불제를 시범실시한 후 식량작물에 대한 보조방식을 유통단계의 간접 보조로부터 식량재배 농민에 대한 직접보조로 전환하였음.
- 2004년을 기준으로 13개 식량 주산지 성(자치구)을 포함하여 29개 성에서 식량직불제를 시행하였으며, 116억 위안의 기금이 사용되어 6억 농민이 혜택을 보았음.
- 총체적으로 볼 때 식량 직접지불제 정책은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었고 식량생산의 적극성을 제고하여 수매와 판매의 시장화와 국영식량기업의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했으며 식량위험기금(糧食風險基金)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게 되었음.
- 반면 이 정책은 직불금 보조유형이 복잡하고 보조기준도 지역 간 격차가 현저하며, 농민들이 정책의 지속성에 회의를 품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음.

16 李瑞鋒, 肖海峰. 2006. “我國糧食直接補貼政策的實施效果, 問題及完善對策”, 『農業現代研究』, 제27권 제2호를 번역 정리하였음.

- 보조 목적을 명확히 하고 보조 유형을 규범화하며 식량 주산지 성의 식량위험기금에서 차지하는 중앙재정의 몫을 확대하는 등 개혁을 추진해야 함.

## 2.1. 실시 효과

### □ 농민 직접 수혜, 식량생산의 적극성 제고

- 식량 직접지불제는 이전의 유통단계에서의 간접보조 방식을 벗어나 농민에 직접 혜택을 주는 조치임.
  - 정책실행 초기부터 농민들의 식량생산의 적극성을 충분히 견인할 수 있었음.
  - 식량직불제의 시행과 2004년 시행된 각종 지원 정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식량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모두 뚜렷하게 증가하였음.

### □ 식량유통의 전면적인 시장화와 국영식량기업의 개혁 추진

-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식량 수매 및 판매제도는 지속적으로 시장화 방향으로 개혁되었지만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린 실정이었음.
  - 식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시장화 속도를 늦춘 원인도 있었지만, 국영식량기업의 운영측면에서 장기간 기업 기능이 분리되지 않은 것도 주요한 장애요인이었음.
  - 기업의 기능이 분리되지 않은 주요한 원인은 기업이 농민에게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등 정부기능을 담당함으로써 보조에 대한 의존도가 강화되어 시장화를 추진할 동력이 부족하였음. 전반적인 시장화를 실현하려면 국영식량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국영식량기업을 시장화 이념을 갖춘 시장주체로 개혁해야 함.
- 식량직불제는 장기간 지속되었던 간접보조 방식을 전환함으로써 식량작물 보조제도에 대한 개혁을 실현하였고, 식량유통체제의 시장화 개혁을 진전시켰음.
  - 식량직불제 개혁을 통해 국영식량기업이 정부가 정한 보호가격으로 농민들의 여분의 식량을 수매하던 수매보호가격제도를 폐지하였음. 정부도 국영식량기업의 적정량을 초과하는 비축분에 대한 보조를 폐지하여 국영기업과 기타 식량판매 주

체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식량시장에 진입하도록 하였음.

□ 식량위험기금의 효율적 이용

- 1998년 식량유통체제 개혁이래, 식량위험기금은 주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 사용되었음.
  - 첫째, 중앙정부와 성 정부 비축식량의 이자 및 비용 보조
  - 둘째, 수매 보호가격제도 시행으로 국영식량기업의 적정 저장량을 초과하는 비축분에 대한 이자 및 비용 보조
- 이러한 보조를 통해 식량 비축제도와 식량수매 보호가격제도의 효과적인 집행을 보장하였고, 최종적으로 식량안보와 식량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실현하였음.
  - 그러나 수매와 판매가격 형성 구조가 다르고 장기간 체제적인 원인이 존재하여 국영 식량기업은 매년 손실이 발생하고 비축량도 증가하여 식량위험기금 투입이 증가했고 결과적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음.
- 2002년 시범지역에서부터 식량작물에 대한 보조를 직접보조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식량위험기금의 용도도 새롭게 조정하였음.
  - 주로 식량 재배농민에 대한 직접보조, 식량비축 지원, 식량시장 안정 등의 용도에 사용하게 되었음.

## 2.2. 문제점

□ 보조유형 복잡, 정책목표 불명확

- 현재 중국 내 각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접지불제는 많은 유형이 있고 형식도 다양함.
  - 밀, 옥수수, 벼 등 대상 품목이 다양하고, 모든 농민에 대한 보조, 식량재배 농민에 대한 보조, 식량 재배규모가 큰 농민에 대한 보조 등 직불금 지급 대상 농민의

범위도 다양함.

- 또한 지역별로는 성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조, 식량주산지 현(시)를 대상으로 한 보조로 구분됨. 현에 대한 보조는 식량 판매량, 재배면적, 농업세 부과면적에 대한 보조로 구분되며, 농민에 대한 보조도 세금부과면적, 재배면적, 실제 식량판매량 등에 의한 보조로 구분됨.
- 2004년부터 식량재배 농민을 대상으로 한 식량직불제는 다음의 3가지로 구분함.
  - 첫째, 당해연도의 재배면적, 가격과 연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부과면적에 의한 보조, 세금 부과 평년 생산량에 의한 보조 등이 있음. 식량을 재배하지 않아도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주로 안휘, 길림, 사천, 감숙, 하남, 흑룡강, 영하, 내몽고 등 지역에서 실시함.
  - 둘째, 당해년도 실제 재배면적과 연계된 방식으로 농민들이 실제로 식량을 재배한 면적에 따라 식량직불금을 지불함. 이 방식은 가격과는 연계되지 않으며 주로 강서, 호남, 강소, 산둥, 광둥, 북경, 천진, 상해, 중경, 운남, 산서, 섬서, 요녕, 청해, 하북 등 지역에서 실시함.
  - 셋째, 농민들의 실제 식량 판매량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농민이 실제로 판매한 식량의 수량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함. 주로 신강, 절강, 복건 및 광서 등 지역에서 실시함.
- 복잡하고 다양한 직불제 유형은 중국의 식량 직불제 정책의 목표가 불명확하다는 것을 의미함.
  - 서로 다른 보조유형은 그 효과가 차별적이며 유형간 효과도 격차가 존재함.
  - 첫 번째 방식은 혜택을 받는 농민의 범위가 광범위한 반면 농민들의 식량생산의 적극성을 유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두 번째와 세 번째 방식은 혜택을 보는 범위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농민들의 식량생산의 적극성을 자극하는 데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음.
- 보조기준의 지역간 격차
  - 식량 직불금의 지급 기준은 통일적이지 않고 재정 지불능력에 따라 확정되고 있음.

- 직불금 지불수요에 따라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예산에 따라 지급 기준을 정하고 있음. 또한 각 지역별로 보조 대상 식량 재배면적, 생산량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각 지역의 전반적인 재정수준과 필요한 직불금 간 격차는 보조기준의 지역별 격차를 초래하였음. 예를 들어 재배면적에 의거하여 보조를 실시하는 지역 중 산서성의 옥수수에 대한 직불금 지급 기준은 75위안/ha, 벼는 75위안/ha, 밀은 150위안/ha 이고, 상하이에서는 벼 재배 농민들의 실제 재배면적에 따라 900~1,200위안/ha으로 차등 지불하고 있음.
  - 주산지 성에 해당하는 강서성과 강소성의 보조기준도 차이가 큰데 강서성의 경우 재배면적 기준으로 150위안/ha를 지급하는 반면 강소성은 300위안/ha를 지급하고 있어 성간 격차가 매우 큼.
- 지역 간 직불금 격차는 농민들로 하여금 정책의 공평성에 대해 불만을 갖게 함. 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식량 주산지의 농민에 대한 직불금 지급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농민의 회의

- 식량 직접지불제는 실행 초기 농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식량 생산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였지만, 시행 과정에서 지역별로 통일적인 기준이 없고, 구체적인 보조유형과 방식이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 식량 직불제의 장기적인 발전은 안정성과 규범화에 있음. 2007년도 식량 직불제 정책 시행에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흑룡강성 10개 현(시) 13개 행정촌의 간부와 농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50% 이상의 식량 재배농민들이 정책의 지속성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음.

### 2.3. 정책적 건의

□ 직접보조의 목표 구체화, 보조유형의 규범화

- 복잡하고 다양한 보조유형은 효율적인 정책 실행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 식량직불제의 정책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시행결과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진행하여야 함. 소득보조와 가격지지는 서로 다른 농업보호조치임.
  - 농업세 부과 면적과 농업세 부과 평년 생산량에 의거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종의 소득보조로서 농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농민들의 식량 생산의 적극성을 견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실제 판매량에 의한 직불금 지급은 가격보조로서 농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농민들의 식량 생산의 적극성을 제고하는 등의 역할을 동시에 함.
  - 현재 실행하고 있는 식량직불제는 이 두 가지 유형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와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함.
- 중국 국내 상황으로 볼 때 식량 직불제는 점차 소득보조 방향으로 규범화되어야 함. 하지만 식량 직불제 정책이 가격지지 정책을 대체할 수는 없음.
- 다른 나라의 경험에서 보듯 소득보전 직접직불제는 전반적인 직접보조정책의 일부분으로서 다른 보조정책을 대체하여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음.
  - 따라서 향후 가격지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직불제 방식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지역 간 격차 완화

- 식량 주산지의 식량 생산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의 식량안보를 해결하는 관건임.
- 식량 주산지의 식량 생산은 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소득과 관련한 농민들의 식량 생산의 적극성 문제는 주요한 영향요인임.
  - 식량 주산지의 농민소득 중 식량으로부터 얻는 소득의 비중이 큼. 식량시장의 어떠한 변화도 농민들의 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식량 주산지의 식량 생산에 영향을 미치게 됨. 따라서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산지 농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함.
  - 현재 대부분의 식량 주산지는 경제발전 수준이 낮고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직접

보조 방식으로 농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존재함. 따라서 정부에서는 주산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함.

□ 중앙정부의 거시조절 능력 향상 및 정책의 안정화

- 식량직불제는 식량유통개혁 조치의 하나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동시에 기타 식량개혁정책과 함께 안정적인 정책체계를 형성해야 함.
  - 정부의 거시적 조절 능력을 제고하여 식량시장의 전면적인 시장화를 배경으로 식량직불제를 시행하고, 관련 정책과 연계하여 식량생산을 촉진해야 함.
  - 향후 개혁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식량비축체계를 구축하고 중앙 비축 식량의 관리 체계를 완성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비축량에 대한 조절기능을 강화해야 함.

## IV. 정 책 자 료

### 1. 『식품안전법(초안)』 전문

- 제1장 총칙
- 제2장 식품안전 위협평가
- 제3장 식품안전표준
- 제4장 식품검역검사
- 제5장 식품생산경영
- 제6장 식품수출입
- 제7장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조치
- 제8장 관리감독
- 제9장 법률책임
- 제10장 부칙

#### 제1장 총칙

- 제1조 식품오염 및 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위해요소의 인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통제·제거하고, 식원성 질병 발생을 예방 또는 감소시키고,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 안전과 신체 건강을 보장하고, 국민의 체질을 증강시키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안에서 아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반드시 본 법을 준수해야 한다.
- 1)식품 생산과 가공(이하 식품생산이라 칭함), 식품유통과 요식서비스(이하 식품경영이라 칭함)
  - 2)식품첨가제의 생산과 경영
  - 3)식품에 사용하는 포장재료, 용기, 세척제, 소독제 및 식품생산과 경영에 사용

하는 도구 및 설비(이하 식품관련제품이라 칭함)의 생산과 경영

4)식품생산경영자가 사용하는 식품첨가제와 식품관련제품

5)식품, 식품첨가제 및 식품관련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식용으로 제공되는 1차농산물(이하 식용농산물이라 칭함)의 품질안전관리는 농산물품질안전법의 규정을 준수한다. 단, 식용농산물의 품질안전표준을 제정하거나 식용농산물안전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경우 반드시 본 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유전자 변형 식품의 안전관리는 유관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 식품생산경영자는 본 법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과 식품안전표준을 엄격히 준수하여 생산경영 활동에 임해야 하며 불안전식품을 생산 경영해서는 아니 된다. 불안전식품을 생산 경영하는 자는 본 법에 의거 반드시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 현급(縣級)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의 식품안전관리감독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통일된 지도체제를 구축하여 관할 행정구역의 식품안전관리감독 업무를 조정하고, 보다 완벽한 식품안전관리감독 협력체제를 수립한다. 통일된 지도체제로 식품안전 돌발사건 처리업무를 지휘한다. 식품안전관리감독책임제를 도입하여 식품안전관리감독부문에 대한 논의와 심사를 실시한다.

효과적인 식품안전관리감독 업무 이행을 위하여 상급 인민정부 소속기관이 하급 행정구역에 설치한 기구는 소재지 인민정부의 협력 하에 법에 따라 식품안전관리감독 업무를 훌륭히 수행해야 한다.

제5조 현급이상 식품생산, 유통, 요식서비스 관리감독부문은 본 법과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의거하여 식품 생산 경영 활동에 대해 관리감독을 실행한다.

식품안전 위험평가, 식품안전 표준제정, 식품안전 정보공개, 식품안전 사고조사 및 처리, 그리고 식품검역검사기구의 자격인정 조건과 검역검사 규범의 제정은 국무원의 수권기관이 책임진다.

국무원은 실제수요에 의거하여 식품안전관리감독체제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유관 식품업협회는 업계자율성을 높이고, 식품안전 지식의 홍보와 보급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합법적인 식품생산경영자가 생산 경영하는 식품 또는 법률 요구에 부합하는 상표와 표지를 부착한 식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한다.

제7조 국가는 사회단체나 지역자치조직이 식품안전 지식과 식품안전 법률, 법규, 표준

지식의 보급 업무를 추진하도록 격려하고, 건강한 음식 방법을 계몽하며, 소비자의 식품안전 의식과 자아보호 능력을 강화시킨다.

신문매체는 식품안전지식 및 식품안전 법률, 법규, 표준지식의 공익적 홍보를 무상으로 실시한다.

제8조 국가는 식품안전 관련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수행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선진 기술과 선진 경영규범을 도입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식품 생산의 규모화와 연쇄경영, 배송을 장려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 식품소비자는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고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유관부문에 식품안전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식품안전 관리감독 업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건의를 할 수 있다. 또한 식품, 식품첨가제 또는 식품관련 제품에 의하여 신체나 재산 손해를 입은 자는 법에 의거하여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

어떠한 단체와 개인이든지 식품생산경영 중의 위법범죄행위를 고발 할 권리를 가진다. 조사 결과 제보내용이 사실인 경우, 유관 식품안전관리감독기관은 제보자에게 상금을 수여해야 한다.

## 제2장 식품안전 위협평가

제10조 국가는 식품안전 위협감시제도를 건립하여 식품매개 질병, 식품오염 및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위해요소들을 감시한다.

국무원의 수권기관은 국무원 기타 유관기관과 같이 식품안전위협감시 프로젝트를 실행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확정한 관련 기관은 국가식품안전위협감시 프로젝트와 본 행정구역의 실제상황에 의거하여 자체적으로 본 행정구역에서 실행 할 식품안전위협감시 방안을 제정, 실행한다.

제11조 국가는 식품안전위협평가 제도를 건립하여 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생물성, 화학성, 물리성 위험도를 평가한다.

식품안전위협평가업무는 식품안전위협평가 전문가 위원회가 구체적인 책임을 진다. 식품안전위협평가 위원회는 국무원 기타 유관기관 관련기관으로부터 초

병한 위생, 농업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국무원 기타 유관기관은 국무원으로부터 식품안전위험평가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대해 위험평가업무에 관한 건의와 관련정보와 관련 자료를 제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국무원으로부터 식품안전평가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은 일정기간에 국무원 기타 유관기관에 안전위험평가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12조 식품안전위험평가위원회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실행해야 한다. 식품안전위험감독정보와 관련과학데이터 그리고 기타 정보를 바탕으로 식품안전위험평가 업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13조 식품안전위험평가결과는 추후 식품안전표준, 식품안전관리감독 사항들을 제정 혹은 수정할 때 과학적 근거로 사용되어야 한다.

한 식품이 기존 검역검사체계를 통과하였지만 식품안전위험평가 결과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을 경우 국무원으로부터 식품안전표준제정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기존 안전표준을 수정 혹은 재제정해야 한다. 수정된 식품안전표준이 공포되기 전에, 국무원의 식품생산, 유통, 요식서비스 관련 관리감독기관은 각자 부여된 직책에 따라 식품생산경영자에게 그 식품의 생산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국무원으로부터 식품안전평가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국무원 기타 유관기관과 같이 협동하여 식품안전위험평가의 결과, 식품안전관리감독 정보를 토대로 식품안전현황에 관해 종합적인 분석을 진행한다. 이를 토대로 국무원으로부터 식품안전정보공포권한을 수여받은 기관은 위험도가 높은 식품에 대해 안전위험경고를 공포한다.

제14조 농약, 비료, 성장촉진제, 수약, 사료, 사료첨가제등 품목에 대해서 안전성 평가를 진행한다. 식품안전위험평가 전문위원회가 이 평가에 참여한다.

도축에 관한 검역검사규정은 국무원 기타 유관기관과 국무원으로부터 식품안전위험평가권한을 위임받은 기관들이 서로 협의하여 제정된다.

### 제3장 식품안전표준

제15조 식품안전표준은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표준이다. 국가표준과 지방표준으로 나

된다. 국가표준에 없는 사항은 지방표준 제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식품안전표준 외에 다른 기준은 강제적인 구속력이 없다.

제16조 식품안전표준은 아래의 사항에 부합되어야 한다.

- 1)식품, 식품관련제품에 치명적인 미생물, 농약잔류물, 수약잔류물, 중금속, 오염물질 및 기타 인체건강에 해가 되는 물질에 제한규정을 둔다.
- 2)식품첨가제의 종류, 사용범위, 사용량
- 3)유아용 주식, 보조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기준치 사항
- 4)식품안전, 영양관련 정보의 표시 및 설명서에 대한 요구사항
- 5)식품생산경영과정의 위생조건
- 6)식품안전과 관련된 품질요구사항
- 7)식품검역검사방법과 관련 규정
- 8)식품안전표준으로 제정되어야 하는 기타 사항들.

제17조 국무원의 수권기관은 식품안전국가표준을 제정, 공포한다. 식품안전기준의 제정 및 수정 업무는 식품안전위험평가 결과와 식용농산품품질 안전위험평가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기준과 중국의 경제, 사회, 과학기술 수준과 식품생산경영자 그리고 관련업체들의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

제18조 식품안전국가표준은 식품안전국가표준 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식품안전국가표준 심사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국무원으로부터 식품안전표준제정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국무원 기타 유관기관에서 초빙한 위생, 농업 분야 전문가, 그 외에 국무원 농업 담당기관과 식품생산, 유통, 요식서비스 관련 관리감독 기관의 대표.

국무원으로부터 식품안전표준제정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신문매체에 식품안전국가표준을 공포한다. 대중은 무료로 식품안전국가기준을 열람할 수 있다.

제19조 본법이 규정한 식품안전국가기준이 발효되기 전, 식품생산경영자는 현행 식품위생표준, 식품품질표준과 관련업체규정에 따라 식품을 생산한다.

식품안전국가표준이외 기타 관련 제품에 대한 국가기준 가운데 본법 16조에 나열한 사항과 겹치는 사항이 있다면 식품안전국가표준을 따르도록 한다.

제20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식품안전표준제정 담당기관은 본법에 명시한 식품안전국가표준 혹은 수정된 규정에 의거하여 식품안전지방표준을 제정 혹은 수정한다. 또한 국무원으로부터 식품안전표준제정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건의 할 수 있다.

제21조 국가는 식품생산경영기업이 식품안전국가표준, 지방표준보다 더욱 엄격한 표준을 사용하는 것을 격려한다.

#### 제4장 식품검역검사

제22조 식품검역검사기구에 대한 인증은 국무원의 인증인가 유관기관의 자격심사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인증을 받지 못한 검역검사기구가 제시한 식품검역검사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단, 본 법 혹은 기타 법률에 명시된 예외 규정에 한해서 제외한다.

식품검역검사기구에 대한 자격인증 평가 조건과 검역검사규범은 국무원의 수권기관이 제정한다.

본 법 실시 전, 국무원 기타 유관기관 관련 담당기관은 기존 법에 의거하여 식품검역검사활동을 할 수 있다.

제23조 검역검사는 검역검사기구가 지정한 검역검사인의 독립적 검역검사로 이루어져야 한다.

검역검사인은 관련법률, 법규, 규정, 식품안전표준, 검역검사규범을 토대로 식품에 대해 검역 검사하여야 한다. 과학적인 방법을 존중하고, 철저한 직업윤리의식,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검역검사데이터를 평가한다. 허위 검역검사보고를 하지 않는다.

제24조 식품검역검사에 있어 식품검역검사기구와 검역검사인 공동책임제를 실시한다. 식품검역검사보고서는 식품검역검사기구의 인장(도장)을 받아야 한다. 검역검사인의 싸인 혹은 인장이 있어야 한다. 식품검역검사기구와 검역검사인은 모두 식품검역검사보고서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제25조 식품생산, 유통, 요식서비스 관리감독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식품검역검사 업무를 본법규정에 부합되는 식품검역검사기구에 위탁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검역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식품생산경영자, 식품소비자와 관련 식품안전관리감독 기관은 본법에 부합하는 기타 식품검역검사기구에 재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단, 미생물지표에 대한 재검사는 불허한다.

제26조 식품생산경영자, 관련 업종협회, 식품소비자가 식품검역검사를 원할 경우, 본

법규정에 부합되는 식품검역검사기구에 식품검역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 제5장 식품생산경영

제27조 국가는 식품생산경영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허가를 받지 못한 어떠한 단체, 개인도 식품생산경영활동에 종사 할 수 없다.

(예외사항들) 식품생산허가를 받은 식품생산자가 생산한 식품은 따로 식품유통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요식 서비스 허가를 받은 공급자는 요식서비스 업소에서 자사가 만든 식품 제조 및 가공 식품을 직접 판매할 때 추가로 식품생산허가와 유통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농민개인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식용 농산물은 식품유통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생산자가 본 행정구역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식품은 식품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제28조 식품생산경영활동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 1) 생산된 식품, 식품보관, 식품원료처리작업 및 식품포장용 자재 등 물품에 대한 저장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소는 독성물질 및 유독물질 발생지, 오염된 원지과 일정거리 유지하도록 한다.
- 2) 생산된 식품, 식품생산과 연관 있는 생산설비와 시설은 상응하는 소독, 채광, 방부제 처리 및 파리, 쥐 예방처리, 폐수, 폐기물 처리 시설을 확보한다.
- 3) 생산규모에 비례한 식품안전기술요원과 관리요원을 보유한다.
- 4) 생산규모, 생산품목에 비례한 식품오염방지 시설과 관련 생산라인을 확보해야 한다.
- 5)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규정지침이 있다.
- 6) 식품안전표준이 규정한 기타 요구사항을 충족시킨다.

제29조 국가는 식품, 식품첨가제 및 식품관련제품에 대해 관리감시코드제도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절차는 국무원 관련 기관에서 제정한다.

제30조 식품생산경영활동 영업등록을 신청하는 단체 혹은 개인은 해당 소재지의 현급(縣級) 이상 행정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식품생산, 유통, 요식서비스 관리감독 기관에 본법 제28조에 명시되어있는 규정에 부합됨을 증명하는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식품생산, 유통, 요식서비스 관리감독기관은 행정허가법에 명시되

어있는 규정과 직책의 허용범위 안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증명자료를 심사한다. 필요하다면 신청인이 경영하는 생산경영업체를 방문해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규정에 부합되는 신청인에 한해 식품생산, 유통 혹은 요식서비스 허가증명을 발급한다. 식품생산허가증명을 발급을 담당하는 기관은 이미 식품안전관리감시코드 제도를 이행하는 식품생산자에 대해 새로운 관리감시코드(허가번호)부여한다. 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 서면 상으로 불허 사유를 밝힌다.

제31조 국가는 식품첨가제 및 식품관련제품 생산 활동 등에 대해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어떠한 단체, 개인도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32조 새로운 식품첨가제 혹은 식품관련제품 생산허가를 신청하는 단체 혹은 개인은 국무원으로부터 식품안전위험평가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해당 제품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으로부터 식품안전위험평가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신청당일을 기점으로 60일 이내에 해당 제품의 안전성평가자료에 관한 심사를 진행한다. 식품안전요구 사항에 부합 시, 허가 승인을 공포한다. 식품안전요구 사항에 부합되지 않을 시, 허가를 불허하고 서면으로 사유를 불허 사유를 밝힌다.

제33조 식품생산기업은 생산규범요구사항을 지켜야 한다. 국가는 식품생산경영기업이 자체적으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도입하여 식품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을 격려한다.

제34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직원들의 건강관리제도를 신설하고 실행해야 한다. 만약 직장에 이질, 장티푸스, A형간염 등 소화기전염병을 보유한 직원, 활동성 폐결핵 보균, 화농성 혹은 배출성 피부병을 앓는 직원이 있을 경우 이들에게 직접적인 식품생산 업무를 맡겨서는 안 된다.

제35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에 약품을 첨가해서는 안 된다. 단, 전통적으로 식품이면서 중의약 성격을 가지는 물질에 한해서 식품 첨가를 허용한다. 전통적으로 식품이면서 중의약 성격을 가지는 물질을 열거한 목록은 국무원의 수권기관에서 제정과 공포를 담당한다.

시중에 판매되는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 그리고 식품생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은 검역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식품생산자가 사용하는

식품첨가제는 식품안전표준과 현급 식품생산관리감독 기관의 자체 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36조 식품생산경영자가 생산경영하는 식품가운데 자체적인 식품안전표준을 가지고 생산되는 제품은 국가가 규정한 식품안전표준을 따르도록 한다. 따로 식품안전표준이 없는 제품은 무독, 무해, 일정한 영양요구조건 및 본법이 규정한 기타 요구사항 등등의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제37조 어떠한 단체, 개인도 아래에 명시되어 있는 식품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 1) 생산경영과정에 국가가 명백히 사용을 금지한 물질이 포함된 식품
- 2) 병사, 독사 혹은 사인이 불분명한 가축, 가금류, 수산동물의 육류 혹은 육류 가공 제품을 생산 혹은 판매하는 경우
- 3) 비식품원료로 생산한 식품 혹은 비식용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식품 혹은 회수(리콜)식품을 원료로 한 식품 등을 생산 혹은 판매하는 경우
- 4) 영양성분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은 유아용 주식, 보조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 5) 생산 혹은 판매중인 식품이 부패변질된 경우, 곰팡이로 인한 변질한 경우, 벌레가 생긴 경우, 더러운 경우,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미관상으로 변질 된 경우
- 6) 치명적인 미생물, 농약 잔류물, 중금속, 오염물질 및 기타 인체건강에 위해가 되는 물질함량이 국가표준 제한함량 기준보다 초과하는 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 7) 동물위생감독기구의 감독의 검역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역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육류
- 8) 가짜 재료, 저질 재료 등이 섞여 있는 경우.
- 9) 식품포장자체, 용기, 운수도구 등 면에서 오염되어있는 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 10) 표시가 없는 간이포장을 한 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 11) 기타 식품안전요구사항에 미달되는 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제38조 식품생산자는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에 대한 식품안전관리감독 코드제도(이력추적제도)를 만든다.

제39조 사전포장식품(prepackage foods)의 포장에 제품레벨을 표기해야 한다. 레벨

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 1)명칭, 규격, 순용량 생산날짜
- 2)성분 혹은 원료명 표
- 3)생산자 이름, 주소, 연락처
- 4)유통기한
- 5)제품표준코드(혹은 바코드)
- 6)보관 조건
- 7)사용한 식품첨가제
- 8)식품생산허가증 번호
- 9)법률, 법규 혹은 식품안전표준규정에서 규정한 명시해야 하는 기타사항  
유아용 주식, 보조식품의 경우 라벨에 주요영양성분 및 함량치가 표기되어야 한다. 이미 식품안전관리감독코드 제도(이력추적제)를 실행하는 식품은 라벨에 식품안전관리감독코드를 표기해야 한다.

제40조 식품안전관리감독코드를 획득한 식품생산자는 자사 식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 식품생산허가증을 발급한 식품생산관리감독 기관에 식품의 생산날짜, 제품 검역검사 합격정보와 기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41조 식품첨가제에도 레벨, 설명서 그리고 포장에 있어야 한다. 해당 제품의 설명서 혹은 라벨에는 본법 39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 제9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식품첨가제의 사용범위, 함량,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설명서 혹은 라벨의 “식품첨가제”란에 표기해야 한다.

제42조 식품과 식품첨가제의 라벨, 설명서, 포장에는 거짓된 내용과 과장된 내용이 없어야 하며, 질병예방, 치료, 진단 등의 기능이 있다는 정보 또한 없어야 한다. 그리고 식품생산자는 라벨, 설명서, 포장에 문제시 전적으로 법률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삽입한다. 식품과 식품첨가제의 라벨, 설명서는 자세하고 알아보기 쉬워야 한다.

제43조 식품생산자는 식품출하검역검사기록제도를 건립하여 출하된 식품에 대한 식품 검역검사합격증과 안전 상태에 대해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명칭, 규격, 수량, 생산날짜, 제품번호, 검역검사합격증번호, 도소매업자의 명칭과 연락처, 공급 날짜등 내용이 포함된다. 식품라벨, 설명서, 포장에 표기된 내용 중 어느 것 하나 식품안전표준에 맞지 않을 경우 출시를 불허한다.

제44조 식품경영자가 식품원료를 구입할 때 공급자가 식품안전관리감독 코드를 이용해 관리한다면 항상 식품안전관리감독 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공급자가 식품안전관리감독 코드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해 본다.

- 1) 공급자는 식품유통허가증, 영업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지.
- 2) 식품출하 할 때 검역검사보고서 혹은 기타 식품합격증명 서류를 가지고 있는지.

제45조 식품경영자(판매)는 식품원료 구매기록제도를 건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식품의 명칭, 규격, 수량, 생산날짜, 유통기한, 공급자 명칭과 연락처, 구매 날짜 등내용이 담겨야 한다.

식품원료 구매기록에 대한 조작 및 위조를 불허한다. 최소 보존기간은 2년이다.

제46조 식품경영자는 식품안전 요구사항에 맞게 식품을 저장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창고에 보존중인 식품을 점검하고, 제때 변질된 식품을 정리해야 한다.

제47조 식품경영자는 각각 포장된 식품을 보존할 때 창고 보존 위치에 식품의 명칭, 생산날짜, 유통기한, 공급자명칭 및 연락처 등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식품경영자는 각각 포장된 식품을 판매할 때 매 용기 혹은 포장마다 식품의 명칭, 생산날짜, 유통기한, 생산자명칭과 연락처 등의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제48조 식품경영자는 사전포장 식품을 판매할 때 식품라벨 혹은 설명서에 경고표시를 기재하여 소비자에게 주의사항을 전달한다.

식품경영자는 소비자에게 해당업체가 판매하는 식품은 식품안전요구사항에 부합한다는 것을 약속해야 한다. 또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짊어질 것을 약속한다.

제49조 집중거래시장의 점포임대장소, 전시판매회에서 식품경영활동에 조사하는 종사자는 본법 제28조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집중거래시장의 주최자, 점포임대자와 전시판매회 주최자는 식품경영자가 해당 시장에 진입할 때 식품유통, 요식서비스 허가증을 심사해야 한다. 또한 시장에 진입한 식품경영자에게 식품안전관리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전달한다. 정기적으로 진입한 식품경영자의 경영환경, 조건, 내부 식품관리제도 등이 법정요구와 맞는지 검사하고, 식품의 안전도도 검사한다. 만약 식품경영자가 불안전 식품을 판매 혹은 기타 본법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적발 할 경우 해당 소재지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 식품유통, 요식 서비스업 관리감독 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연대책임을 진다.

제50조 식품운송시 안전, 무독, 무해, 청결한 운송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식품안전에 필요한 적절온도 유지 등 특수요구사항도 만족해야 한다.

제51조 국가는 식품리콜제도를 건립한다. 식품생산자가 자사제품에 불안전 우려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생산을 멈추고 관련 사실을 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출시된 해당식품을 회수하며 리콜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관련제품 생산자도 해당 식품관련 제품 생산을 중단하고 소비자도 해당 식품의 구매를 중단해야 한다.

식품경영자는 판매하는 식품이 불안전 우려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판매를 정지하고 관련 생산업체에 해당식품관련 제품 생산을 중단, 소비자는 해당식품을 구매하지 말 것을 통보해야 한다. 또한 통지상황에 대해 기록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회수된 리콜식품에 대해 소각폐기 혹은 무공해 처리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여 리콜식품이 다시 시장에 흘러가는 것을 방지한다.

제52조 식품광고내용은 진실 되어야 하며 거짓, 과대포장, 질병예방, 치료, 진단효과 등내용을 담는 것을 금한다.

제53조 현급이상 지방정부는 조치를 취하여 길거리 식품잡화상들이 도매시장, 매점 등 고정 장소에 진입하여 영업 할 것을 격려해야 한다.

식품 잡화상의 관리대책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본법을 참고하여 정한다.

## 제6장 식품수출입

제54조 수입 식품, 식품첨가제 및 식품관련제품은 중국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중국 국내에 없는 새로운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 등을 최초로 중국에 반입한 경우, 혹은 식품안전국가표준에 없을 뿐더러 세계적으로 관련 표준이, 조약, 협정등 요구사항이 전무한 식품인 경우, 수입상은 국무원으로부터 식품안전위험평가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서 수입 신청함에 동시에 관련 안전성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으로부터 식품안전위험평가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본법3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수입식품은 출입국검역검사기구의 검역합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해관은 통관 신청자가 출입국검역검사기구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류를 구비할 경우 통관을 허용한다.

제55조 국외에서 식품불안전문제가 생길 경우, 중국에 영향을 줄 것이다. 심지어 수출입 식품에 심각한 식품안전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국무원 기타 유관기관 출입국 검역검사 담당기관은 제때에 위험정보를 발령하여 국무원 소속 식품생산, 유통, 요식서비스관리감독기관 및 식품안전위험평가 담당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한다. 통보를 받은 각 기관들은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

제56조 중국 국내로 식품수출을 원하는 수입업체 혹은 대리업체는 국무원 출입국검역 검사 담당기관에 관련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중국 국내로 식품수출을 원하는 외국 식품기업은 국무원 출입국검역검사 담당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국무원 출입국검역검사 담당기관은 해당기관에 기록을 제출한 수입업체, 대리상, 등록된 국외식품생산업체 명단리스트를 정기적으로 공포한다.

제57조 수입한 사전포장식품은 중문표기, 중문설명서가 구비되어야 한다. 레벨, 설명서에 개재되어 있는 내용은 본법 혹은 중국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식품안전국가표준의 요구사항에 저촉되어야 하며, 식품원산지 및 중국 국내 대리상의 명칭, 주소, 연락처는 정보를 개재해야 한다. 사전포장식품에 중문라벨, 중문설명서가 없거나 라벨 혹은 설명서가 요구사항에 맞지 않을 시 수입을 불허한다.

제58조 수입업체는 식품수입 및 판매 기록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해당 수입업체는 식품의 명칭, 규격, 수량, 생산날짜, 생산번호 수입 번호, 유통기한, 수출업체 명칭과 연락처, 구입자 명칭과 연락처, 판매날짜 등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식품수입 및 판매기록에 대한 수정과 위조를 불허하고 보존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다. 수입상품에 안전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 할 경우, 해당식품 수출업체 혹은 대 중국 수출업체는 본법 제51조에 규정한 대로 수입식품을 회수한다.

제59조 외국으로 수출되는 식품은 해당 수입국의 강제성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출입국검역검사기구에서 합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해관은 통관신청자가 출입국 검역검사기구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류를 구비할 경우 통관을 허용 한다.

수출식품생산기업과 수출식품원료 경작, 양식장 등 관련 정보를 출입국검역검사기구 담당기관에 기록을 제출하도록 한다.

제60조 국무원 출입국검역검사 담당 기관은 수출입식품안전정보를 수집하고 일괄 정리해야한다. 제때에 관련 기관, 기구, 기업에 관련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국무원 출입국검역검사 담당기관은 식품 수출입 관련 수입업체, 수출업체 및 수출기업에 관한 양호기록과 불량기록 업무를 신설하고, 공포한다. 만약 불량 기록이 있는 식품 수출입 관련 수입업체, 수출업체 및 수출기업에 대해 더욱 강화된 수출입검역검사를 실시한다.

제61조 중국과 식품 수출입국(지역)과 체결한 조약, 협정은 식품 관련 수출입검역검사에 반영이 된다.

### 제7장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조치

제62조 국무원이 각 기관 역량을 조직하여, 국가식품안전사고 대응 대책방안을 제정한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관련법률, 법규, 상급지방인민정부가 마련한 식품안전 사고 대응대책방안 및 본 지방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식품안전사고에 대응한다. 식품생산경영기업은 식품안전사고 조치방안을 제정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본 기업의 각종 식품안전방법조치 현황을 점검하여 상급인민정부에 기록을 넘긴다.

제63조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발생 업체 책임자는 식품안전사고 처리방안에 의거해 대응하여 사고의 확대를 방지한다. 식품사고 발생 기업체는 해당 소재지에 설치된 현급 식품안전사고 조사 및 처리 담당기관과 식품생산, 유통, 요식서비스관리감독 기관 및 질병예방통제기구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은폐, 허위 보고, 늦장 보고, 고의적인 현장파괴, 증거인멸을 해서는 안 된다.

제64조 현급이상 질병예방통제기구는 식품안전사고 발생 보고를 받고, 식품사고 현장에 가서 위생처리를 실시한다. 그리고 식품생산경영활동과 식품안전사고와 관련된 요소들에 유행병학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기생충, 전염성이 병원균에 의해 발생하는 식품안전사고는 유행병학 질병예방통제기구가 전염병방지법에 의거하여 보고를 올린다. 비전염성 식원성 질병에 의해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계속 원인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조사결과를 식품생산, 유통, 요식서비스 관리감독 기관에 통보한다. 식용농산품에 의해 발생한 식품안전사고는 농업 담당 기관에 통보한다.

식품생산, 유통, 요식서비스 관리감독 기관은 질병예방통제 기구의 조사보고서를 반영한다. 만약 질병예방통제기구가 통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면, 식품생산, 유통, 요식서비스 관리감독 기관에 통제조치를 요청하는 건의를 올릴 수 있다.

제65조 심각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시급이상 인민정부에 설치되어 있는 식품안전사고 조사 및 처리 기관은 관련 기관은 공동으로 협동조사를 진행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해당 인민정부는 본급인민정부에 사고책임조사처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본급인민정부의 비준 혹은 직접과견(통제)을 통해 독립적인 사고책임조사를 진행하고 사고책임조사처리보고를 보고 한다.

제66조 식품안전사고를 조사할 때 사고기업의 책임 외에 이 기업의 허가 자격 심사 담당 공무원과 관리감독 담당 공무원의 부적절함 또한 조사하여야 한다.

## 제8장 관리감독

제67조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행정기구에 식품생산, 유통, 요식서비스 관리감독 기관을 조직하여 본 행정구역의 일 년간 식품안전 현황을 조사하고 본 행정구역의 식품안전전년(全年)관리감독 계획을 제정한다.

현급이상 지방 식품 생산, 유통, 요식서비스관리감독기관은 본 행정구역에 배정되어 있는 식품안전연도관리감독 계획을 실행한다.

제68조 양호한 생산규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시스템 등 인증시스템을 도입한 식품생산경영기업은 인증기구로부터 법에 의거한 추적조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인증요구에 미달하는 기업은 법에 의거하여 인증을 박탈당한다. 그리고 관련 식품생산, 유통, 요식서비스관리감독 기관에게 통보한다.

제69조 식품안전 유통, 요식서비스관리감독 기관은 각자 부여받은 식품안전관리감독 직책을 이행한다. 그리고 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공무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식품생산경영 용지(장소)에 가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 2)식품생산경영 기업이 보유한 계약서, 영수증, 장부 및 기타 자료들을 검열, 복사, 폐쇄, 압수 할 수 있다.
- 3)폐쇄, 압수등 공무집행을 실시하기 전 해당 식품이 불안전함 위법생산에 사

용된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 및 위법생산에 사용된 오염된 생산도구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증명하여야 한다.

4) 식품생산활동에 사용된 장소는 폐쇄한다.

제70조 식품안전 유통, 요식서비스관리감독 기관은 식품검역검사를 필요로 샘플을 추출할 때 해당업체로부터 샘플을 구입하여야 한다. 어떠한 샘플 조사비용 및 기타 비용을 수금해서는 안 된다.

식품안전 유통, 요식서비스관리감독 기관이 샘플검역검사를 통해 합격증명을 부여한 식품에 대해서는 기타 식품안전 유통, 요식서비스관리감독 기관은 따로 샘플검역검사를 실시 할 수 없다.

식품안전 유통, 요식서비스관리감독 기관은 식품에 대한 샘플검역검사를 실시할 때 국무원 기타 유관기관 관련기관이 인정한 빠르고 안전한 검역검사방법을 도입할 수 있다.

제71조 식품안전 유통, 요식서비스관리감독 기관은 식품생산경영자에 대해 관리감독을 실시 할 때 감독검역검사 현황과 처리결과를 기록한다. 감독감찰기록은 감독검역검사요원과 식품경영자의 공동 싸인 후 기록으로 남는다.

제72조 식품안전 유통, 요식서비스관리감독 기관은 식품생산경영자의 정보를 수집하여 식품안전신용기록파일을 만든다. 이 기록파일에는 허가증발급, 일상감독검역검사결과, 위법행위검사 및 처벌 등 내용이 기록된다.

제73조 현급이상 식품안전 유통, 요식서비스관리감독 기관은 자문, 투서, 신고를 받는다. 기관 직책에 관한 것은 처리해야 한다. 제때에 심사, 처리, 답변을 주어야 한다. 기관 직책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서면으로 관련기관에게 처리할 것을 통지한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연기하여서는 안 된다.

제74조 현급이상 식품안전 유통, 요식서비스관리감독 기관은 식품안전관리감독업무를 실시한다. 법적인 권한과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순서에 의거하여 공포, 공평, 공정하게 직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였을 때 2번이상의 행정벌금형을 내려서는 안 된다. 혐의가 범죄 수준인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이를 위해 법에 의거하여公安기관에 이관한다.

제75조 국가는 식품안전정보일괄공포제도를 실시한다.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들은 국무

원으로부터 식품안전정보공포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공포한다.

1)식품안전정보정보

2)식품안전사고정보

3)기타 발생 가능한 소비자 기피식품에 대한 안전정보와 국무원이 일괄적으로 공포하는 기타정보

위에 명시한 각종 정보들은 특정구역이 발표할 수도 있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소속 관련기관에서 공포 할 수 있다. 식품생산, 유통, 요식서비스 관리감독서비스 기관은 각자 부여받은 직책에 의거하여 식품안전일상관리감독 정보를 공포 할 수 있다.

국무원으로부터 식품안전정보공포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소속 유관기관은 정보를 공포할 때 신속, 객관, 정확성을 원칙으로 공포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의 공황심리를 방지하기 위해 불안정한 식품의 위해성에 대해 자의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제76조 현급이상 농업분야와 식품생산, 유통, 요식서비스관리감독기관은 본법 제75조, 제1항에 규정되어있는 일괄적으로 공포해야 하는 정보를 공포할 때 먼저 상급 담당기관에 보고하고, 이어서 상급 담당기관이 국무원으로부터 식품안전정보공포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게 식품안전공포정보를 보고할 책임을 가진다. 필요하다면 국무원으로부터 식품안전정보공포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직접 보고를 올릴 수 있다.

현급이상 농업과 식품생산, 유통, 요식서비스관리감독기관은 서로 식품안전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77조 본법이 규정한 식품안전정보를 보고하고, 통보하는 책무를 수여받은 관련 기관은 규정된 시간 안에 보고를 올려야 하고, 완전한 식품안전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은폐, 허위 보고, 늦장 보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장 법률책임

제78조 본법의 규정을 어기고 식품생산, 유통, 요식서비스업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식품생산경영활동 혹은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 등 불법경영죄가 성립될 경우 형법 제2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현금이상 식품생산, 유통, 요식서비스 관리감독기관은 각자 직책에 의거하여 위법으로 얻은 소득을 압수하고 위법 생산된 식품, 생산경영 도구, 설비, 식품원료 등 물품을 압수한다. 물품가치가 1만 위안에 못 미치는 경우 10만 위안 벌금형에 처해진다.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생산된 식품총액의 10배 이상 20배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식품생산경영자들은 법에 의거하여 취득한 생산, 유통 혹은 요식서비스 허가증을 취득 후 본법이 규정한 생산경영활동에 요구조건에 못 미치는 조건하에 식품생산경영활동을 진행할 경우 불법경영죄 혹은 위생표준에 못 미치는 식품 생산, 판매 죄 혹은 유독, 유해 식품을 생산, 판매 죄 등 범죄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 형법225조, 제143항 혹은 제14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만약 범죄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현금이상 식품생산, 유통, 요식서비스 관리감독 기관에서 자체직책에 의거하여 위법으로 얻은 소득을 압수하고 위법 생산된 식품, 생산경영 도구, 설비, 식품원료 등 물품을 압수한다. 물품가치가 5,000 위안에 못 미치는 경우 5만 위안 벌금형에 처해진다. 5,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인 경우 최고 10만 위안 벌금형에 처해진다. 물품가치가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생산된 식품총액의 10배 이상 20배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 증서 발급기관은 해당업체에 대한 식품생산, 유통 혹은 요식서비스 허가증을 취소한다.

제79조 위생표준에 못 미치는 식품 생산, 판매 죄 혹은 유독, 유해 식품을 생산, 판매 죄를 구성하는 상황이라면 형법 제143조 혹은 형법 제144조에 규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현금이하 식품생산, 유통, 요식서비스 관리감독기관은 각자 직책에 의거하여 위법으로 얻은 소득을 압수하고 위법 생산된 식품, 생산경영 도구, 설비, 식품원료 등 물품을 압수한다. 물품가치가 1만 위안에 못 미치는 경우 10만 위안 벌금형에 처해진다.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생산된 식품총액의 10배 이상 20배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식품생산, 유통 혹은 요식서비스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업체의 해당 허가증을 취소한다.

아래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 1) 생산경영과정에 국가가 명백히 사용금지한 물질이 포함된 식품
- 2) 병사, 독사 혹은 사인이 불분명한 가축, 가금류, 수산동물의 육류 혹은 육류

가공 제품을 생산 혹은 판매하는 경우

- 3)비식품원료로 생산한 식품 혹은 비식용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식품 혹은 회수(리콜)식품을 원료로 한 식품 등을 생산 혹은 판매하는 경우
- 4)영양성분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은 유아용 주식, 보조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 5)생산 혹은 판매중인 식품이 부패변질된 경우, 곰팡이로 인한 변질한 경우, 벌레가 생긴 경우, 더러운 경우,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미관상으로 변질 된 경우.
- 6)치명적인 미생물, 농약 잔류물, 중금속, 오염물질 및 기타 인체건강에 위해가 되는 물질함량이 국가표준 제한함량 기준보다 초과하는 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 7)동물위생감독기구의 감독의 검역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역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육류 혹은 비인가 생산과정 혹은 결격 생산과정으로 생산된 육류 제품.
- 8)가짜 재료, 저질 재료 등이 섞여 있는 경우.

제80조 현금이상 식품생산, 유통, 요식서비스 관리감독 기관은 각자 직책에 의거하여 위법으로 얻은 소득을 압수하고 위법 생산된 식품, 생산경영 도구, 설비, 식품 원료등 물품을 압수한다. 위법으로 획득한 소득에 대해서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형을 내린다. 위법으로 획득한 소득이 없으면 5,000위안 이상 10만 위안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엄중한 식품사고 발생시, 식품생산, 유통 혹은 요식서비스허가증을 소유하는 기업은 영업정지, 정리 및 영업허가증 취소 처분을 내린다. 위생표준에 위배되는 식품을 생산, 판매 죄 혹은 유해, 유독식품 판매죄 등 죄목이 성립되는 경우 형법 제143조 혹은 제1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래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 1)식품포장자제, 용기, 운수도구 등 면에서 오염되어있는 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 2)식품라벨이 없는 사전포장식품을 생산, 판매한 경우 혹은 본법의 안전요구사항에 위배되는 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 3)검역검사를 받지 않은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혹은 식

품생산자가 본법에 위배되는 불 적합한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 품을 구매하는 경우. 혹은 식품생산자가 식품안전표준에 권장하는 식품첨가 제 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 4) 식품생산경영자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불안전 식품에 대한 리콜조치 등 관련 조치를 지키지 않는 경우.
- 5) 식품안전관리감시코드를 획득한 식품생산자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 6)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에 본법에 금지한 약품을 첨가하는 경우
- 7) 식품생산허가자가 본법 34조에 열거한 질병 보유자를 직접적인 식품생산라 인에 배치시키는 경우

제81조 현금 이상 식품생산, 유통, 요식서비스 관리감독 기관은 각자 직책에 의거하여 식품생산경영자기업에 시정명령, 경고를 내릴 수 있다. 만약 시정명령을 어긴 다면 2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을 내린다. 엄중한 경우 영업정지, 정리 및 해당 영업허가증 취소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아래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 1) 식품생산경영자가 본법에 규정한 검역검사기록제도(檢驗記錄制度)를 실시하 지 않은 경우
- 2)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첨가제를 사용할 때 법에 규정한 기록을 하지 않은 경우.
- 3) 식품생산경영자가 본법이 규정에 따라 식품 보전, 식품판매, 재고정리를 하 지 않는 경우
- 4) 식품생산경영자가 자제를 구매할 때 본법이 규정한 식품안전관리감독 코드 혹은 관련 증서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 5)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의 라벨, 설명서, 포장에 질병예방, 치료, 진단 등 기 능을 게재하는 경우.

제82조 식품생산경영자가 1년 내에 위법행위가 3번 이상 누적되었을 경우 해당 허가증 서 발급기관에서 해당 허가증을 취소한다.

제83조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발생 단체 책임자가 법에 의해 조치, 보고 하지 않았다면 현금이상 식품생산, 유통, 요식서비스 관리감독 기관은 각자 직 책에 의거하여 식품생산경영자기업에 시정명령, 경고를 내릴 수 있다. 만약 해

당기업이 본법의 규정을 어기는 사고현장 파괴, 증거인멸 등 행위를 했다면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을 내린다. 엄중한 경우 영업정지, 정리 및 해당 영업허가증 취소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84조 아래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본법 79조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

- 1) 중국식품안전표준에 부적합한 식품
- 2) 외국에서 중국국내에 없는 새로운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등을 최초로 중국에 반입한 경우, 혹은 식품안전국가표준에 없을 뿐더러 세계적으로 관련표준이, 조약, 협정등 요구사항이 전무한 식품을 수입할 때 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해당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3) 수출업체가 본법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규정과 불 적합한 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입업체가 본법을 지키지 않고, 불안정한 수입식품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본법 제80조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수입업체가 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식품수입 및 판매 기록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본법 81조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85조 식품생산경영자가 본법에 의거하여 불안정한 식품 회수의무를 지키고,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을 면한다.

제86조 법에 의해 식품생산, 유통 혹은 요식서비스업 허가가 취소된 식품생산경영자는 향후 5년 동안 식품생산경영업종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직원을 채용했을 경우 해당 허가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해당 업체의 허가 증명을 취소한다.

제87조 집중교역시장의 주최자, 점포임대자, 전시판매회 주최 측이 본법의 규정을 어기고 식품유통, 요식서비스 허가증이 없는 식품경영자들의 입장 및 판매행위를 허가한 경우, 이들의 심사, 보고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위에 서술한 경우 발생 시 현급이상 식품생산, 유통, 요식서비스 관리감독 기관은 각자 직책에 의거하여 1,000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을 내린다. 엄중한 경우 영업정지, 정리 및 해당 영업허가증 취소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88조 본법규정을 위반한 식품운송활동은 현급이상 식품생산, 유통, 요식서비스 관리감독 기관에서 각자 직책에 의거하여 식품생산경영자기업에 시정명령, 경고를 내릴 수 있다. 만약 시정명령을 어긴다면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을 내린다. 엄중한 경우 영업정지, 정리 및 해당 영업허가증 취소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89조 허가증명 발급 기관에 의해 허가 취소를 내리는 동시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영업면허증 혹은 해당식품생산을 불허한다. 제52조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는 광고법 규정에 의해 처벌한다.

제90조 식품생산경영자가 본법을 어기고 소비자의 인신,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배사책임을 져야 한다. 식품경영자가 가짜 재료를 진짜로 속인 불안전식품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소비자는 또 해당 제품 지불가격의 10배에 해당되는 배상금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

제91조 본법이 규정한 식품안전정보 공포규정을 위반하여 식품생산경영자,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허위사실유포로 식품생산경영자가 상업적인 신용, 식품명성 손해 등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에 한해 법에 의거하여 배상책임을 이행한다. 상업신용, 상품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 형법 제221조의 규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92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식품안전관리감독 업무 중 법 규정에 의해 직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 행정구역에서 1년간 몇 차례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적 영향이 있는 경우, 검찰기관 혹은 임면기관 등은 법에 의거하여 정부의 담당 책임자와 실무책임 담당자에게 불명예 기록, 강급, 파직의 처분을 내린다.

식품생산, 유통, 요식서비스관리감독기관 혹은 기타 관련행정기관은 본법이 규정한 직책을 이해하지 않거나 혹은 직권남용을 하여 심각한 후과를 초래한 경우, 검찰기관 혹은 임면기관 등은 법에 의거하여 정부의 주요 담당 책임자와 실무책임자, 기타 기관 실무책임자 파직, 퇴출 등의 처분을 내린다. 만약 주요 담당 책임자와 실무책임자, 기타 기관 실무책임자가 직권남용죄와 직권방임죄가 성립되는 경우 형법 제397조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93조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질병예방통제기구가 법에 의한 위생처리 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유행병학 조사와 통보조사결과를 내놓지 않는 경우, 기타기관의 통제조치건의를 받지 못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위생 담당기관에서 시정명령 및 비평통보, 경고 등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엄중한 경우 주요책임자와 실무책임자는 법에 의해 강등, 파직, 퇴출 등 처분을 받는다.

제94조 식품검역검사기구가 본법의 규정을 어기고 허위검역검사보고를 올린 경우 국무원으로부터 관리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 혹은 국무원 자격심사권한을 가지는 기타 유관기관은 해당 기구의 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식품검역검사인원이 본법 규정을 어기고 허위검역검사보고서를 올린 경우: 만약 허위 증명문서 조작죄가 성립된다면 형법 제229조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만약 죄가 성립되는 않는 경우 파직 혹은 퇴출 처분을 받는다. 형사 처분 혹은 퇴출처분을 받은 인원은 향후 10년간 식품검역검사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한다. 식품검역검사기구가 식품검역검사업무를 담당하면 안 되는 인원을 채용하면 해당기구는 국무원 인증인가관리감독 기관 혹은 유관기관으로부터 자격을 박탈당한다. 식품검역검사기구가 본법에 위반하는 허위검역검사보고서를 올려 당사자가 피해를 보면 법에 의해 배상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 제10장 부칙

제95조 본법에서 나오는 전문용어 정리.

식품: 식용 혹은 음용등 목적으로 가공 혹은 가공되지 않은 물질, 음료수, 껌, 이미 첨가된 물질, 식품에 남은 잔류물. 단 약품은 제외.

사전포장식품: prepackage foods, 사전에 포장되어 있는, 포장재료 혹은 용기에 담겨져 있는 바로 소비자가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식품을 뜻함.

불안전식품: 인체 건강에 해가되는 혹은 위해가 될 수 있는 식품을 뜻함.

식품첨가제: 식품의 품질, 색, 맛 그리고 방부패, 신선도 유지를 위하여 식품가공때 첨가하는 인공색소 혹은 천연물질.

식품포장에 쓰이는 재료 및 용기: 포장을 뜻한다. 식품 혹은 식품용기를 저장하는데 쓰이는 대나무, 나무, 금속, 도자기, 플라스틱, 고무, 천연섬유, 화학섬유, 유리등 재질로 만들어진 식품보관용 포장과 식품겉면에 뿌려진 식품첨가제 등이 포함된다.

식품생산경영 도구, 설비: 식품 혹은 식품첨가제 생산, 유통 및 사용과정중에 직접적으로 식품과 접촉이 있는 혹은 식품첨가제를 첨가하는 기계, 판도, 전송 레일, 용기 등을 뜻한다.

식품세척제, 소독제: 식품 및 식품생산경영도구, 설비, 식품포장재질, 용기등 물질의 세척 혹은 소독에 쓰이는 약물,

식품유통: 식품의 구매, 저장, 운송, 공급, 판매 등을 뜻함.

요식서비스: 주로 식당같이 소비자에게 식품을 실시간으로 가공, 생산하면서 노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지칭

길거리 식품 잡화상: 길가나 공공장소에서 정해진 장소 없이 식품을 판매하는 경영자.

양호한 생산규범: 식품의 양호한 안전과 품질을 위하여 제정하는 식품생산과정을 개선하는 조치, 방법, 기술 요구사항들.

식품위해요소관리기준(HACCP):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조리 및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위해물질이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들 위해요소 중에서 최종 제품에 결정적으로 위해를 줄 수 있는 공정, 지점에서 해당 위해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생관리 시스템.

유통기한: 최적 식용기간.

식품안전: 해당 식품이 무독, 무해, 기준영양성분기준에 부합함을 뜻함. 인체 건강에 아무런 급성, 만성, 잠재성 위험을 주지 않음을 뜻함.

식품안전사고: 식품중독, 식품에서 발병한 질병, 식품오염 등 식품에서 비롯된 인체건강에 위해 혹은 위해 할 가능성이 있는 사고

식품중독: 독성물질로 인해 오염된 식품을 식용했을 경우 혹은 유독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을 섭취하였을 때 나타나는 급성, 아급성 및 기타 식품발병원 질병을 뜻함.

제96조 식품생산경영자가 본법 시행 전에 이미 상응하는 허가증을 취득한 경우, 이 허가증은 유효기한까지 유효하다. 단 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연장 수속을 받아야 하는 경우 유관 식품안전관리감독부문은 본 법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97조 생돈 도축방법, 주류, 식염 및 이슬람 음식의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전통기법으로 생산한 식품의 관리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상무위원회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98조 본법은 모년 모월 모일부터 시행된다. 동시에 1995년 10월 30일 공포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식품위생법》은 폐지된다.

## 2. 《중국의 식품 품질안전 현황》 전문

- ☞ 1990년대 말 주요 농산물의 단기 공급부족 문제가 해소된 상황에서 중국의 농업생산정책은 양과 질을 동시에 추구하고,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제고를 주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특히 2001년 WTO 가입 이후 농산물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각국의 농산물 품질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해 기술장벽(녹색장벽)에 부딪히자 품질 향상 및 안전성 제고에 더욱더 주력하고 있음.
- ☞ 중국 국무원은 2007년 8월 17일 중국의 식품생산과 품질 현황, 식품 관리감독체제, 수출입 식품의 관리감독 현황, 식품안전과 관련된 법률 및 행정법규, 식품안전을 위한 기술보장체제, 식품안전과 관련한 국제교류와 협력 현황 등 중국 식품의 품질 및 안전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中國的食品質量安全狀況(白皮書)》를 발표하였음.

### 2.1. 식품 생산 및 품질 개황

#### 가. 가공식품의 품질 및 안전수준 제고

##### □ 식품가공업의 발전 현황

- 중국에서 식품은 원료와 가공기술의 차이에 따라 28종류 525개 품목으로 구분됨.
  - 식품 28종류: 식량가공품, 식용유·유지 및 유지제품, 조미료, 육제품, 유제품, 음료, 편의식품, 과자, 통조림, 냉동음료, 급속냉동식품, 서류 및 튀김식품, 사탕제품(초콜렛제품 포함), 차, 주류, 채소제품, 과일제품, 볶음식품 및 견과제품, 알 제품, 코코아 및 커피제품, 식용설탕, 수산제품, 녹말 및 녹말제품, 케이크, 콩제품, 꿀제품, 특수 선식식품, 기타 식품
- 식품가공 기업은 전국적으로 44.8만 개가 있으며, 이 중 일정규모 이상 기업이 2.6만 개로 전체의 5.8%를 차지하지만 시장점유율은 72%로 생산량과 판매액에서 주

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

- 일정 규모 이하 10인 이상 기업은 6.9만 개로 전체의 15.4%를 차지하며 18.7%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10인 이하 소규모 기업은 35.3만 개로 전체의 78.8%를 차지하며 9.3%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음.
- 2006년 현재 전체 식품가공 기업의 5.8%를 차지하는 규모 이상 기업의 총생산액은 2005년 대비 23.5% 성장한 21,587억 위안으로 공업총생산액의 6.8%를 차지하였음. 이 중 식량가공, 식용유·유지 및 유지제품, 육류가공, 유제품 가공산업의 부가가치와 이윤 증가율은 모두 20%를 초과하였음.
- 2006년도 주요 가공식품 생산량은 밀가루 5,193만 톤, 식용 식물유 1,985.5만 톤, 신선 냉동냉장육 1,112.5만 톤, 유제품 1,459.6만 톤, 차음료 4,219.8만 톤으로 전년 대비 각각 28.2%, 17.5%, 24.0%, 23.5%, 21.5% 증가했음.
- 2007년 1~6월 식품가공업의 총생산액은 12,816.2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9.9% 증가하였음.

#### □ 식품의 품질 향상

- 식품 표본조사 합격률이 2006년 77.9%, 2007년 상반기 85.1%로 식품의 품질안전 수준이 향상되고 있음. 2007년 상반기 전국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의 식품안전 조사에서 평균 89.2%의 합격률을 보였으며, 이 중 14개 성은 90% 이상의 합격률을 나타냈음.
- 중국의 10대 소비 식품인 식용유, 유지방제품, 주류, 수산식품, 식량가공식품, 음료, 유제품, 유제품, 조미료, 전분제품, 설탕 가운데 수산식품(85%)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90% 이상의 합격률을 보임.
- 식품산업의 발전과 함께 기업규모가 확대되고 생산의 집중도도 증가하여 중대형 기업의 우수한 품질의 식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2006년도 100대 식품기업의 매출액이 전국 식품기업 전체 매출액의 24.9%를 차지하였음.
- 이 가운데 10대 유제품, 음료, 제당 기업이 각 산업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4.7%, 39.5%, 43.6% 였음.

- 이 밖에도 포도주 생산량 10대 기업이 전국 생산량의 62.1%를 차지하고 있으며, 3대 라면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76.0%에 달함.

## 나. 농산물의 품질 안정성 제고

-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의 수출이 전체 농산물 수출의 90%를 차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녹색식품 수출은 연평균 40%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미 40여 개 국가에서 인정을 받고 있음.
  - 현재 전국 무공해농산물 인증 상품은 28,600개이며, 무공해농산물 인증 생산기지는 24,600개로 전체 면적은 2,107만 ha임.
  - 5,315개의 기업이 녹색식품 표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인증 상품 수는 14,339개로 7,200만 톤에 이르며, 인증 면적은 1,000만 ha에 달함.
  - 600여 개 기업이 유기식품 인증을 받아 유기식품 표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인증 상품 수는 2,647개로 1,956만 톤에 이르며, 인증 면적은 311만 ha임.
  - 전국적으로 국가급 농업표준화 시범지구와 시범 현(縣)이 각각 539개, 100개가 있으며, 성급 농업표준화 시범지구는 약 3,500개에 면적은 약 3,333만 ha에 이룸.
- 2007년 상반기 검사 결과에 의하면 채소류의 농약잔류검사 평균 합격률은 93.6%이며, 축산물의 클렌부테롤 하이드로클라이드(Clenbuterol hydrochloride) 검사의 평균 합격률은 98.8%, 유황류약품 잔류검사 평균 합격률은 99.0%임.
  - 수산물 중 클로로마이세틴 오염 검사의 평균 합격률은 99.6%, 니트로푸란류 대사물 오염 검사의 평균 합격률은 91.4%, 산지약물 잔류 표본조사 합격률은 95% 이상임.

## 다. 수출입 식품의 품질 수준

- 2006년 중국의 식품 수출은 266.6억 달러로(2,417.3만 톤) 전년 대비 13.3%

- (16.0%) 증가했음. 주요 수출 식품은 수산물, 수산제품, 채소, 통조림, 과일즙 및 음료, 식량제품, 조미료, 가금육제품, 주류, 축산물 등임.
- 중국의 주요 식품 수출 대상국 및 지역은 일본, 미국, 한국, 홍콩, 러시아, 독일,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영국 순임.
- 최근 수년 동안 중국 수출 식품의 합격률은 계속해서 99%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 2006년과 2007년 상반기 대 미국 수출 9.4만 건, 6.5만 건 중 불합격 처리된 것은 각각 752건과 477건으로 합격률은 각각 99.2%와 99.1%에 달했음.
  - 동 기간 대 EU 수출 9.1만 건과 6.2만 건 중 불합격 처리된 식품은 91건과 135건으로 각각 99.9%와 99.8%의 합격률을 나타냈음.
  - 일본은 중국의 최대 수출입 대상국으로서 2007년 7월 20일 일본 후생노동성이 공표한 '2006년도 일본 수입식품 감독 통계' 보고에 의하면 일본의 중국산 수입식품 표본조사 비율은 15%에 달했지만 합격률이 99.4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EU(99.38%), 미국(98.69%) 순이었음.
  - 홍콩의 소비식품은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2007년 홍콩 식물환경위생서(食物環境衛生署)의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표본조사 결과 합격률이 99.2%와 99.6%를 나타냈음.
- 2006년 중국의 식품 수입은 133.96억 달러로(2027.3만 톤) 전년 대비 25.1% (7.9%) 증가했음. 주요 수입 식품은 식물유, 수산물, 곡물, 식용 설탕, 유제품, 주류, 연초 및 연초제품, 가금육 등임.
- 중국은 세계 143개 국가로부터 식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국은 말레이시아, 러시아, 미국,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태국,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프랑스 순임.
- 최근 수년 동안 수입식품의 품질은 전체적으로 양호하며 2004~2006년과 2007년 상반기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검역 합격률은 각각 99.3%, 99.5%, 99.1%, 99.3%로 매우 높았음.

## 2.2. 식품 관리·감독시스템과 업무

-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국정부는 식품안전 예방 위주의 원천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관리·감독 이념을 토대로 “전국의 통일적 지도, 지방정부의 책임, 유관부문의 협조, 각계 각층의 연합행동”이라는 감독·관리 업무체계를 수립하였음.
- 2004년 국무원은 《식품안전 관리·감독을 한 단계 더 강화시키는 것에 관한 결정》(國務院關於進一步加強食品安全監管工作的決定)을 발표하였음. 이 ‘결정’은 식품안전의 관리·감독을 분업의 원칙에 따른 단계별 관리·감독을 위주로 하고, 보조적으로 품종별 관리·감독 방식을 활용하도록 하고 유관 식품안전 관리·감독 부문의 직능과 책임을 명확히 하였음.
  - ‘결정’은 식품안전 관리·감독을 4개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농업부, 국가품질검사검역총국, 공상총국, 위생부 등 4개 부처가 이를 담당하도록 했음.
  - 이 중 원료 농산물 생산 단계의 관리·감독은 농업부에서 책임지고, 식품 생산 및 가공단계의 품질 관리·감독 및 일상적인 위생 관리·감독은 국가품질검사검역총국이 책임지도록 했음.
  - 또한 식품 유통단계의 관리·감독은 공상총국에서 책임지고, 요식업과 식당 등 식품 소비단계의 관리·감독은 위생부에서 책임지도록 했음.
  - 한편 식품안전의 종합적인 관리·감독, 협조 및 법에 의거한 각종 사건의 조사와 처리는 식품약품감독관리국, 수출입 농산물 및 식품의 관리·감독은 국가품질검사검역총국이 담당하도록 했음.

### 가. 농산물 품질안전 업무 강화

- 중국은 2001년 부터 채소의 맹독성 잔류 농약과 축산물의 클렌부테롤(Clenbuterol) 오염 방지에 중점을 둔 “무공해식품 행동계획”을 실시하여 맹독성 농약 및 동물약품의 위법적 사용과 잔류 표시 문제 해결에 착수하였음.
  - ‘계획’은 농업투입재의 투입, 농산물 생산, 시장진입의 3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각 지역의 품질안전에 대한 의식 제고를 도모하고 관리 책임

을 지도록 하였음. 또한 표준화된 생산을 기본으로 하여 농산물의 품질 안전과 관리 수준을 제고하도록 하였음.

- 중국은 농산물 품질안전 보장체계가 점차 완비되어 가고 있으며, 관리·감독 능력도 점차 강화되고 있고 농업표준화 수준도 크게 제고되었음. 또한 농산물의 품질 안전 확보를 목표로 서비스, 관리, 감독, 처벌, 응급조치의 다섯 가지 항목을 일체화시킨 업무체계를 점차 형성하였음.

## 나. 식품 품질안전 시장진입제도의 구축 및 실시

- 중국 정부는 2001년 식품 품질안전 시장진입제도를 실시하였음. 이 제도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 생산허가제도: 식품 생산 및 가공기업이 원료농산물의 점검, 생산설비, 상품표준, 검사 설비 및 능력, 환경조건, 품질관리, 보관 및 운수, 포장표식, 생산인원 등 식품 품질안전을 위한 필요조건을 구비하여 식품생산 허가증을 취득한 후 식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
  - 강제검사제도: 식품 생산 및 가공기업이 식품 필수검사에 합격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인 의무
  - 시장진입 지표제도: 식품 생산 및 가공기업이 검사에 합격한 식품에 QS(식품안전) 표지를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식품 품질안전 보장
- 2007년 상반기까지 식품 생산 및 가공기업에게 총 10.7만 건의 식품생산 허가증을 발급했으며, 허가증을 획득한 기업 식품의 시장 점유율은 90% 이상을 차지했음.
  - 이와 동시에 식품생산 허가증을 획득한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2007년 6월말까지 기준에 미달하는 1,276건의 식품생산 허가증을 회수하거나 취소하였음.
- 국가품질검사검역총국은 식품생산 허가증을 발급받은 상품의 생산 및 가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하고, 분기별로 증서를 획득하지 못했거나 QS 표시를 획득하지 못한 식품을 공고하여 시장에서 판매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이들 상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음.

## 다. 식품 품질안전을 위한 수출조사 강화

- 1985년 이래 중국 정부는 식품에 대해 주로 수출조사 위주의 감독 및 검사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최근 들어 유제품, 육제품, 차, 음료, 식용유 등 일상 소비품의 수출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식품생산이 집중된 지역의 대규모 기업, 소규모 식품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수출하고 있음.
  - 수출조사는 식품의 미생물, 첨가제, 중금속 등의 위생지표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으며 품질이 일정치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조사의 빈도수를 늘리고 수출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2006년에서 2007년 상반기까지 총 7,880개 기업, 11,104개 종류의 식품에 대해서 수출조사를 실시하였음.
  - 수출조사에서 품질문제가 발견된 355개 기업의 355종 상품을 공개하였으며, “중국 우수 상표”를 획득한 240개의 기업과 548개 기업의 “국가 검사 면제”의 칭호를 획득한 상품은 소비자의 호평을 받았음.
  - 불합격 상품을 생산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을 독촉하고 재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한 경우 상품생산을 중지시키고 재정비를 명령하였음. 또한 정비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검사를 실시하여 여전히 불합격한 경우 영업 허가증을 회수하였음.
  - 처벌제도를 엄격히 실행하여 식품 중 가짜 원료를 섞거나 위조하여 생산한 식품에 대해서는 생산정지를 명령하였으며 법을 위반하여 생산한 식품은 몰수하고 사법기관에 신고하여 법률적 책임을 지도록 하였음.

## 라. 소규모 식품업체 정비규정 강화

- 현재 10인 이하의 소규모 식품업체는 관리감독의 주요 대상으로서 “관리·감독, 규범, 인도, 대민봉사”의 업무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
  - 이는 한편으로는 소규모 식품업체로 하여금 최대한 빨리 시장진입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관리·감독 조치를 강화하여 식품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 최근 중국은 소규모 식품업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4가지 방면의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 생산조건의 개선을 촉구하고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생산금지
  - 소규모 식품업체가 생산 및 가공한 식품은 향진 행정구역 이내로 판매범위를 제한하여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진입 불허
  - 소규모 식품업체에서 생산 및 가공한 식품은 시장진입 자격을 획득하기 전에는 상응하는 포장 사용 금지
  - 소규모 식품업체로 하여금 비식품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첨가제를 남용하지 않으며, 회수한 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상품을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등에 판매하지 않고 허가한 지역에서만 판매한다는 대 사회 공개선언 강제
- 2006년 소규모 식품업체의 평균 추출조사 합격률은 70.4%에 이르렀으며, 2007년 6월말까지 5,631개 기업을 단속하였고, 8,814개의 기업에 생산정지를 명령했으며, 5,385개 기업은 개선 명령을 통해 시장진입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였음.

#### 마. 식품안전지역 관리·감독 책임제 실시

- “삼원사정, 삼진사도, 양서일보고(三員四定, 三進四圖, 兩書一報告)”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안전지역 관리·감독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음.
  - “삼원사정(三員四定)”은 식품안전 관리·감독원이 향진 행정구역 중 특정 지역과 기업을 담당하여 관리·감독 업무를 책임지는 것임. 향진 정부의 협조관리원은 식품 품질안전 관리·감독 업무에 적극 협조하고, 사회정보 수집원은 식품 품질안전 위법 사례를 수집 제공해야 함.
  - “삼진사도(三進四圖)”는 지역(촌), 업체, 기업의 실정을 직접 조사하고, 식품 생산 및 가공기업 관련 파일을 작성하는 한편 기업변화 동태도, 식품 생산업체 분포도, 관리·감독책임 수행도, 식품안전 경고도를 작성하는 것임.
  - “양서일보고(兩書一報告)”는 정부와 기업은 각각 책임증서와 승낙증서에 서명하고 식품 품질검사검역 당국은 정기적으로 식품안전보고서를 발행하는 것임.

- 2007년 6월 말까지, 전국 31개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모두 16,030개의 식품안전 관리·감독 책임지역, 25,346명의 식품안전 전문 감독원을 확정했으며, 72,474명의 협조관리원과 106,573명의 사회정보 수집원을 임명하였음. 2006년 각급 품질검사 검역 당국은 식품 생산 및 가공기업에 대하여 총 90만 번의 시찰을 실시하였음.

## 바. 식품 유통영역에 대한 감독·관리 확대

- 중국은 “녹색소비, 녹색시장, 녹색통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삼록공정(三綠工程)”의 실시, 현대적인 유통조직과 경영방식 제창, 체인경영과 물류 배송을 발전시켜왔음.
  - 또한 위탁판매기업이 물품을 입하하여 조사, 검수하고 품질 증명서를 발급하는 제도, 시장개설자가 품질을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하였음.
  - 시장 순찰제도를 실시하고 식품 품질 모니터링 제도를 완비하는 한편 불합격 식품의 시장 퇴출, 소환, 폐기, 공고 제도를 엄격히 실시하였음. 또한 축산 및 가공 도축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음.
  - 지역시장 진출입 장벽을 철폐하여 품질이 우수하고, 신뢰수준이 높으며 상품지명도가 높은 식품이 전국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식품안전 표시와 포장관리를 강화하여 식품의 거짓포장, 거짓표시, 거짓상표를 집중 단속하였음.

## 사. 소비단계의 식품안전 관리·감독 강화

- 중국 정부의 요식업 위생 관리·감독관련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음식 위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요식업과 단체 식사 배송업체 위생 규범(餐飲業集體用餐配送單位衛生規範)’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음.
  - 둘째, 요식업과 식당 전체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감독의 계량화 및 등급 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식품 오염물질 및 식원성 질병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셋째, 식품 품질안전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였으며, 중요 사건

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사회에 공개하도록 하였음.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 위생부문은 2006년에 204만여 개의 각종 요식업체 및 학교 식당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적인 식품 생산 및 경영 4.5만 건을 비롯해 위생허가증을 구비하지 않은 업소 2.5만여 개를 적발하였음.

- 넷째, 학교 위생업무를 강화하여 전국적으로 학교 식품 위생, 음료수 위생, 전염병 예방 검사업무를 전개하고 식중독과 장염을 예방하였음.
- 다섯째, 식품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식품안전과 관련된 경보와 평가소식을 발표하였음.

#### 아. 식품 품질안전 사업 정비

- 일부 지역의 식품 위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식품 품질안전지역 정비를 실시하였음.
  - “백천만공정(百千萬工程)”을 실시하여 중점 지역, 중점 가공장소, 중점 가공업체 및 가공 식품을 확정하고 식품안전 관리·감독 네트워크 구축, 표준 및 검사측정 등 기술수준 강화, 대 기업 기술서비스 강화, 식품산업협회 조직, 위조식품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통해 일부 지역의 가짜 식품제조 문제를 해결하였음.
  - 또한 공상 당국, 품질검사검역 당국은 식품 품질안전을 위해 가짜 식품 제조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비식품 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 및 가공하거나 식품첨가제를 남용하는 위법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가짜 식품 제조지를 소탕하였음.
- 2006년 품질검사검역 당국은 4.9만 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처리했는데 가짜 식품의 액수가 4.5억 위안에 달했음.
  - 공상 당국은 연인원 560만 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중점 식품시장 1.6만 개와 식품 경영업체 1,040만 개를 조사하여, 무허가 업체 15.2만 개를 단속하고 4,629개 업체의 영업허가증을 말소하였음.
  - 또한 가짜 식품 6.8만 건을 적발하여 그 중 48건은 사법기관에 고소했으며 1.55만 톤의 불합격 식품은 시장에서 퇴출시켰음.

## 자. 위험경보 및 응급조치 시스템 구축 강화

- 전국적으로 식품안전 위험 조기 경보 및 반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식품 생산 및 가공, 유통, 소비단계의 위험 통제를 실시하고 식품안전 관련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조기발견, 조기경보, 조기제어 및 처리를 실현하였음.
- 또한 효율적인 조기반응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험정보의 수집, 분석, 경보 및 응급 조치를 포함하여 즉각적인 보고, 신속한 개입, 과학적 판단, 합당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차. 식품 리콜제도의 수립

- 이 제도는 식품 리콜을 식품 생산자가 자신이 생산한 식품이 리콜대상에 해당하는 불완전 식품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스스로 리콜을 실시하는 주동적 리콜과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과 지방정부의 품질검사 기관의 명령에 의해 리콜을 실시하는 책임 리콜로 구분됨.
- 최근 들어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바이러스, 화학 오염물질, 비식품원료 사용 등 안전을 위해하는 식품에 대한 리콜제도를 강화하고 있음.
-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 경우에는 식품 생산기업의 식품생산 허가증을 말소하여 불안정한 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음.

## 2.3. 수출입 식품의 관리·감독

### 가. 수입 식품의 관리·감독

- 위험관리 제도
- WTO/SPS 협정 및 국제 관행에 따라 중국 정부는 육류, 채소 등 고위험 수입식품

에 대해 위험관리에 기반한 검사검역 진입제도를 실행하고 있으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수출국이 중국 시장에 수출하려는 고위험 식품에 대해 위험분석을 실시하고, 위험정도가 수용가능한 식품에 대해 수출국 주관부문과 검사검역협정서를 체결해야 함.
- 국외 생산기업에 대해 위생등록을 실시하고 동식물식품에 대해서는 입국 검역비준을 실시해야 함. 만약 수출국에서 동식물 전염병이나 심각한 식품안전 위생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관련 식품의 수입 잠정 금지 등 상응하는 위험관리 조치를 실시해야 함.

○ 검사검역제도

- 수입식품은 중국의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법에 의거하여 검사검역을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경우에만 수입이 허락됨.
- 수입식품의 입국지역 세관은 검사검역기구가 발행한 입국화물 통관서에 의거하여 수입식품을 검사한 후 통과 수속을 처리해야 하며, 통과된 직후에는 중국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음.
-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검역시 품질안전과 위생 문제가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문제가 있는 식품에 대해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실시해야 함.
- 2006년 중국 출입국 검사검역기구는 수입식품 가운데 총 2,458개 품목을 불합격 처리하였으며, 2007년 상반기에는 총 896개 품목을 적발하여 모두 반품, 소각 처리함으로써 중국시장에 진입하는 수입식품의 품질안전을 보장하였음.

○ 품질안전 감독 및 통제 제도

-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검역을 실시하여 고위험 식품이나 검사검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 감독함.
- 치명적인 문제가 발견되거나 여러 번에 걸쳐 같은 문제가 발견된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즉시 위험경고조치를 내리고 검사항목 확대, 수입 잠정 중지 등 엄격한 조치를 실시해야 함.

- 식품의 불법 수입 통제
  -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과 세관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식품의 불법 수입을 통제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2006년 유럽연합위원회와 ‘불법 식품 수출행위 처벌에 관한 협력(中歐聯合打擊非法進出口食品行為合作安排)’를 체결하고 쌍방이 정보교환, 기술협력, 전문가 상호 방문, 연합 행동조치 등의 실행을 명확히 하였음. 또한 사기행위, 밀수, 밀매, 암거래 등 불법적인 식품 수출입 행위를 공동 통제하기로 하였음.
  - 2006년에서 2007년 상반기까지 불법으로 수입된 육류 12,292톤을 압수하였음.

#### 나. 수출 식품의 관리·감독

- 중국 정부는 “예방위주, 생산지 관리·감독, 전 과정 통제” 원칙에 의거하여 “하나의 모델, 열개의 제도(日個模式, 十項制度)”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출 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하였음.
- 하나의 모델이란 수출 식품의 “회사+생산지+표준화” 생산관리 모델을 의미함. 이 모델은 중국의 현실과 수출 여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수출 식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수출기업의 규모화, 집약화, 국제화를 위해 필요한 모델임.
  - 수 년 동안의 노력을 통해서 중국의 주요 수출 식품, 특히 육류, 수산물, 채소 등 고위험 식품의 수출은 기본적으로 “회사+생산지+표준화” 체계를 실현하였음.
- 열개의 제도란 생산지 관리·감독과 관련한 제도 3개, 공장 관리·감독과 관련한 제도 3개, 상품 관리·감독과 관련한 제도 3개, 신용과 관련된 제도 1개로 구성되어 있음.
  - 생산지 관리·감독: 재배 및 양식기지에 대한 검사검역기록 관리제도, 전염병 모니터링제도, 잔류 농약 및 동물약품 감독 및 통제제도
  - 공장 관리·감독: 위생등록 제도, 기업분류 관리제도, 고위험 식품 수출기업 내 검사검역관 상주 제도
  - 상품 관리·감독: 수출 식품에 대한 법정 검사검역제도, 품질 추적 및 불합격 식품 리콜제도, 위험 예고 및 응급 조치제도

- 신용과 관련된 제도: 수출 식품기업에 대한 홍흑방(紅黑榜)제도

○ 재배 및 양식기지에 대한 관리 강화

- 동식물 유행성 전염병 발생 위험과 농약 및 동물약품의 잔류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생산지에서부터 식품의 품질안전과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출입국 검사검역기구는 전염병 발생위험과 농약 및 동물약품 잔류 위험이 존재하는 수출 식품의 원료 생산기지에 대해 검사검역 기록 관리를 실시해야 함.
- 허가를 획득한 재배지역 또는 양식장에서 생산된 원료만이 수출식품 가공에 사용될 수 있으며, 허가를 획득한 모든 원료 생산기지는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하였음. 현재까지 허가를 획득한 양식장은 6,031개이며, 재배지역은 38만 ha임.
- 허가를 획득한 원료 생산기지에 대해서는 전염병에 대한 모니터링과 통제, 투입재 관리를 강화하고, 엄격한 농약 및 동물약품 잔류 통제제도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통제를 실시하였음.
-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허가를 획득한 수출 식품 원료 생산기지에서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음.

○ 수출 식품 생산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중국은 모든 수출 식품 생산기업에 대하여 위생등록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등록된 기업만이 수출 식품의 생산 및 가공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음. 현재까지 등록된 기업은 총 12,714개이며, 이 중 3,698개 기업의 HACCP체계가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의 검증을 통과하였음.
- 등록된 생산 및 가공기업에 대하여 각지의 출입국 검사검역기구는 일상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허가를 획득한 원료 생산기지에서 원료가 공급되고 있는지, 생산 및 가공공정은 요구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함.
- 출입국 검사검역기구는 육류 등 고위험 식품을 대량 수출하는 기업에 검사검역관을 파견하여 공장 내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출 식품의 포장요건을 준수하도록 한편 이력추적이 가능한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상품의 이력추적과 문제가 있는 상품의 리콜을 보장하고 있음.

○ 식품 수출 전 검사검역 강화

- 중국 법률 및 법규는 검사검역기구로부터 합격을 받은 상품만이 수출되도록 하고 있으며, 출국지 세관은 검사검역기구가 발급한 출국화물 통관서에 근거하여 수출 식품의 통관수속을 실시하고 있음.
- 검사검역을 통과한 수출 식품에 대해서 만약 수입국이 요구하는 경우 출입국 검사검역기구는 위생증서를 발급하여 그 식품이 이미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의 검역을 통과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아울러 해당 식품 생산기업의 명칭, 주소, 위생등록번호, 생산날짜, 수출일, 항구 도착날짜 등 이력추적 정보도 상세히 밝혀주도록 했음.
- 수출 식품이 항구에 도착한 후 해당지역 검사검역기구는 해당 식품에 대해 검사검역을 실시하여 상품이 온전한지, 상품 증명서 기록내용과 부합하는지 등을 검사하고 상품의 이력추적을 보증해주어야 함.

○ 수출기업 신용체계 건설 강화

- 수출 식품 생산 및 가공기업의 품질 보증 및 홍흑방(紅黑榜)제도를 실시하고, 상품 품질에 대한 기업의 책임의식을 강화하여 기업 스스로의 관리, 제약, 신용경영 시스템 형성을 촉진함.
- 건전하고 효율적인 자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용도가 높으며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수입국에서 명성을 얻은 기업은 “우수기업명단”에 포함하여 각종 우대 및 지원정책을 실시함.
- 수입국으로부터 심각한 품질상의 문제나 검사검역 회피로 통보받거나 검사검역 기구를 속이는 행위를 하는 수출 기업은 법에 의거하여 처벌하는 동시에 이들 기업 명단을 “위법기업명단”에 올려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여 수출기업이 자율의식을 배양하도록 함. 현재까지 총 55개 기업이 “위법기업명단”에 포함되어 있음.

## 2.4. 식품안전 관련 법률·법규와 기술보장체계

### 가. 식품안전 법률법규체계의 완비

- 식품안전 관련 법률에는 『상품 품질법』, 『표준화법』, 『계량법』, 『소비자권의 보호법』, 『농산물 품질안전법』, 『형법』, 『식품위생법』, 『수출입상품검사법』,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 『국경위생검역법』, 『동물방역법』 등이 있음.
- 식품안전 관련 행정법규에는 ‘식품 등 상품안전 감독관리 강화에 대한 특별규정’, ‘공업상품 생산허가증 관리조례’, ‘인증인가조례’, ‘수출입상품 검사법 실시조례’, ‘수출입 동식물검역법 실시조례’, ‘동물의약품 관리조례’, ‘농약 관리조례’, ‘수출화물 원산지조례’, ‘표준화법 실시조례’, ‘무면허경영 조사처리단속법’, ‘사료와 사료첨가제 관리 조례’, ‘농업유전자변형 생물 안전관리 조례’, ‘위험에 처한 야생 동식물 수출입관리 조례’ 등이 있음.
- 식품안전 관련 규칙으로는 ‘식품 생산가공기업 품질안전 감독관리 실시 세칙(시행)’, ‘공업품 생산허가 관리조례 실시조치’, ‘식품위생허가증관리조치’, ‘식품첨가제 위생관리 조치’, ‘수출입 육류산물 검사검역관리 조치’, ‘수출입 수산물 검사검역 관리조치’, ‘유통영역 식품안전 관리조치’, ‘농산물 산지안전 관리조치’, ‘농산물 포장과 표시 관리조치’, ‘수출식품 생산기업 위생등록등기 관리규정’ 등이 있음.

### 나. 식품 품질안전 표준체계 구축

-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중국의 식품표준화 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국무원의 유관 행정부문이 이를 분담하고 있음
  - 식품안전 표준은 농산물의 산지환경, 관개 수질, 농업 투입재의 합리적 사용 준칙, 동식물검역규정, 농업 조작규범, 식품 중 농약, 동물약품, 오염물질, 유해미생물 등의 제한량 표준, 식품첨가제 및 그 사용표준, 식품포장재료 위생표준, 특수 음식 및 식품 표준, 식품 라벨 및 표시 표준, 식품안전 생산과정 관리 및 통제 표준, 식품 모니터링방법 표준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품목별로는 식량, 유지작물, 과일채소 및 그 제품, 유제품, 육류제품, 수산물, 음료·술, 조미품, 유아식품 등 식용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포함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중국의 식품 품질안전 표준체계는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최종 소비의 각 단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 현재 중국은 식품 품질안전과 관련하여 모두 1,800여 개 항목의 국가표준과 2,900여 개 항목의 식품산업 표준을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강제적인 국가표준은 634개 항목임.
- 식품 품질안전 표준 간에 존재하는 중복, 우선순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총 1,800여 항목의 국가표준, 2,500여 항목의 업무표준, 7,000여 항목의 지방표준 및 14만여 항목의 기업표준을 정리하고 530여 항목의 국가표준과 업무표준을 폐지하였음.
- 이와 함께 표준 개정작업을 진행하여 2,460여 항목의 국가 및 산업표준을 개정하고 200여 항목의 국가표준을 새로 제정하였으며 280여 항목의 국가표준 제정계획을 하달하였음.

#### 다. 식품 인증인가체계 수립

-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전국의 인증인가 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음.
- 인증은 사료상품인증, 우수농업규범(GAP)인증, 무공해농산물인증, 유기농산물인증, 식품품질인증, HACCP 관리시스템인증, 녹색시장인증 등으로 분류됨.
- 현재 중국 유기농산물 인증면적은 203만 ha로 이미 세계 10위권에 진입하였음.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GAP인증과 관련하여 18개 성에 속한 286개의 수출기업 및 농업표준화 시범기지에서 인증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2,675개의 식품 생산 및 가공기업이 HACCP인증을 획득했고, 28,600개의 신선농산물이 무공해농산물 인증을 획득하였음. 사료상품인증, 주류 품질등급인증, 녹색시장인증 업무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음.

## 라. 식품 품질안전 검사측정체계 형성

- 중국은 국가급 검사기구의 총괄하에 성 및 부문의 식품 검사기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현·시급 식품 검사기구가 이를 뒷받침하는 식품 품질안전 검사측정체계를 구축하였음.
  - 중국은 총 3,913개의 식품류 검사측정 실험실이 실험실 자질인증을 통과했으며, 그 중 식품류 국가상품품질검사센터가 48개, 중점 식품류 실험실이 35개를 차지하고 있음.
  - 수출입 식품 관리·감독 방면에서는 35개의 국가급 중점 실험실을 필두로 한 수출입 식품 안전기술 지원체계를 형성하였음. 전국적으로 163개의 수출입 식품 검사검역 실험실이 있으며, 각종 대형 정밀기기 10,000여 대를 구비하고 있음.
  - 전국의 수출입 식품 검사검역 실험실에는 총 1,189명의 전문 기술인력이 종사하고 있음. 각 실험실은 각종 식품에 포함된 잔류 농약 및 동물약품, 첨가제, 중금속 함량 등 786개 안전위생 항목 및 각종 식원성 병원균을 검사측정할 수 있음.
- 중국은 2006년 현재 국가급과 현급의 농산물 품질검사검역센터가 각각 323개, 1,780개가 건설되었음.

## V. 농업통계

##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 1992~2008.5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출액	전년대비 성장률(%)	대 세계 수출 총액	점유율 (%)	대 중국 수출량	전년대비 성장률(%)	대 세계 수출 총량	점유율 (%)
1992	13.6	0.0	2,837.0	0.5	20.2	0.0	1,624.1	1.2
1993	34.1	150.3	2,645.4	1.3	34.3	69.4	1,452.4	2.4
1994	69.8	104.6	3,012.6	2.3	72.1	110.4	1,599.7	4.5
1995	160.5	129.8	3,418.8	4.7	158.6	120.0	1,640.8	9.7
1996	155.9	-2.8	3,412.9	4.6	147.3	-7.1	1,735.1	8.5
1997	200.7	28.7	3,346.9	6.0	239.2	62.3	1,893.4	12.6
1998	174.6	-13.0	2,999.0	5.8	259.2	8.4	2,026.0	12.8
1999	149.3	-14.5	3,198.2	4.7	197.0	-24.0	1,830.0	10.8
2000	201.7	35.1	3,012.4	6.7	271.2	37.7	1,860.2	14.6
2001	164.4	-18.5	2,851.5	5.8	221.1	-18.5	1,880.4	11.8
2002	178.2	8.4	2,801.3	6.4	206.5	-6.6	1,865.5	11.1
2003	237.1	33.0	2,990.6	7.9	245.7	19.0	1,874.8	13.1
2004	338.2	42.7	3,365.3	10.1	297.9	21.3	1,898.8	15.7
2005	339.8	0.5	3,415.8	9.9	267.0	-10.4	1,894.4	14.1
2006	335.6	-1.2	3,394.8	9.9	246.4	-7.7	1,802.0	13.7
2007	452.1	34.7	3,759.3	12.0	374.9	52.1	2,051.0	18.3
2008.1	50.1	24.6	336.9	14.9	23.0	11.0	168.7	13.6
2008.2	80.4	32.9	607.6	13.2	49.1	32.1	324.7	15.1
2008.3	121.0	36.3	967.2	12.5	86.4	40.4	498.9	17.3
2008.4	167.6	40.3	1,351.1	12.4	125.7	43.0	686.2	18.3
2008.5	211.9	38.0	1,710.9	12.4	160.0	38.2	861.8	18.6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1.jsp](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1.jsp))

## 2.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 1992~2008.5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입액	전년대비 성장률(%)	대 세계 수입 총액	점유율 (%)	대 중국 수입량	전년대비 성장률(%)	대 세계 수입 총량	점유율 (%)
1992	1,070.6	0.0	6,304.0	17.0	6,150.3	0.0	29,646.9	20.7
1993	1,047.9	-2.1	7,258.9	14.4	6,834.1	11.1	28,218.7	24.2
1994	1,179.5	12.6	8,214.5	14.4	5,915.1	-13.4	29,214.5	20.2
1995	725.7	-38.5	9,839.0	7.4	1,647.5	-72.1	31,086.7	5.3
1996	1,003.0	38.2	11,875.3	8.4	2,069.4	25.6	34,073.8	6.1
1997	1,528.6	52.4	11,255.1	13.6	5,520.8	166.8	33,270.2	16.6
1998	945.8	-38.1	6,971.6	13.6	3,839.6	-30.5	26,830.0	14.3
1999	1,154.1	22.0	8,563.8	13.5	3,348.7	-12.8	32,127.1	10.4
2000	1,867.9	61.9	9,818.5	19.0	8,722.6	160.5	33,543.8	26.0
2001	1,719.6	-7.9	10,079.2	17.1	5,504.9	-36.9	34,588.9	15.9
2002	2,321.3	35.0	11,471.5	20.2	9,316.9	69.2	37,017.2	25.2
2003	2,775.7	19.6	12,185.2	22.8	11,477.5	23.2	36,292.1	31.6
2004	2,421.6	-12.8	13,484.1	18.0	5,090.6	-55.6	35,540.7	14.3
2005	3,155.0	30.3	14,275.7	22.1	9,061.2	78.0	35,806.5	25.3
2006	3,236.1	2.6	16,100.9	20.1	6,220.3	-31.4	36,872.6	16.9
2007	4,173.4	29.0	19,242.3	21.7	8,723.5	40.2	38,025.3	22.9
2008.1	386.5	-14.9	1,870.2	20.7	499.8	-53.5	3,140.9	15.9
2008.2	688.7	-20.0	3,534.8	19.5	964.8	-54.8	6,434.7	15.0
2008.3	1,015.3	-18.9	5,379.2	18.9	1,406.7	-55.7	9,741.3	14.4
2008.4	1,345.4	-14.8	7,446.1	18.1	1,831.3	-52.5	13,335.8	13.7
2008.5	1,684.7	-11.8	9,385.4	17.9	2,260.4	-49.9	16,558.5	13.7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1.jsp](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1.jsp))

## 3. 한국의 대 중국 농산물 수출, 1992~2008.5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출액	점유율 <sup>1</sup> (%)	대 세계 수출 총액	점유율 <sup>2</sup> (%)	대 중국 수출량	점유율 <sup>1</sup> (%)	대 세계 수출 총량	점유율 <sup>2</sup> (%)
1992	5.3	38.5	678.8	0.8	9.1	44.7	618.0	1.5
1993	6.7	19.5	694.7	1.0	9.9	28.9	622.3	1.6
1994	12.2	17.4	835.2	1.5	23.4	32.4	771.1	3.0
1995	44.9	27.9	1,081.5	4.1	43.3	27.3	775.5	5.6
1996	27.0	17.3	1,156.3	2.3	27.8	18.9	899.8	3.1
1997	46.6	23.2	1,187.9	3.9	68.4	28.6	978.8	7.0
1998	39.0	22.3	1,002.2	3.9	64.2	24.8	1,048.2	6.1
1999	37.9	25.4	1,003.4	3.8	69.0	35.0	982.7	7.0
2000	59.0	29.2	1,133.5	5.2	91.6	33.8	1,043.1	8.8
2001	68.4	41.6	1,251.9	5.5	114.2	51.6	1,178.1	9.7
2002	95.6	53.7	1,374.5	7.0	125.2	60.6	1,239.2	10.1
2003	116.8	49.3	1,563.2	7.5	144.5	58.8	1,242.9	11.6
2004	151.0	44.6	1,758.5	8.6	157.4	52.8	1,258.9	12.5
2005	184.5	54.3	1,898.9	9.7	169.0	63.3	1,293.5	13.1
2006	216.4	64.5	2,008.2	10.8	172.6	70.1	1,263.9	13.7
2007	257.4	56.9	2,222.5	11.6	208.8	55.7	1,336.5	15.6
2008.1	32.8	65.4	186.0	17.6	11.6	50.2	100.5	11.5
2008.2	48.5	60.4	334.7	14.5	25.9	52.7	193.3	13.4
2008.3	71.6	59.2	554.1	12.9	45.3	52.4	306.7	14.8
2008.4	93.7	55.9	776.4	12.1	58.8	46.8	422.4	13.9
2008.5	115.5	52.1	984.4	11.7	71.7	44.8	526.7	13.6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농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1.jsp](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1.jsp))

#### 4. 한국의 대 중국 농산물 수입, 1992~2008.5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입액	점유율 <sup>1</sup> (%)	대 세계 수입 총액	점유율 <sup>2</sup> (%)	대 중국 수입량	점유율 <sup>1</sup> (%)	대 세계 수입 총량	점유율 <sup>2</sup> (%)
1992	941.9	88.0	3,404.0	27.7	6,017.0	97.8	14,197.7	42.4
1993	906.2	86.5	3,839.2	23.6	6,568.5	96.1	18,276.0	35.9
1994	932.5	79.1	4,475.3	20.8	5,495.0	92.9	19,030.8	28.9
1995	396.3	54.6	5,537.6	7.2	935.1	56.8	20,003.0	4.7
1996	528.9	52.7	6,867.0	7.7	1,205.6	58.3	22,840.9	5.3
1997	933.5	61.1	6,284.7	14.9	4,457.5	80.7	21,613.5	20.6
1998	621.6	65.7	4,663.9	13.3	3,275.2	85.3	20,841.7	15.7
1999	551.6	47.8	4,681.3	11.8	2,382.3	71.1	22,206.9	10.7
2000	1,152.0	61.7	5,104.5	22.6	7,706.0	88.3	23,113.9	33.3
2001	846.1	49.2	5,325.3	15.9	4,388.8	79.7	23,247.0	18.9
2002	1,265.9	54.5	5,701.5	22.2	8,099.1	86.9	24,376.0	33.2
2003	1,725.5	62.2	6,212.7	27.8	10,354.4	90.2	24,301.0	42.6
2004	1,125.2	46.5	7,444.6	15.1	3,824.6	75.1	24,317.4	15.7
2005	1,757.0	55.7	7,397.4	23.8	7,815.5	86.3	24,765.5	31.6
2006	1,550.8	47.9	8,117.2	19.1	4,668.8	75.1	25,142.1	18.6
2007	2,375.2	56.9	10,089.0	23.5	7,320.3	83.9	25,973.9	28.2
2008.1	196.8	50.9	1,018.6	19.3	387.2	77.5	2,227.3	17.4
2008.2	382.0	55.5	2,038.7	18.7	775.9	80.4	4,571.9	17.0
2008.3	565.5	55.7	3,105.8	18.2	1,126.2	80.1	6,859.2	16.4
2008.4	735.2	54.6	4,389.8	16.7	1,437.5	78.5	9,490.9	15.1
2008.5	919.9	54.6	5,563.0	16.5	1,767.0	78.2	11,790.9	15.0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농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1.jsp](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1.jsp))

## 5. 한국의 대 중국 축산물 수출, 1992~2008.5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출액	점유율 <sup>1</sup> (%)	대 세계 수출 총액	점유율 <sup>2</sup> (%)	대 중국 수출량	점유율 <sup>1</sup> (%)	대 세계 수출 총량	점유율 <sup>2</sup> (%)
1992	0.03	0.2	95.9	0.0	0.01	0.1	55.3	0.0
1993	0.1	0.3	89.1	0.1	0.02	0.1	23.8	0.1
1994	0.09	0.1	116.0	0.1	0.03	0.0	61.3	0.0
1995	1.1	0.7	155.5	0.7	0.7	0.4	76.7	0.9
1996	0.7	0.4	260.0	0.3	0.4	0.3	99.0	0.4
1997	1.9	1.0	319.9	0.6	1.0	0.4	125.1	0.8
1998	2.6	1.5	388.5	0.7	1.3	0.5	169.1	0.8
1999	3.1	2.1	407.8	0.8	1.2	0.6	167.4	0.7
2000	3.1	1.6	121.0	2.6	1.0	0.4	86.3	1.1
2001	3.8	2.3	117.8	3.2	1.0	0.5	110.1	0.9
2002	3.1	1.7	98.5	3.1	1.0	0.5	82.9	1.2
2003	3.3	1.4	119.5	2.8	1.4	0.6	92.6	1.5
2004	3.7	1.1	162.7	2.3	2.3	0.8	85.8	2.6
2005	6.2	1.8	172.7	3.6	6.1	2.3	95.9	6.3
2006	5.3	1.6	172.2	3.1	1.6	0.6	87.1	1.8
2007	6.8	1.5	181.0	3.7	2.0	0.5	93.0	2.2
2008.1	0.7	1.3	16.7	3.9	0.1	0.5	8.4	1.2
2008.2	1.2	1.4	31.5	3.7	0.2	0.4	16.0	1.3
2008.3	2.4	2.0	49.0	4.9	0.5	0.6	24.2	2.1
2008.4	3.9	2.3	65.7	6.0	0.8	0.6	32.3	2.5
2008.5	4.3	2.0	80.5	5.3	0.9	0.6	39.9	2.3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축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1.jsp](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1.jsp))

## 6. 한국의 대 중국 축산물 수입, 1992~2008.5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입액	점유율 <sup>1</sup> (%)	대 세계 수입 총액	점유율 <sup>2</sup> (%)	대 중국 수입량	점유율 <sup>1</sup> (%)	대 세계 수입 총량	점유율 <sup>2</sup> (%)
1992	27.6	2.6	874.4	3.2	4.6	0.1	435.7	1.1
1993	27.8	2.6	631.6	4.4	5.4	0.1	347.0	1.6
1994	37.2	3.2	932.3	4.0	8.9	0.1	453.7	2.0
1995	35.1	4.8	1,224.1	2.9	10.1	0.6	555.5	1.8
1996	40.8	4.1	1,240.1	3.3	15.6	0.8	518.6	3.0
1997	47.8	3.1	1,324.4	3.6	22.5	0.4	520.9	4.3
1998	13.8	1.5	756.0	1.8	7.2	0.2	348.9	2.1
1999	15.1	1.3	1,245.3	1.2	7.2	0.2	653.9	1.1
2000	23.4	1.3	1,676.2	1.4	12.3	0.1	771.7	1.6
2001	32.3	1.9	1,466.3	2.2	19.2	0.3	705.7	2.7
2002	43.0	1.9	1,948.5	2.2	19.0	0.2	902.1	2.1
2003	38.5	1.4	2,115.6	1.8	21.5	0.2	883.6	2.4
2004	38.3	1.6	1,755.4	2.2	23.4	0.5	711.9	3.3
2005	71.2	2.3	2,360.5	3.0	39.9	0.4	888.0	4.5
2006	93.5	2.9	2,748.5	3.4	48.8	0.8	1,065.1	4.6
2007	100.5	2.4	3,235.3	3.1	48.6	0.6	1,092.3	4.4
2008.1	11.0	2.9	286.4	3.8	5.0	1.0	88.8	5.6
2008.2	18.0	2.6	495.9	3.6	7.8	0.8	155.3	5.0
2008.3	27.1	2.7	758.2	3.6	11.6	0.8	242.5	4.8
2008.4	37.3	2.8	1,016.6	3.7	15.7	0.9	325.9	4.8
2008.5	44.6	2.6	1,269.4	3.5	19.3	0.9	405.4	4.8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축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1.jsp](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1.jsp))

## 7. 한국의 대 중국 임산물 수출, 1992~2008.5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출액	점유율 <sup>1</sup> (%)	대 세계 수출 총액	점유율 <sup>2</sup> (%)	대 중국 수출량	점유율 <sup>1</sup> (%)	대 세계 수출 총량	점유율 <sup>2</sup> (%)
1992	7.7	56.5	575.5	1.3	10.9	53.9	519.6	2.1
1993	17.9	52.3	450.0	4.0	20.7	60.3	445.3	4.6
1994	39.1	56.0	508.4	7.7	42.0	58.2	410.0	10.2
1995	48.9	30.5	499.8	9.8	66.5	41.9	355.9	18.7
1996	60.3	38.7	404.1	14.9	67.7	46	289.7	23.4
1997	37.3	18.6	344.9	10.8	37.3	15.6	279.2	13.4
1998	35.7	20.4	244.4	14.6	55.1	21.2	217.5	25.3
1999	49.3	33.0	268.7	18.3	73.6	37.3	204.2	36.0
2000	55.5	27.5	254.5	21.8	85.5	31.5	197.3	43.3
2001	36.5	22.2	210.0	17.4	52.1	23.6	157.0	33.2
2002	31.2	17.5	166.9	18.7	36.0	17.4	113.1	31.8
2003	46.0	19.4	177.1	26.0	43.9	17.9	114.1	38.4
2004	59.0	17.4	163.9	36.0	69.9	23.5	146.4	47.8
2005	40.5	11.9	150.0	27.0	26.3	9.9	92.1	28.6
2006	37.7	11.2	124.0	30.4	27.1	11	82.6	32.8
2007	30.4	6.7	128.3	23.7	21.1	5.6	84.5	25.0
2008.1	0.8	1.5	6.5	11.8	0.6	2.7	6.1	9.8
2008.2	1.7	2.1	11.7	14.3	1.7	3.5	10.6	16.0
2008.3	2.6	2.1	18.8	13.7	2.8	3.2	17.4	16.1
2008.4	4.2	2.5	29.3	14.2	4.3	3.4	24.1	17.8
2008.5	6.1	2.9	39.9	15.2	5.4	3.4	30.1	17.9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임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1.jsp](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1.jsp))

## 8. 한국의 대 중국 임산물 수입, 1992~2008.5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입액	점유율 <sup>1</sup> (%)	대 세계 수입 총액	점유율 <sup>2</sup> (%)	대 중국 수입량	점유율 <sup>1</sup> (%)	대 세계 수입 총량	점유율 <sup>2</sup> (%)
1992	60.9	5.7	1,618.5	3.8	113.0	1.8	14,770.0	0.8
1993	74.3	7.1	2,268.8	3.3	244.7	3.6	9,245.2	2.6
1994	98.0	8.3	2,086.9	4.7	372.4	6.3	9,350.2	4.0
1995	165.9	22.9	2,249.6	7.4	655.9	39.8	10,114.8	6.5
1996	226.4	22.6	2,748.7	8.2	773.6	37.4	10,206.4	7.6
1997	275.2	18.0	2,595.3	10.6	923.5	16.7	10,607.1	8.7
1998	113.1	12.0	967.2	11.7	445.5	11.6	5,261.3	8.5
1999	180.9	15.7	1,478.2	12.2	666.4	19.9	8,524.7	7.8
2000	217.1	11.6	1,652.8	13.1	726.1	8.3	8,915.1	8.1
2001	219.9	12.8	1,656.7	13.3	629.7	11.4	9,581.0	6.6
2002	292.6	12.6	1,934.3	15.1	705.5	7.6	10,544.2	6.7
2003	297.7	10.7	1,892.9	15.7	636.4	5.5	9,861.9	6.5
2004	347.7	14.4	2,019.9	17.2	745.0	14.6	9,221.6	8.1
2005	388.3	12.3	2,130.7	18.2	696.0	7.7	8,882.4	7.8
2006	554.8	17.1	2,461.6	22.5	939.0	15.1	9,272.3	10.1
2007	625.0	15.0	2,858.2	21.9	810.8	9.3	9,553.7	8.5
2008.1	56.6	14.6	247.0	22.9	60.1	12.0	700.4	8.6
2008.2	93.7	13.6	477.8	19.6	106.1	11.0	1,509.8	7.0
2008.3	145.5	14.3	738.0	19.7	164.4	11.7	2,347.5	7.0
2008.4	204.1	15.2	988.9	20.6	238.2	13.0	3,116.3	7.6
2008.5	255.7	15.2	1,238.7	20.6	294.4	13.0	3,864.6	7.6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임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1.jsp](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1.jsp))

## 9. 한국의 대 중국 수산물 수출, 1992~2008.5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출액	점유율 <sup>1</sup> (%)	대 세계 수출 총액	점유율 <sup>2</sup> (%)	대 중국 수출량	점유율 <sup>1</sup> (%)	대 세계 수출 총량	점유율 <sup>2</sup> (%)
1992	0.7	4.8	1,486.8	0.0	0.3	1.3	431.2	0.1
1993	9.5	27.8	1,411.6	0.7	3.7	10.8	361.0	1.0
1994	18.5	26.4	1,552.9	1.2	6.8	9.4	357.3	1.9
1995	65.6	40.9	1,682.0	3.9	48.2	30.4	432.7	11.1
1996	68.0	43.6	1,592.5	4.3	51.4	34.9	446.7	11.5
1997	114.9	57.3	1,494.2	7.7	132.5	55.4	510.3	26.0
1998	97.4	55.8	1,363.9	7.1	138.7	53.5	591.2	23.5
1999	59.1	39.6	1,518.4	3.9	53.2	27.0	475.7	11.2
2000	84.2	41.7	1,503.3	5.6	93.2	34.4	533.5	17.5
2001	55.8	33.9	1,271.8	4.4	53.7	24.3	435.2	12.3
2002	48.4	27.1	1,161.3	4.2	44.3	21.5	430.3	10.3
2003	71.0	30.0	1,130.8	6.3	55.9	22.8	425.2	13.1
2004	124.6	36.8	1,280.2	9.7	68.3	22.9	407.8	16.8
2005	108.6	32.0	1,194.3	9.1	65.7	24.6	412.9	15.9
2006	76.1	22.7	1,090.4	7.0	45.1	18.3	368.5	12.3
2007	157.5	34.8	1,227.5	12.8	143.0	38.1	537.0	26.6
2008.1	15.9	31.8	127.8	12.5	10.7	46.6	53.6	20.0
2008.2	29.0	36.1	229.8	12.6	21.3	43.4	104.7	20.3
2008.3	44.4	36.7	345.4	12.9	37.9	43.8	150.7	25.2
2008.4	65.9	39.3	479.7	13.7	61.8	49.2	207.5	29.8
2008.5	86.0	40.6	606.1	14.2	82.0	51.3	265.1	30.9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수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1.jsp](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1.jsp))

### 10. 한국의 대 중국 수산물 수입, 1992~2008.5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입액	점유율 <sup>1</sup> (%)	대 세계 수입 총액	점유율 <sup>2</sup> (%)	대 중국 수입량	점유율 <sup>1</sup> (%)	대 세계 수입 총량	점유율 <sup>2</sup> (%)
1992	40.3	3.8	407.2	9.9	15.7	0.3	243.6	6.4
1993	39.7	3.8	519.3	7.6	15.5	0.2	350.4	4.4
1994	111.7	9.5	720.0	15.5	38.7	0.7	379.9	10.2
1995	128.4	17.7	827.8	15.5	46.5	2.8	413.5	11.2
1996	206.9	20.6	1,019.6	20.3	74.7	3.6	507.9	14.7
1997	272.1	17.8	1,050.7	25.9	117.3	2.1	528.8	22.2
1998	197.3	20.9	584.4	33.8	111.7	2.9	378.2	29.5
1999	406.6	35.2	1,159.1	35.1	292.8	8.7	741.6	39.5
2000	475.4	25.5	1,385.0	34.3	278.3	3.2	743.2	37.4
2001	621.4	36.1	1,630.9	38.1	467.3	8.5	1,055.2	44.3
2002	719.8	31.0	1,887.2	38.1	493.4	5.3	1,194.9	41.3
2003	714.1	25.7	1,964.2	36.4	465.2	4.1	1,245.5	37.3
2004	910.5	37.6	2,264.3	40.2	497.7	9.8	1,289.8	38.6
2005	938.5	29.7	2,387.2	39.3	509.8	5.6	1,270.5	40.1
2006	1,036.9	32.0	2,773.6	37.4	563.7	9.1	1,393.1	40.5
2007	1,072.7	25.7	3,059.8	35.1	543.9	6.2	1,405.4	38.7
2008.1	122.0	31.6	318.3	38.4	47.6	9.5	124.3	38.3
2008.2	195.0	28.3	522.4	37.3	75.0	7.8	197.7	37.9
2008.3	277.2	27.3	777.1	35.7	104.4	7.4	292.1	35.7
2008.4	368.8	27.4	1,050.8	35.1	139.9	7.6	402.8	34.7
2008.5	464.5	27.6	1,314.4	35.3	179.8	8.0	497.6	36.1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수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1.jsp](http://www.kati.net/web_trade/jsps/tr/tr19r1.jsp))

## 11. 중국 농산물 생산자가격 지수(1978~2006)

연도	농산물 생산자가격지수					
	총 지수	경종작물	농산물			
			식량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1978	103.9	104.7	100.7	101.0	100.5	102.5
1979	122.1	122.4	130.5	115.0	122.6	118.2
1980	107.1	107.8	107.9	115.8	103.4	101.8
1981	105.9	106.1	109.7	127.0	101.1	100.6
1982	102.2	102.5	103.8	105.9	100.3	101.0
1983	104.4	105.7	110.3	100.2	100.5	103.2
1984	104.0	103.8	112.0	103.3	104.1	109.8
1985	108.6	101.7	101.8	155.5	124.1	151.3
1986	106.4	106.6	109.9	114.9	103.0	110.4
1987	112.0	108.8	108.0	120.3	117.9	122.8
1988	123.0	113.5	114.6	136.7	140.2	134.3
1989	115.0	118.9	126.9	105.2	110.2	99.8
1990	97.4	100.7	93.2	84.5	92.3	98.8
1991	98.0	97.3	93.8	102.4	97.4	104.7
1992	103.4	101.1	105.3	107.3	106.3	108.1
1993	113.4	112.1	116.7	111.1	114.2	122.1
1994	139.9	141.9	146.6	111.8	144.6	122.0
1995	119.9	124.0	129.0	105.1	115.8	112.4
1996	104.2	104.7	105.8	104.4	103.3	103.4
1997	95.5	92.8	90.2	98.9	101.8	91.7
1998	92.0	93.6	96.7	101.1	86.9	93.9
1999	87.8	85.8	87.1	101.4	88.5	92.5
2000	96.4	94.7	90.2	90.0	99.0	100.5
2001	103.1	105.7	107.6	94.15	103.1	98.6
2002	99.7	100.0	96.2	98.3	100.2	95.9
2003	104.4	107.4	104.5	107.0	101.8	100.3
2004	113.1	115.9	126.2	104.6	111.1	110.2
2005	101.4	101.6	99.1	104.8	100.5	104.7
2006	101.2	104.5	102.0	112.8	94.3	103.9

주: 전년=100. 2000년 이전의 농산물 생산자가격 총 지수는 농산물 구매가격지수임.

자료: 中國國家統計局農村社會經濟調查司, 『中國農產品價格調查年鑒2007』, 中國統計出版社.

## 12. 농산물 품목별 생산자가격지수, 2002~2006년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전체 생산자가격지수	99.7	104.4	113.1	101.4	101.2		
경종작물	경종작물 전체	100.0	107.4	115.9	101.6	104.5	
	식량작물 전체	96.2	104.5	126.2	99.1	102.0	
	곡물 전체	95.8	102.3	128.1	99.2	102.1	
	밀	98.1	103.0	131.2	96.4	100.1	
	벼	97.2	99.9	136.3	101.6	102.0	
	자포니카	94.7	97.9	137.7	105.4	101.3	
	옥수수	91.5	104.6	116.9	98.0	103.0	
	두류 전체	98.1	119.3	120.3	95.7	99.3	
	대두	99.0	120.6	120.2	94.2	99.2	
	서류	93.7	92.9	105.8	106.1	109.7	
	유지작물	104.8	119.4	116.6	91.3	104.8	
	채소	95.1	110.4	105.2	107.2	109.3	
	고추	87.9	111.1	103.6	100.4	112.0	
	마늘	84.6	94.7	117.7	118.9	115.3	
	대파	173.4	110.2	111.8	103.0	105.6	
	당근	99.2	115.1	102.9	103.3	106.9	
	배추	81.4	115.8	102.1	108.1	111.7	
	과일	109.9	102.0	97.4	107.4	111.4	
	사과	106.5	103.5	102.5	114.6	112.5	
	배	112.4	102.9	95.3	104.5	111.7	
	포도	136.6	99.1	95.4	112.5	103.6	
	감귤류	103.0	100.5	94.7	104.9	107.1	
	면화	103.4	135.3	79.5	111.8	97.1	
	식용 당류	86.0	90.5	104.9	111.6	121.1	
	담배잎	132.8	97.2	108.4	103.3	99.7	
	임산물	임산물 전체	98.3	107.0	104.6	104.8	112.8
		호두	142.9	96.4	102.7	111.3	114.2
계피		81.4	92.1	96.7	102.6	104.4	
축산물	축산물 전체	100.2	101.8	111.1	100.5	94.3	
	산돼지	98.0	102.9	112.8	97.6	90.6	
	소	91.4	101.7	103.9	101.7	100.4	
	가금	16.1	101.0	111.3	105.6	97.2	
	계란	102.6	101.1	112.5	106.5	95.3	
	유제품	99.7	103.7	103.7	99.6	102.9	
수산물	수산물 전체	95.9	100.3	110.2	104.7	103.9	
	해산물 전체	98.1	101.1	109.0	104.1	107.6	
	해수어	104.9	104.0	109.2	104.2	109.7	
	담수산물 전체	93.1	98.8	112.3	107.9	100.5	
	담수어	93.1	98.7	111.5	106.2	99.9	

주: 전년=100

자료: 中國國家統計局農村社會經濟調查司, 『中國農產品價格調查年鑒2007』, 中國統計出版社.

## 13.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지수(월별), 2005~2008.6

년 월	전체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채람자”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기준대비	전년 동기대비	전월대비	기준대비	전년 동기대비	전월대비
2005. 1	123.2	105.6	105.7	121.0	107.7	106.8
2	132.1	112.6	107.2	131.4	114.9	108.6
3	127.0	106.2	96.1	125.6	109.0	95.6
4	124.6	102.4	98.1	122.9	104.6	97.9
5	123.5	101.6	99.1	121.5	103.5	98.9
6	121.4	99.7	98.3	119.3	100.9	98.2
7	125.8	101.9	103.6	124.4	103.3	104.3
8	126.9	100.4	100.9	125.5	101.1	100.9
9	127.0	101.5	100.1	125.6	102.2	100.1
10	124.2	103.8	97.8	122.3	105.0	97.4
11	122.8	106.1	98.9	120.8	107.7	98.8
12	125.9	108.0	102.5	124.7	110.1	103.2
2006. 1	134.8	109.4	107.1	135.3	111.8	108.5
2	133.7	101.2	99.2	134.0	102.0	99.0
3	130.5	102.8	97.6	129.5	103.1	96.6
4	132.6	106.4	101.6	132.0	107.4	101.9
5	130.6	105.7	98.5	129.4	106.5	98.0
6	126.2	104.0	96.6	124.1	104.0	95.9
7	124.6	99.0	98.7	122.3	98.3	98.5
8	129.2	101.8	103.7	127.6	101.7	104.3
9	133.7	105.3	103.5	133.0	105.9	104.2
10	125.6	101.1	93.9	123.2	100.7	92.6
11	125.9	102.5	100.2	123.3	102.1	100.1
12	132.4	105.2	105.2	130.6	104.7	105.9
2007. 1	134.3	99.6	101.4	132.9	98.2	101.8
2	136.0	101.7	101.3	134.4	100.3	101.1
3	136.6	104.7	100.4	135.1	104.3	100.5
4	136.0	102.6	99.6	134.3	101.7	99.4
5	136.8	104.7	100.6	135.2	104.5	100.7
6	143.5	113.7	104.9	142.6	114.9	105.5
7	148.0	118.8	103.1	147.8	120.9	103.6
8	151.6	117.3	102.4	151.9	119.0	102.8
9	150.1	112.3	99.0	150.0	112.8	98.7
10	149.8	119.3	99.8	149.7	121.5	99.8
11	149.6	118.8	99.9	148.9	120.8	99.5
12	152.1	114.9	101.7	151.4	115.9	101.7
2008. 1	161.0	119.9	105.9	161.7	121.7	106.8
2	174.2	128.1	108.2	176.8	131.5	109.3
3	168.8	123.6	96.9	168.4	124.6	95.2
4	168.9	124.2	100.1	168.5	125.5	100.1
5	163.3	119.4	96.7	161.6	119.5	95.9
6	160.9	112.1	98.5	158.4	111.1	98.0

주: 기준대비지수는 2000년=100, 전년동기대비지수는 전년=100, 전월대비지수는 전월=100.

자료: 農業部. “全國農產品批發價格指數－月度指數”(http://www.agri.gov.cn/xxfb)

### 14.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지수(일별), 2008.1~3

날짜	전체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채람자”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날짜	전체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채람자”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1. 3	155.0	154.7	2.19	172.5	174.9
1. 4	155.2	155.0	2.20	171.3	173.3
1. 5	154.7	154.4	2.21	171.8	174.1
1. 6	155.5	155.4	2.22	172.0	174.1
1. 7	155.0	154.6	2.25	170.8	172.6
1. 8	154.5	154.0	2.26	171.9	173.6
1. 9	155.6	155.3	2.27	170.6	172.1
1.10	154.4	153.8	2.28	170.4	171.7
1.11	155.8	155.5	2.29	171.4	173.0
1.14	157.6	157.7	3. 3	169.8	171.0
1.15	158.7	159.0	3. 4	169.2	170.2
1.16	158.2	158.4	3. 5	170.0	170.3
1.17	159.2	159.5	3. 6	169.3	169.2
1.18	159.1	159.5	3. 7	169.4	169.3
1.21	162.2	163.2	3.10	169.6	169.4
1.22	161.7	162.6	3.11	169.6	169.2
1.23	163.9	165.1	3.12	169.8	169.3
1.24	163.4	164.6	3.13	169.3	168.8
1.25	164.4	165.7	3.14	169.2	168.5
1.28	174.8	178.1	3.17	168.3	167.4
1.29	176.0	179.6	3.18	168.1	167.2
1.30	175.7	179.3	3.19	168.6	167.5
1.31	177.3	181.1	3.20	168.9	167.9
2. 1	181.5	185.9	3.21	168.2	167.3
2. 2	179.8	184.0	3.24	168.0	167.1
2.12	180.0	184.0	3.25	167.9	167.6
2.13	178.1	182.0	3.26	168.0	167.5
2.14	176.5	179.8	3.27	167.6	167.1
2.15	175.1	178.1	3.28	167.5	166.9
2.18	173.2	175.7	3.31	168.1	167.8

주: 기준연도 2000년=100

자료: 農業部. “全國農產品批發價格指數－日度指數”(http://www.agri.gov.cn/xxfb)

## 15.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지수(일별), 2008.4~6

날짜	전체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채람자”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날짜	전체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채람자”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4. 1	168.3	168.1	5.16	163.7	161.4
4. 2	171.0	171.2	5.19	163.7	161.4
4. 3	170.1	170.3	5.20	164.1	162.1
4. 4	169.9	170.1	5.21	163.3	161.1
4. 7	170.5	170.8	5.22	163.0	160.9
4. 8	170.2	170.5	5.23	163.5	161.5
4. 9	170.4	170.6	5.26	162.9	160.6
4.10	171.3	170.5	5.27	161.2	158.6
4.11	169.6	169.0	5.28	160.7	158.0
4.14	169.2	168.4	5.29	161.2	158.7
4.15	169.0	167.8	5.30	160.6	157.9
4.16	168.9	167.8	6. 2	159.8	157.0
4.17	168.7	168.3	6. 3	161.0	158.4
4.18	168.3	167.5	6. 4	160.5	157.6
4.21	168.6	167.9	6. 5	161.3	158.8
4.22	168.1	167.3	6. 6	161.6	159.3
4.23	167.9	167.2	6. 9	160.0	157.4
4.24	167.1	166.2	6.10	160.9	158.5
4.28	166.6	166.5	6.11	160.4	157.9
4.29	166.8	166.5	6.12	160.2	157.6
4.30	166.7	166.5	6.13	160.3	157.8
5. 1	166.1	165.6	6.16	160.1	157.0
5. 2	164.7	164.0	6.17	160.9	158.5
5. 5	165.2	164.7	6.18	160.8	158.3
5. 6	164.5	163.8	6.19	161.0	158.5
5. 7	164.0	163.0	6.20	160.8	158.5
5. 8	164.0	163.1	6.23	161.5	158.9
5. 9	163.6	162.5	6.24	161.5	159.1
5.12	163.1	161.8	6.25	162.1	159.9
5.13	162.9	161.7	6.26	161.4	159.0
5.14	163.2	161.5	6.27	161.4	158.9
5.15	163.7	162.0	6.30	161.5	159.0

주: 기준연도 2000년=100

자료: 農業部. “全國農產品批發價格指數－日度指數”(http://www.agri.gov.cn/xxfb)

### 16. 중국의 '채람자'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월별), 2008.1~3

구 분	1월		2월		3월	
	도매시장가격 (위안/kg)	전년 동기비 (%)	도매시장가격 (위안/kg)	전년 동기비 (%)	도매시장가격 (위안/kg)	전년 동기비 (%)
채람자농산물 도매가격지수	161.7	21.7	176.8	31.5	168.4	24.6
돼지고기	22.6	64.7	23.4	75.3	22.6	73.2
소고기	26.7	51.8	29.4	71.1	28.1	65.4
양고기	27.7	36.3	29.6	42.2	29.0	43.8
계란	6.3	1.4	6.4	3.3	6.1	3.2
해수어	14.9	-2.2	16.4	9.9	15.5	9.2
갈치(대)	13.1	-21.0	15.0	-12.4	15.0	-4.4
갈치(소)	10.2	-19.6	11.8	-11.2	11.8	-1.9
조기(대)	23.5	4.4	22.2	9.8	22.7	12.8
조기(소)	12.7	3.5	13.5	16.6	13.4	12.7
담수어	8.9	20.7	9.9	28.3	9.6	25.0
초어	10.2	21.6	11.2	26.5	10.9	25.5
잉어	9.2	28.7	10.5	37.1	10.1	38.9
연어(chub)	6.1	13.8	6.7	27.2	6.5	21.5
붕어	9.7	12.8	11.0	23.8	10.5	17.2
과채류	3.6	29.4	4.9	61.3	4.6	32.5
토마토	2.8	29.6	3.4	49.7	3.2	27.2
콩꼬투리	4.4	7.6	6.5	40.0	7.6	47.9
오이	3.4	25.6	4.6	72.9	3.4	15.1
가지	3.7	33.2	4.9	60.2	4.6	35.4
피망	4.0	51.9	5.8	81.1	5.7	31.6
엽채류	1.4	30.3	2.2	113.5	1.6	47.2
배추	0.7	37.4	0.9	75.0	0.8	20.9
시금치	1.4	20.3	2.3	120.7	1.9	36.1
셀러리	2.1	32.6	3.1	116.5	1.8	83.0
청경채	1.9	29.6	2.8	136.7	1.9	38.4
과일	4.4	11.0	5.1	30.6	4.1	3.6
수박	4.0	5.9	4.2	6.5	4.0	1.0
배(야리)	2.2	9.3	2.5	20.2	2.4	20.3
사과(부사)	4.4	42.9	4.6	43.6	4.5	27.4
마나나	3.5	13.6	3.7	8.3	3.7	-4.2
파인애플	4.2	52.0	4.0	48.4	3.3	28.6
망과	19.2	-3.0	23.2	46.3	9.8	-8.3

주: 채람자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는 2000년=100.

자료: 農業部. “菜籃子”產品批發市場價格動態分析(<http://www.agri.gov.cn/xxfb>)

## 17. 중국의 ‘채람자’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월별), 2008.4~5

구 분	4월		5월	
	도매시장가격 (위안/kg)	전년 동기비 (%)	도매시장가격 (위안/kg)	전년 동기비 (%)
채람자농산물 도매가격지수	168.5	25.5	161.6	19.5
돼지고기	22.5	75.2	21.5	48.4
소고기	27.7	64.0	28.0	60.3
양고기	28.8	52.7	29.6	42.7
계란	6.2	3.7	6.6	1.4
해수어	15.9	15.7	15.2	9.7
갈치(대)	14.8	5.5	14.7	12.6
갈치(소)	11.7	6.2	11.8	12.9
조기(대)	23.7	8.7	22.4	3.7
조기(소)	14.4	32.0	13.7	25.3
담수어	10.6	36.6	11.3	36.6
초어	12.6	43.9	13.2	43.5
잉어	11.1	48.2	11.8	43.3
연어(chub)	7.2	27.4	7.6	21.9
붕어	11.5	29.1	12.5	40.3
과채류	3.7	15.5	2.4	14.3
토마토	3.1	28.2	2.4	36.0
콩꼬투리	5.5	20.5	3.6	13.4
오이	2.4	8.6	1.4	-5.7
가지	3.5	11.1	2.7	20.1
피망	4.6	7.1	2.6	-4.7
엽채류	1.2	9.1	1.1	10.9
배추	0.9	2.5	0.8	22.7
시금치	1.3	16.8	1.4	21.1
셀러리	1.4	7.6	1.4	1.4
청경채	1.3	6.5	1.0	-3.3
과일	4.3	31.9	4.3	28.5
수박	4.8	46.4	2.9	9.8
배(야리)	2.5	33.2	2.5	37.0
사과(부사)	4.5	38.0	4.6	46.6
바나나	3.8	14.2	3.7	29.0
과인애플	3.2	37.7	3.0	10.9
망과	9.2	22.3	8.8	32.5

주: 채람자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는 2000년=100.

자료: 農業部. “菜籃子”產品批發市場價格動態分析(<http://www.agri.gov.cn/xxfb>)

---

☐ 09-2008-02

중국농업동향(여름호) 제1권 제2호/통권2호

---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8. 7. 15.

발 행 2008. 7. 15.

발행인 최정섭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주)문원사

02-739-3911~5 E-mail: [munwonsa@chol.com](mailto:munwonsa@chol.com)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